

월간

재정포럼

2023. September
Vol.327

09



권두칼럼

고향사랑기부제와
지방재정 패러다임의 전환
| 염명배

현안분석

대학 폐교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방세입을 중심으로
| 고창수

고용형태 다변화와
사회보험 제도 변화의 필요성
| 김문정

특집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
| 계강훈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 오종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스테이킹 보상(Staking
Rewards)을 과세대상으로 명시 외

Kipf

재정포럼

2023.09 Vol.327

월간 재정포럼 2023년 9월호 통권 제327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 414-2132 홈페이지 www.kipf.re.kr

CONTENTS

권두칼럼

- 02 고향사랑기부제와 지방재정 패러다임의 전환 | 염명배

현안분석

- 08 대학 폐교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방세입을 중심으로 | 고창수
- 34 고용형태 다변화와 사회보험 제도 변화의 필요성 | 김문정

특집

- 62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 | 계강훈
- 68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 오종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92 미국 - 스테이킹 보상(Staking Rewards)을 과세대상으로 명시 외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포럼」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지방재정 패러다임의 전환



염명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

들어가며

: 고향사랑기부제에 거는 기대

200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제기된 고향사랑기부제가 15년여의 긴 세월을 걸친 시도 끝에 드디어 올해 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법적 근간이 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여타 법률과 달리 법명에 ‘사랑’이란 감성적 용어가 들어간 매우 특이한 제도이다. 아직 도입 초기라 종합적인 성과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지만, 앞으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지방재정 패러다임에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때마침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국정목표 6)’ 구현을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약속 21)”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본정신을 공유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책적 의미

: 지방재정 패러다임의 전환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책적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방재정 운용방식(modus operandi)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지방재정 패러다임의 전환은 크게 ‘운용주체의 전환’과 ‘운용수단의 전환’으로 나눌 수 있다. 운용

주체의 전환은 필요한 지방재정의 조달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가지는 것을 뜻하며, 운용수단의 전환은 부족한 지방재원을 조세나 보조금과 같은 전통적 재정수단이 아닌 민간의 ‘기부금’이라는 새로운 수단에 기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자체가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천수답(天水沓)식으로 내려받아 쓰던 종래의 수동적 관행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과 전략으로 재원을 직접 마련하는 능동적 형태로 지방재정 운용방식이 바뀐다는 것이며, 여기서 고향사랑기부제의 독특한 ‘경영전략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바야흐로 지방시대의 양상이 ‘행정의 시대’에서 ‘경영의 시대’로 옮겨가는 변곡점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적 특징 : 지방이 주인공이 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지방이 주인공이 되어 지방재정 운용의 주도권을 쥐는 점이다. 즉, 지자체가 의사결정 과정의 전면에서 ‘지방의 논리’로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새로운 국면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 못지않게 지자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주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이 온갖 제약과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일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지자체는 과거 보모국가(nanny state) 형태의 국가보호 그늘막에서 과감히 벗어나, 독창성과 차별성을 발휘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지방시대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내용과 목적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명시된 고향사랑기부제의 내용은 ① 개인이 거주지 이외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② 기부금 세액공제(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의 특징은
지자체가 지방재정 운용의
주도권을 쥐는 점으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자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주적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기부금의 양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기부금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기부금의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 간 재정(세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입체적인 작전을
펼쳐야 한다.

10만원 초과는 500만원까지 16.5% 공제), ③ 답례품 제공(기부금액의 30% 이내) 등 3대 요소로 구성된다.

제도의 주요 목적은 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② 지역경제 활성화, ③ 국가균형발전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밖에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①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확충 및 재정격차(세수격차) 완화, ② 인구유입 촉진에 따른 지방소멸 억제, ③ 고향 및 농어촌의 중요성 인식, ④ 향토산업 육성 및 지역고용 창출, ⑤ 기부자와 지자체 간 직접적 연결고리 및 신뢰관계 형성 등과 같은 다양한 부수효과도 예상된다.

한국형 고향사랑기부제의 모색 : 일본 사례의 반면교사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제도이지만, 양국의 여건이나 제도 자체가 완전히 똑같지 않다는 점에서 무조건 일본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상황에 적합한 이른바 ‘한국형 고향사랑기부제’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양국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정책 목표에 있다.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일본은 당초 계획했던 ‘지역 간 세수(재정) 형평화’ 목표를 제도 도입 초기에 전격 삭제해 버렸다. 자유로운 기부를 통해 반드시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그 결과 일본은 기부자의 관심이 답례품에 집중되면서 고향납세 기부금의 양적 규모가 117.5배(2008년 81.4억엔 → 2022년 9,564.1억엔)에 이르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면에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고향납세제가 ‘고향사랑과 농어촌 지원’이라는 당초의 정신을 벗어나 “세금으로 쇼핑한다”는 뜻의 ‘관제(官制) 쇼핑’ 수단(쇼핑몰)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답례품 과열경쟁 발생, 답례품을 둘러싼 새로운 지역 불균형 확대라는 부정적인 평가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教師) 삼아 한편으로는 기부금의 양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부금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기부금의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 간 재정(세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입체적

인 작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기부금의 양적 확대만 신경 쓰면 되는 일본에 비해 우리는 훨씬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아무쪼록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고 명실공히 지방재정 패러다임 전환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KIPF**

고향사랑기부제가
여러 난제를 극복하고
명실공히
지방재정 패러다임 전환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 고향사랑기부제 ..

- 기 부 자** 개인
- 기 부 처**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 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제한**
 - ✓ 지역주민, 법인
 - ✓ 이해관계자(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 타인의 명이나 가명 기부
- 기부한도** 연간 상한액 500만원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16.5%
- 답 레 품**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 답례품 제공
-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현안분석

+ 대학 폐교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방세입을 중심으로

고창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고용형태 다변화와 사회보험 제도 변화의 필요성

김문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01

대학 폐교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방세입을 중심으로¹⁾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csko@kipf.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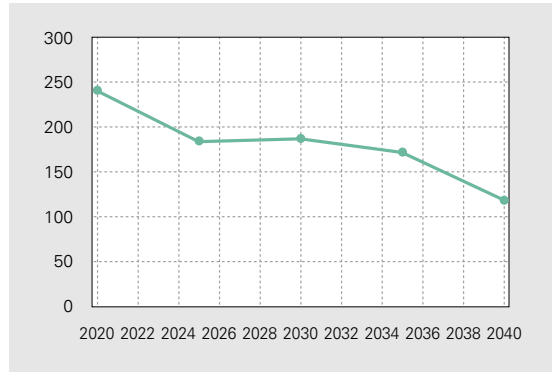
I. 서론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의 여파로 인해 대학 재학 연령대에 해당하는 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입학 가능 학생 수의 감소는 대학의 학생 수 충원이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종교 관련 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 187곳 중 신입생 충원율이 100%, 또는 미충원율이 1% 미만을 기록한 대학은 129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충원율이 1% 이상인 대학 58곳은 모두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라는 점에서 학생 수 감소의 충격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²⁾

2023년을 기준으로 대학 재학생은 2000년대 초반까지의 출생 코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후

[그림 1] 2020~2040년 대학 입학 가능 인원 추계(18~21세)

(단위: 만명)



출처: 통계청(2021)

- 1) 본고의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정리에 기여한 이재국 연구원, 그리고 본고에 대한 코멘트 및 검토의견을 주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들께 감사를 표한다. 본고는 Ko, C.(2023)의 일부 내용을 『재정포럼』의 편집 방향에 맞게 정리한 원고임을 밝힌다.
- 2) 『서울경제』, 「대학 5곳 중 4곳 미충원... 재원이 된 학령인구 감소」, 2023. 2. 5., <https://www.sedaily.com/News/NewsView/NewsPrint?Nid=29LMTT5V3B>, 검색일자: 2023. 5. 12.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상황을 감안하면 대학에 재학하는 연령대 인구 규모의 감소 추세는 향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은 우리나라의 대학 학령인구가 2020년 약 241만명에서 20년 후인 2040년에는 약 118만명으로 크게 감소한다는 추계 결과를 보여준다. 이 추계 결과는 대학의 미충원율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의 감소는 모든 대학에 균등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은 대학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입학 인원이 감소할 경우 단순히 정원에 소폭 미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학생 규모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재정 악화로 인한 교육·연구 기능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대학 재정과 관련한 각종 사업에서 경쟁력 저하와 이에 따른 선호도 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간 악순환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져 자체적으로 또는 교육부 결정에 따라 폐교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학이 상시 고용하는 교·직원 및 대학을 거점으로 생활하는 학생들의 규모를 고려하면, 대학의 존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수 있다. 대학 캠퍼스와 관련된 인원들이 동 지역에서 거주 및 경제활동을 수행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지역의 고용, 주택가격 등 지역경제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 캠퍼스 인근 음식점, PC방, 지역 택시의 매출 및 상업지역 임대료, 주택 임대료 등은 대학 캠퍼스의 존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대학 폐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재정진단, 폐교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내용에 더해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대학의 폐교가 지역의 역량 저하 및 경제적 피해와 연결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³⁾

앞서 언급하였듯 대학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폐교대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대학의 폐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책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관련 주제로 국내에서 최근 수

대학이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교·직원 및 대학을 거점으로 생활하는 학생들의 규모를 고려하면, 대학의 존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수 있다.

3) 『미디어투데이』, 「강득구 의원, “폐교대학과 그 소재 지역, 국가가 집중 관리해야”」, 2023. 1. 9., <http://www.mediatoday.asia/678680#>, 검색일자: 2023. 5. 12.

지방세수입은 지방의 자체 재정 여건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지역의 정책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지역의 삶의 질 및 지역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행된 선행연구로 이종관(2018), 김민규 외(2022), 천지은 외(2022)를 들 수 있다. 이종관(2018)은 대학의 설립과 폐교가 지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합성대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기적으로 지역 고용 및 지가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이는 폐교대학 관련 종사자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여 구성원들이 지역에 남는 경향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폐교라는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다.⁴⁾ 김민규 외(2022)는 동부산대학교 폐교 사례를 이용하여 폐교 지정 전후의 주택가격 변화를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폐교대학 주변 주택가격이 대학 쇠퇴에 따른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의 하락 및 정체 현상을 보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천지은 외(2022)는 폐교는 아니지만 대학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이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비율과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에 미친 영향을 합성대조 방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두 측면 모두에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본고는 대학 폐교가 지역의 지방세수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대학 폐교에 따른 지역의 우려는 일차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수입 여건은 지역의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대학 폐교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의 성격을 선행연구와 공유한다. 그러나 지방세수입에 대한 분석은 그 자체로 중요성이 있다. 폐교의 영향에 대한 우려 중 많은 부분은 지역경제의 발전 저해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방세수입은 지방의 자체 재정 여건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지역의 정책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지역의 삶의 질 및 지역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고용, 지가 등 지역경제와 관련된 여러 변수에 대학 폐교가 미치는 영향이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변화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몇 가지 예로 ① 대학 종사자들의 거주지, ② 서비스업 사업주 등 대학 폐교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크게 받는 인구집단의 거주지, ③ 대학 자체 및 지역경제와 관련된 민간 재산의 현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대학 폐교로 인근 숙박·요식업이 큰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요식업주가 해당 지자체가 아닌 인근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상황과 대학과 동일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두 개의 가상 상황을 비교하면, 대학의 폐교가 해당 지역의 지방세

4) 이종관(2018)은 대학 캠퍼스의 이전 사례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 또한 언급하였다.

수입(개인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미치는 영향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본고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소들의 폐교 당시 실제 상황이 반영된 영향을 분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학 폐교는 학생의 선호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학생의 선호도는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경제 여건 및 전망과 깊게 관련될 것이다. 따라서 폐교대학이 위치한 지역은 잠재적인 대조군이 될 수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많은 측면에서 상이한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지역의 지방세수입도 예외가 아니다. 해당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여 본고는 이종관(2018)이 이용한 합성대조법과 직관적으로 유사한 합성대조 이중차분법(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 이하 ‘SDID’)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은 대학 폐교 현황을 제시하며, 제Ⅲ장에서 데이터 및 분석 방법론을 소개한다. 제Ⅳ장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제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2000년 이후 대학 폐교 현황⁵⁾

현시점까지의 현황과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방향을 고려할 때, 대학의 폐교는 아직 본격적으로 발생한 상황은 아니다. 고영선(2023)에 따르면 2010년 일반대학 재학생 수는 140만명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2014년 153만명 수준까

본고는 합성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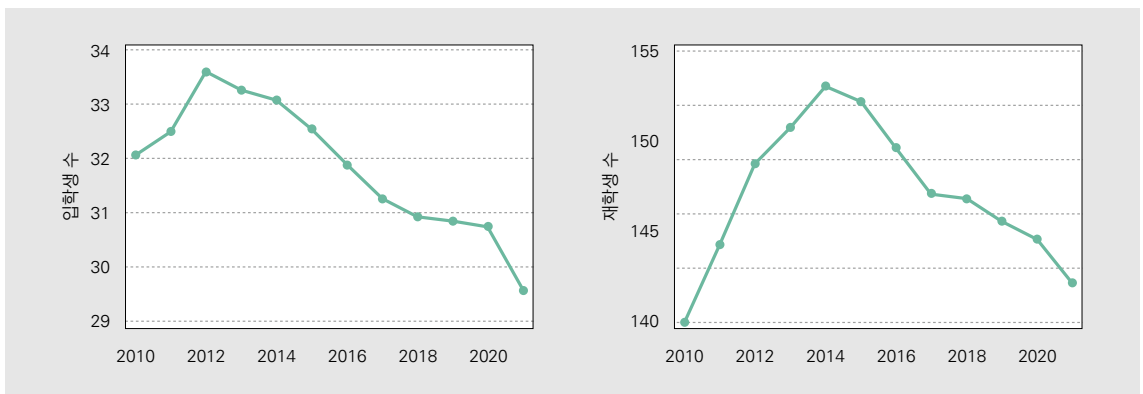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5) 본 장은 다음의 출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월간조선』, 『폐교대학… 2000년 이후 19곳, 대부분 지방대학』, 2023. 1. 20.,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6949&Newsnumb=20230116949, 검색일자: 2023. 5. 12.; 『월간조선』, 『소멸된 대학, 폐교대학에 가다 “내가 졸업할 때까지만 버텨주길 바랐지요”』, 2023년 4월호,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2304100030>, 검색일자: 2023. 5. 12.; 『한국대학신문』, 『동부선대학교, 강제폐교 위기… 폐교 후유증 예고』, 2020. 3. 2.,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6665>, 검색일자: 2023. 5. 12.; 『국민일보』, 『“절반 가격에도 안 팔려” 폐교대학, 청산까지 첩첩산중 [이슈&탐사]』, 2020. 9. 1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06373&code=61121111>, 검색일자: 2023. 5. 12.

[그림 2] 대학 입학자 및 재학생 수 추이

(단위: 만명)



출처: 고영선(2023), p. 22 [그림 3-1]

대학 수는
2014년 220개에서
2021년 212개로
8개 감소하였는데,
감소는 모두
비수도권 사립대학에서
나타났다.

지 증가하였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약 141만 5,0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수도권·비수도권)과 설립유형(국공립·사립)에 따라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증가율을 분리하여 살펴보면 수도권 국공립(8.5%), 사립(-1.3%)에 비해 비수도권 국립(-8.8%), 사립(-13%)의 감소율이 전체 재학생 수의 감소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대학 수는 2014년 220개에서 2021년 212개로 8개 감소하였는데, 감소는 모두 비수도권 사립대학에서 나타났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폐교 가능성이 높은 한계대학 또한 주로 비수도권에 위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1>은 2000년 이후 폐교대학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20개로 파악되었으며, 그중 18개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이다. 비수도권에 소재하였던 대학들을 살펴보다도 광역시에 위치하였던 폐교대학은 대구에 1개, 부산에 1개로 총 2개에 불과하여,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도시화가 더딘 지역을 중심으로 폐교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폐교 유형을 살펴보면 20개 중 14개 대학은 강제 폐쇄, 6개 대학은 자진 폐쇄한 것으로 분류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①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같은 사유로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③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학교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강제 폐쇄는 ‘학교 폐쇄 계고(시정지시)→학교 폐쇄 방침 확정→행정예고 및 청문 실시→학교 폐쇄 명령 및 결과 보고’ 순서로 진행하며, 학교 폐쇄 계고 이후 교육부의 시정 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한다.

대학 폐교와 동시에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 청산 절차를 진행하며, 법인을 유지한다면 잔여 재산은 법인에 귀속한다. 청산 과정에서 교직원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채무 변제절차 또한 이루어진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폐교대학 위치의 문제, 용도(학교용지·교육용 재산)의 문제 등으로 인해 폐교대학 건물의 매각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법인 해산·파산에 해당하는 폐교대학의 청산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2000년 이후 폐교대학 현황

학교명	폐교 연도	폐교 유형	소재지
광주예술대학교	2000	강제	전라남도 나주시
아시아대학교	2008	강제	경상북도 경산시
개혁신학교	2008	강제	충청북도 음성군
명신대학교	2012	강제	전라남도 순천시
성화대학	2012	강제	전라남도 강진군
선교청대학	2012	강제	충청남도 천안시
건동대학교	2013	자진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외국어대학교	2013	자진	대구광역시 북구
한민대학교	2013	자진	충청남도 논산시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2014	강제	충청남도 서천군
벽성대학	2014	강제	전라북도 김제시
인제대학원대학교	2015	자진	서울특별시 중구
대구미래대학교	2018	자진	경상북도 경산시
한중대학교	2018	강제	강원도 동해시
대구외국어대학교	2018	강제	경상북도 경산시
서남대학교	2018	강제	충청남도 아산시, 전라북도 남원시
동부산대학교	2020	강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해대학	2021	강제	전라북도 군산시
한려대학교	2022	강제	전라남도 광양시
계약신학대학원대교	2023	자진	경기도 광주시

출처: 『월간조선』, 『폐교대학... 2000년 이후 19곳, 대부분 지방대학』, 2023. 1. 20.,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6949&Newsnumb=20230116949, 검색일자: 2023. 5. 12.; 『월간조선』, 『소멸된 대학, 폐교대학에 가다 “내가 졸업할 때까지만 버텨주길 바랍니다”』, 2023년 4월호,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2304100030>, 검색일자: 2023. 5. 12.; 『한국대학신문』, 『논산 한민학교 '폐교 인가'』, 2013. 5. 30.,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573>, 검색일자: 2023. 5. 12.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0개 중
18개 대학이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며,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도시화가 더딘
지역을 중심으로
폐교가 이루어졌다.

III. 분석자료 및 방법론

1. 분석자료 구성

가. 분석 대상 사례 및 지역 선정

제Ⅱ장에서 소개한 대학의 폐교 사례를 활용하여 대학의 폐교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본고의 실증분석의 주

폐교는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 내생적인 결정임을 실증분석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안점이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분석대상 자료의 기간이 폐교 전·후 시점을 충분히 포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폐교는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 내생적인 결정임을 실증분석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데, 폐교 이전 기간 중 폐교의 영향을 받는 기초자치단체와 주요 재정 관련 변수들의 추세(trend)를 공유하는 적절한 대조군(control group)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폐교와는 다른 사건이지만 대학 캠퍼스의 존재 여부라는 측면에서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 캠퍼스의 신설 및 이전이 발생한 지역을 분석대상 선정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폐교의 영향을 받은 지역을 대학 캠퍼스의 타 지역 이전이 발생한 지역과 비교한다면, 실질적으로 캠퍼스가 존재하였다가 그 기능을 상실한 두 지역을 비교하게 되어 폐교의 영향을 적절히 추정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분석에 포함할 기간과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학 캠퍼스의 신설과 이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2>에서 이종관(2018)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내려받은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정보 표준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리한 2000년 이후 설립 및 캠퍼스 이전 사례를 제시하였다.⁶⁾

본고의 실증분석 방법론은 대조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폐교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한 지역별 변수의 변화 추세를 활용한다. 이에 따라 처치군과 최대한 유사한 대조군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자료의 최초 시점과 실제 폐교 발생 시점 간 일

<표 2> 2000년 이후 대학 설립 및 캠퍼스 이전 현황

학교명	설립·이전 연도	소재지	이전지역
금강대학교	2002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대학교	2003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남도 김해시
공주대학교(천안)	2005	충청남도 천안시	
신경대학교	2005	경기도 화성시	
건양대학교(대전)	2006	대전광역시 서구	
단국대학교	2007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기도 용인시
울산과학기술원	2009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원대학교	2009	충청북도 괴산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2021	경기도 의정부시	

6) 캠퍼스 신설이 아닌 대학원 신설 사례는 제외하였다.

출처: 이종관(2018), p. 11 <표 3-1>; 공공데이터포털, 전국대학 및 전문대학 정보 표준 데이터, <https://www.data.go.kr/data/15107736/standard.do?recommendDataYn=Y>, 검색일자: 2023. 5. 23.

정 기간의 시차가 존재할 필요가 있으며, 폐교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른 효과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폐교 이후 일정 기간에 대한 자료 또한 확보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분석에서 이용하는 지방재정 자료는 분류기준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구축하였다. 2008년과 폐교 연도 사이의 추세를 활용하여 대조군을 탐색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폐교 이후 일정 기간의 자료가 존재하는 사례로서 일차적으로 2018년 폐교된 대구미래대학, 한중대학, 대구외국어대학, 서남대학을 분석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대구미래대학과 대구외국어대학이 위치한 경상북도 경산시는 2008년 폐교된 아시아대학이 위치하였던 지역이다. 만약 2008년 폐교의 영향이 폐교 이후 일정 기간 지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기간의 추세와 유사한 대조군을 분석 과정에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본고의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남대학의 캠퍼스가 위치한 아산시는 인구의 규모와 입지 측면에서 동해시나 남원시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경산시, 아산시를 제외하고 한중대학이 위치한 강원도 동해시, 그리고 서남대학 남원캠퍼스가 위치한 전라북도 남원시를 분석 대상 처치지역으로 설정하였다.

폐교대학은 폐교가 최종적으로 일어나기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교의 충격이 실제 폐교된 연도부터 발생하였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폐교 연도보다 상당 기간 이전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대학이 정상 운영되지 않았다면, 폐교의 충격은 폐교 시점이 아닌 그 이전부터

본고는
한중대학이 위치한
강원도 동해시와
서남대학 남원캠퍼스가
위치한 전라북도 남원시를
분석 대상 처치지역으로
설정하였다.

〈표 3〉 폐교 이전 한중대와 서남대의 학생 및 교직원 수

학교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중대	학생	.	.	.	1,536	1,825	1,062	1,038
	교직원	.	.	.	146	107	97	108
서남대 (남원)	학생	4,386	6,160	2,070	1,841	1,679	1,671	1,386
	교직원	296	293	249	218	296	329	313
서남대 (아산)	학생	.	.	.	798	1,382	1,174	998
	교직원	.	.	.	112	112	115	107

출처: 한중대: 국가통계포털, 강원도동해시기분통계,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3. 5. 27.; 서남대(남원): 국가통계포털, 전라북도남원시기분통계,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3. 5. 27.

본고의 분석 과정에서 추정에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 표본에서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

발생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대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표 3>은 폐교 이전 일정 기간에 대한 한중대와 서남대의 학생 및 교직원 수를 제시하였다.

한중대의 2014~2017년 기간 학생 수는 2014년 1,536명에서 2017년 1,038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교직원 수 또한 146명에서 108명으로 유사하게 감소하였다. 입학지원자 수와 입학자 수는 2014년 각 1,427명, 391명에서 2017년 496명, 146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2016년에 학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서남대 남원캠퍼스의 학생 수는 2013년에 급격히 감소한 이후 2017년까지 비교적 완만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종합하면 폐교 이전 몇 년간을 살펴보았을 때 폐교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는 상당히 큰 폭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두 대학이 공통적으로 폐교 이전 기간 중 학생 수가 대폭 감소한 시점이 관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폐교 시점과 학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시점(한중대: 2016년, 서남대: 2013년)에 대한 분석 또한 수행한다. 폐교보다 앞선 시점에 대한 분석은 폐교의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의미 또한 지닌다.

처치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본고의 대조군을 구성하는 데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 과정에서 추정에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 표본에서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개교, 폐교 및 캠퍼스 이전 효과와의 혼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2008년 이후 개교, 폐교 및 캠퍼스 이전이 발생한 지역은 대조군 선정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분석 대상 처치지역이 비수도권임을 고려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로 분석 표본을 한정하였다. 표본이 포함하는 기간 중 행정구역 통합이 발생하였던 경상남도 마산시·창원시·진해시 및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군,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로 개편된 충청남도 연기군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을 분석 표본에서 제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혁신도시에 해당하는 지역 또한 분석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실증분석은 각 처치지역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 처치지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다른 처치지역을 대조군에 포함시킬 경우 처치 효과가 혼재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분석 대상 처치지역이 아닌 다른 처치지역은 분석 표본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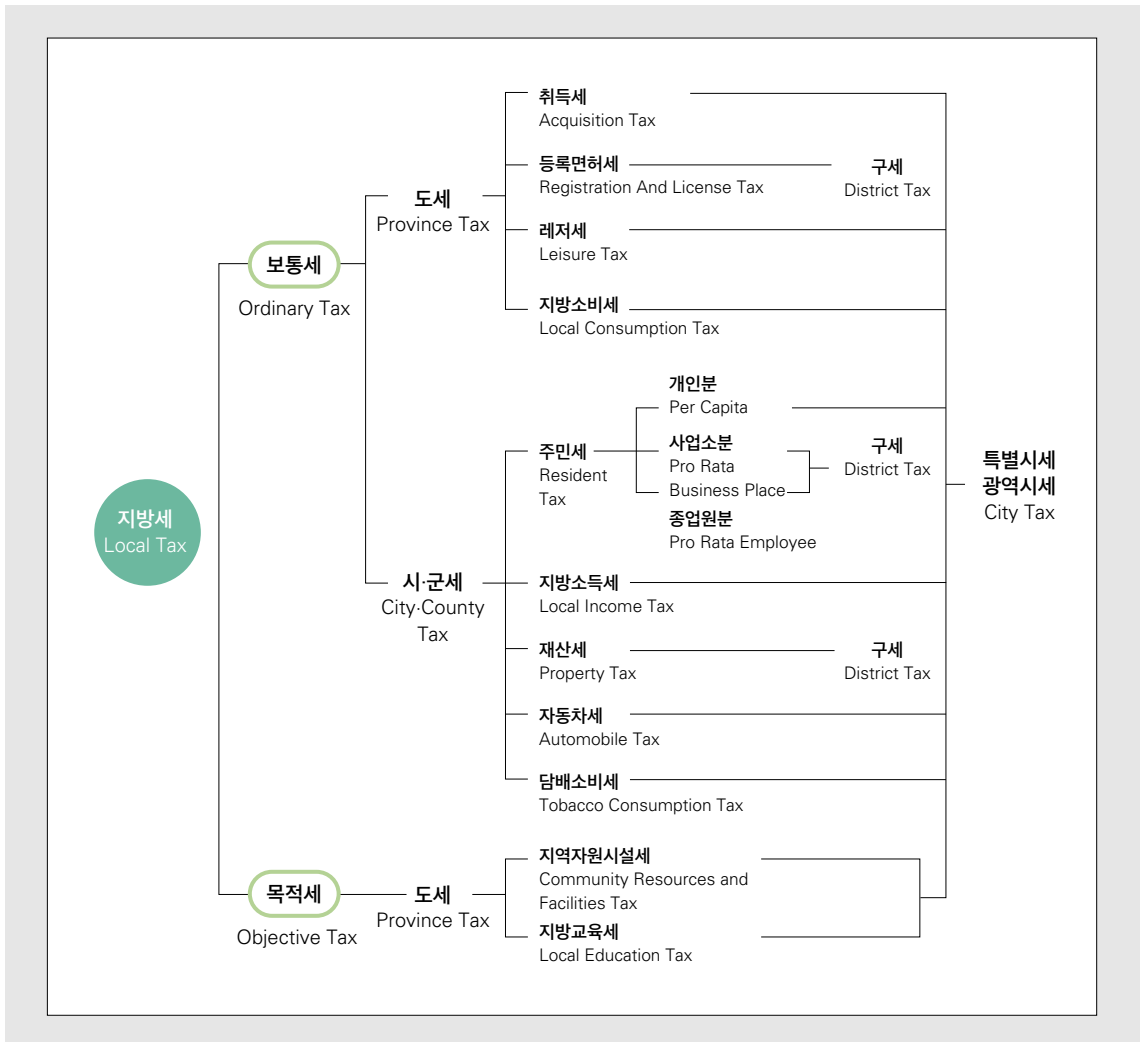
나. 분석자료 소개 및 기초통계량

본고의 핵심 변수는 지방재정365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재원별·단체별 세

입예산 자료를 통해 구축한 총계예산 기준 지방세수입 정보이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이 모두 합산된 수치이며, 2008-2022년 기간에 대해 자료를 구축하였다. [그림 3]은 지방세 구조를 나타낸다. 본고의 자료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구축되었으며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시·군세로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시·군의 세목별 구성비를 살펴

본고의 핵심 변수는 지방재정365 웹사이트의 자원별·단체별 세입예산 자료를 통해 구축한 총계예산 기준 지방세수입 정보이다.

[그림 3] 지방세 구조



- 주: 1. 광역시의 군지역은 도세와 시·군세로 세목을 구분함
- 2. 광역시의 구세는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포함
- 3.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기본세율),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임
- 4.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감면세액), 레저세임

출처: 행정안전부, 『2022 지방세통계연감』,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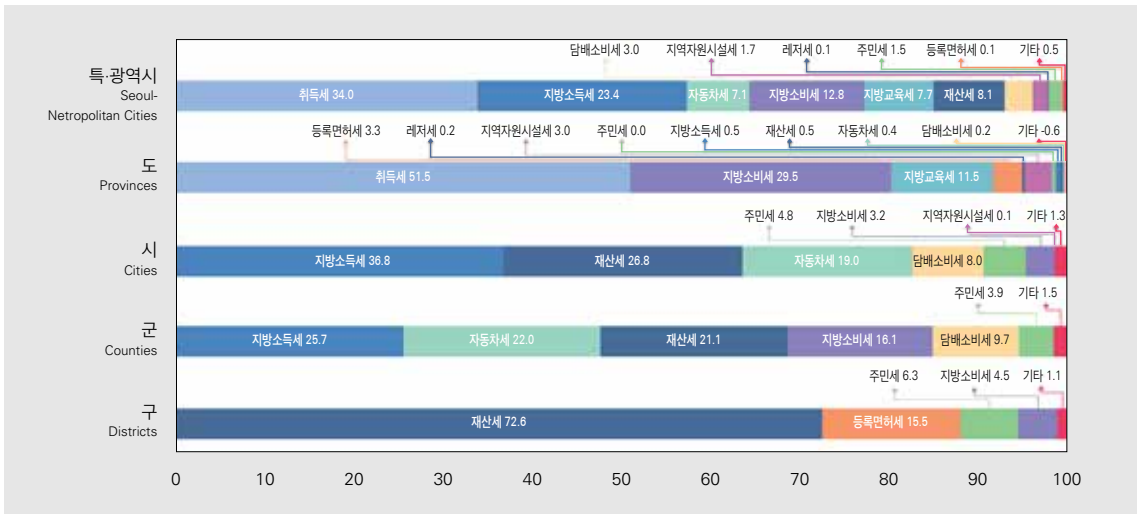
[그림 5]에서 처치지역의 지방세수입 증가 속도는 잠재 대조군의 평균 추세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보면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담배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는 거주자 및 유동인구의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으며, 자동차세 또한 간접적으로 소비 활동의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과 관련이 깊은 세목으로 판단된다. 재산세는 지역의 미래 가치를 합산한 결과에 부과된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의 경제 여건과 향후 발전을 모두 반영하는 변수로 생각된다.

분석 과정에서는 명목금액 및 2008년 금액을 100으로 설정하여 표준화한

[그림 4] 지방세 세목별 구성(자치단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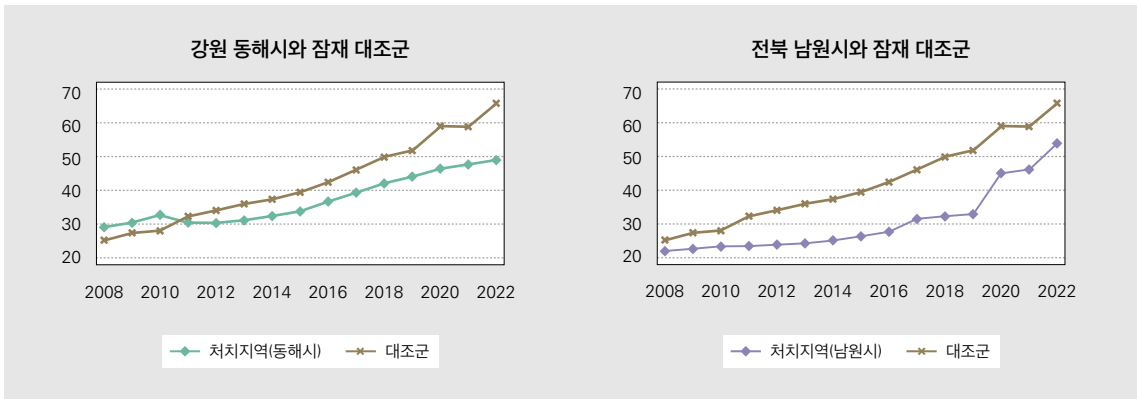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행정안전부, 「2022 지방세통계연감」, 2022.

[그림 5] 2008~2022년 지방세수입 추세

(단위: 십억원)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증가율 형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명목금액을 활용한 분석은 대조군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절대적인 규모가 비교적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표준화한 증가율을 이용한다는 의미는 대조군 구성 과정에서 예산의 증가 속도가 유사한 기초자치단체를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그림 5]에서 각각 한중대의 소재 지역인 강원도 동해시, 서남대 남원캠퍼스의 소재 지역인 전라북도 남원시의 지방세수입 변화를 앞서 언급한 대조군 구성 기준을 적용한 대조군의 평균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공통적으로 처치지역의 지방세수입 증가 속도는 잠재 대조군의 평균 추세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실증분석 방법론⁷⁾

본고는 합성대조 방식을 적용한 이중차분법(SDID)을 분석 방법론으로 활용한다. 대학의 폐교가 지역 재정에 미친 인과적 영향을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폐교가 발생한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대조군을 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폐교 발생 지역에서 관측된 변수들의 폐교 이전과 이후 시점에 걸친 변화만을 관찰해서는 이 변화가 행정구역상 폐교로 인해 발생한 효과인지, 또는 폐교와 무관하게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화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학 폐교가 아닌 특정 산업에 대한 충격 등 해당 시점에 발생한 다양한 사건의 영향이 시계열로부터 관측되는 변화에 혼재되어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분석 단위가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구성된 자료를 활용하여 적절한 대조군을 구성하는 작업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본고의 실증분석에서 폐교 발생 지역에 대한 적절한 대조군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①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 폐교 발생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폐교 발생지역과 많은 부분 유사한 지역들이 존재해야 하며, ② 해당 지역들은 관찰 가능한 특성의 유사성뿐 아니라 실제 연구의 주요 관심 변수들인 재정 관련 변수들이 처치 발생 이전 기간 동안 폐교 발생 지역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조군을 찾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 중 하나로 합성대조법(Synthetic Control Method)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합성대조법의 핵심은 폐교 발생 사건의 영향을 받은 처치군을 설정한 후, 다른 지역들

본고에서 활용한
합성대조 이중차분법은
일반적인 이중차분법과 달리
 k 개의 행정구역을 조합한
합성대조군을
생성하기 위해 각 k 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7) 고창수·이환웅·김우건(2022)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식 (1)은 처치군과
합성대조군 간
특성 벡터 \vec{z} 에 포함되는
변수들 값의 차이가
최소화되게끔
가중치를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한 후 조합함으로써 처치군과 유사한 대조군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조군의 생성 절차를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처치 행정구역 i 를 설정하고, 처치 사건의 영향권에 속하지 않는 행정구역들을 잠재적인 대조군(donor pool)으로 설정한다. 일반적인 이층차분법은 잠재적인 대조군에 속하는 모든 행정구역 k 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 후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합성대조법은 K 개의 행정구역을 조합한 합성대조군을 생성하기 위해 각 k 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vec{z}_i 를 행정구역 i 의 관측 가능한 특성들로 구성된 벡터로 정의하면, 합성대조법을 통해 처치군과 합성대조군 간 특성 벡터 \vec{z} 에 포함되는 변수들 값의 차이가 최소화되는 가중치를 구하게 된다. 많은 경우 \vec{z}_i 에는 처치 이전 시점의 종속변수가 포함되며, 이는 직관적으로 합성대조군의 과거 추세를 처치군과 맞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⁸⁾

구체적으로 합성대조법은 각 k 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K 개의 행정구역을 조합한 합성대조군을 만들어내는 절차를 취한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목적은 K 개의 행정구역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처치군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대조군을 만들기 위함이다. \vec{z}_i 를 행정구역 i 의 관측 가능한 특성들로 구성된 벡터로 정의하는 경우 합성대조법 가중치벡터 \vec{w}_K 는 다음과 같은 최적화를 통해 얻어진다.

$$\vec{w}_K = \arg \min_{w_k \in \vec{w}_K} (v_m (\vec{z}_i - \sum_k w_k \vec{z}_k))' (\vec{z}_i - \sum_k w_k \vec{z}_k) \quad \text{식 (1)}$$

식 (1)은 처치군과 합성대조군 간 특성 벡터 \vec{z} 에 포함되는 변수들 값의 차이가 최소화되게끔 가중치를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v_m 은 각 특성 변수에 부여되는 가중치이며 연구자가 이를 선택하게 된다.

\vec{z}_i 에 포함되는 변수들에 따라 최종적으로 구해지는 가중치는 변하게 된다. 따라서 \vec{z}_i 에 포함되는 변수들의 선택은 중요하다. Dube and Zipperer(2015)를 참고하면 \vec{z}_i 에 처치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의 종속변수들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이는 합성대조군의 과거 추세를 처치군과 맞춘다는 의미에서 직관적이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된 절차를 통해 얻어진 가중치벡터 \vec{w}_K^* 를 이용하여 임의의 사업 완료 시점 t 를 기준으로 합성대조법의 추정치를 도출하면 식 (2)와 같다.

8) 합성대조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 및 적용 사례는 Abadie(2021), 이중관(2018)을 참고할 수 있다.

$$\hat{\alpha}_t = Y_t - \sum_{k=2}^K w_k^* Y_{kt} \quad \text{식 (2)}$$

위와 같은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구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회귀분석의 표준오차를 구하는 공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Dube and Zipperer(2015)를 비롯한 합성대조법 관련 문헌에서 제시하는 방법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잠재적 대조군(donor pool)을 구성하는 각 행정구역 k 를 가상적으로 처치군으로 취급하고 남은 행정구역들을 k 의 잠재적 대조군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합성대조법을 이용한 추정치를 k 번 반복하여 얻어낸다. 다음으로 이렇게 얻어진 가상의(placebo) k 개 추정치의 분포에서 실제 처치군을 활용한 추정치가 충분히 유의미한 정도로 극단값을 가지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가상의 처치군은 실제 관심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k 개의 가상 추정치들과 비교하여 본래 추정치가 유의미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면 이는 분석하고자 하는 사건에 실제 유의미한 효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통계적 오차로 인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앞서 소개한 합성대조법과 이중차분법의 장점을 결합한 방법론으로 볼 수 있는 SDID를 실증분석에 활용한다(Arkhangelsky et al.(2021), 이하 ‘AAHIW’). AAHIW는 이중차분법과 합성대조법의 근본적인 가정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두 방법론의 장점을 결합한 SDID 방법론을 제안하고 추정치의 성질을 검증하였다.

SDID 방법론의 주요 골자는 관측치 i , 시간 t 로 구성된 패널 형태의 자료를 처치군과 대조군, 처치 이전과 이후 기간으로 분리한 후 대조군 관측치 i 에 대한 가중치와 처치 이전 각각의 기간 t 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각 가중치는 ① 관심 변수의 처치군 평균 관측값과 대조군의 가중합 값이 처치 이전 매 기간에 대해 최대한 유사하게, 그리고 ② 모든 관측치에 대해 관심 변수의 처치 이전 기간 가중합 값과 처치 이후 기간 평균값이 최대한 유사하게 구해진다.

AAHIW에 따르면 종속변수 Y 에 대한 SDID 방법론의 처치효과 추정치 $\hat{\tau}^{sdid}$ 는 다음의 최소화 문제를 이용하여 구해진다.

$$(\hat{\tau}^{sdid}, \hat{\mu}, \hat{\alpha}, \hat{\beta}) = \arg \min_{\tau, \mu, \alpha, \beta} \sum_{i=1}^N \sum_{t=1}^T (Y - \mu - \alpha_i - \beta_t - Treat_{i,t} \tau)^2 \hat{\omega}_i \hat{\lambda}_t \quad \text{식 (3)}$$

SDID 방법론의 주요 골자는 관측치 i , 시간 t 로 구성된 패널 형태의 자료를 처치군과 대조군, 처치 이전과 이후 기간으로 분리한 후 대조군 관측치 i 에 대한 가중치와 처치 이전 각각의 기간 t 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폐교 발생 지역과 잠재적인 대조군들이 지역 규모 측면에서 크게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SDID 방법론의 장점은 본고의 실증분석 과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hat{\omega}_i^{sdid}$ 는 개별 관측치에 부여되는 합성대조 가중치이며, $\hat{\lambda}_t^{sdid}$ 는 처치 이전 기간에 부여되는 시점 가중치이다. SDID 추정에 이용되는 가중치인 $\hat{\omega}_i^{sdid}$ 과 $\hat{\lambda}_t^{sdid}$ 는 가중합이 1이 되어야 한다는 제약 조건 아래 다음 목적함수들의 최소화 문제를 통해 각각 도출된다.⁹⁾

$$\sum_{i=1}^{T_{pre}} (\omega_0 + \sum_{i=1}^{N_{co}} \omega_i Y_{i,t} - \frac{1}{N_{tr}} \sum_{i=N_{co}+1}^N Y_{i,t})^2 \quad \text{식 (4)}$$

$$\sum_{i=1}^{N_{co}} (\lambda_0 + \sum_{i=1}^{T_{pre}} \lambda_i Y_{i,t} - \frac{1}{T_{post}} \sum_{i=T_{pre}+1}^T Y_{i,t})^2 \quad \text{식 (5)}$$

식 (4)를 최소화하는 ω_0, ω_i 가 구해지고, 식 (5)를 최소화하는 λ_0, λ_t 가 구해짐으로써 식 (3)에 이용되는 SDID 가중치가 구해진다. 관측치 수를 의미하는 N 과 시점의 수를 의미하는 T 에 부여된 하첨자 $tr, co, pre, post$ 는 각각 처치 군, 대조군, 처치 이전 시점, 처치 이후 시점을 의미한다.

이 방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대조군을 구성하는 i 중 처치군과 유사한 i 에 보다 큰 가중치를 부여하고 처치 이후 기간과 유사한 t 에 보다 큰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며, 해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처치 효과를 식별하게 된다. SDID 방법론은 합성대조법의 장점인 처치군의 추세를 따르는 대조군 형성, 그리고 이중차분법의 장점인 관측치의 수준(level)에 대한 불변성 및 패널 관측치를 활용한 통계적 추론 가능성을 모두 가진다는 점에서 두 방법론에 비해 이점이 있다. 본고의 분석 지역인 폐교 발생 지역과 잠재적인 대조군들이 지역 규모 측면에서 크게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SDID 방법론의 장점은 본고의 실증분석 과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IV. 실증분석 결과

1. 실증분석 개요

본고는 앞서 소개한 SDID 방법론을 활용하여 대학의 폐교가 지방세수입에

9) SDID에 적용되는 가중치의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AAHIW의 서술에 비해 간략화된 목적함수를 제시하였다. 실제 AAHIW의 최소화 문제 및 기술적인 이슈를 보다 상세히 이해하기 원하는 독자들은 해당 문헌의 4091, 4092쪽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식 (4), (5)에서 서술의 간결성을 위해 생략하였으나 최소화 문제에 포함된 정규화 모수(regularization parameter)는 가중치의 유일 해의 존재성을 보장하고 가중치를 분산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한중대(강원도 동해시)와 서남대 남원캠퍼스(전라북도 남원시)의 폐교 시점은 2018년으로 동일하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 한중대는 2016년부터, 서남대는 2013년부터 학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학생 수의 감소는 폐교와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과 폐교의 기대효과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분석 또한 수행한다. 지방세수입 변수가 예산임을 고려하면, 폐교 또는 학생 수 감소의 영향이 직접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되는 결과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맞추어 처치 시점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의 강건성 검토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인접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처치지역인 강원 동해시 및 전북 남원시와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를 대조군 구성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서남대 의과대학의 수련 병원(남광병원)¹⁰⁾ 취소 처분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병원 소재지였던 광주광역시 서구 또한 대조군 구성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은 일부 지역에서 처치 시점과 유사한 시점에 다른 대규모 개발이 발생하는 등 특정 사건의 발생이 추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중치가 가장 높은 상위 다섯 곳을 제외하고 결과를 재 추정하였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은 일부 지역에서 처치 시점과 유사한 시점에 다른 대규모 개발이 발생하는 등 특정 사건의 발생이 추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중치가 가장 높은 상위 다섯 곳을 제외하고 결과를 재추정하는 강건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2. 지역 사례 1: 동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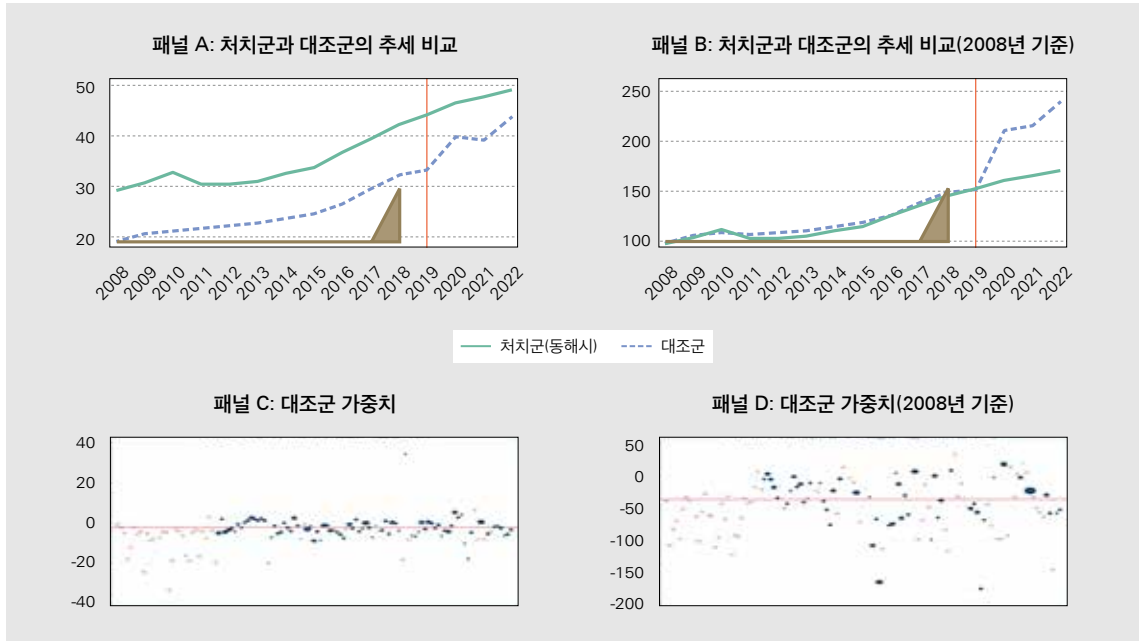
[그림 6], [그림 7]은 지방세수입에 대해 처치지역인 강원 동해시와 SDID 대조군 사이의 폐교 전후 추세를 비교한 그림과 SDID 대조군의 가중치 분포를 제시한다. [그림 6]은 폐교 시점에 대한 분석으로 2019년이 처치 시점이며, [그림 7]은 학생 수의 대폭 감소에 대한 분석으로 2017년이 처치 시점이다. 패널 A, C는 지방세수입이 십억원 단위로 표시된 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이며, 패널 B, D는 2008년을 100으로 설정하고 표준화한 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이다.

그림의 패널 A, B에는 점선과 실선이 제시되었는데, 실선은 처치군인 강원 동해시 지역의 세입 또는 세출의 추세를 의미하며 점선은 SDID 방법론을 이용하여 생성된 가중치로 구성된 대조군의 추세를 의미한다. 그림의 적색 수직선은 처치 시점을 나타낸다. 그림의 처치 시점 이전 기간을 살펴보면 삼각형 모양이 확인되는데 이는 앞서 SDID 방법론에 대한 서술에서 언급된 바 있는 시점

10) 『Medical Times』, 「남광병원 이어 서남대 ‘충격적인’ 국민 사기극 들뜸」, 2012. 8. 31., <https://www.medicaltimes.com/News/1077156?ID=1077134>, 검색일자: 2023. 8. 4.

[그림 6] 추정 결과: 한중대(강원도 동해시),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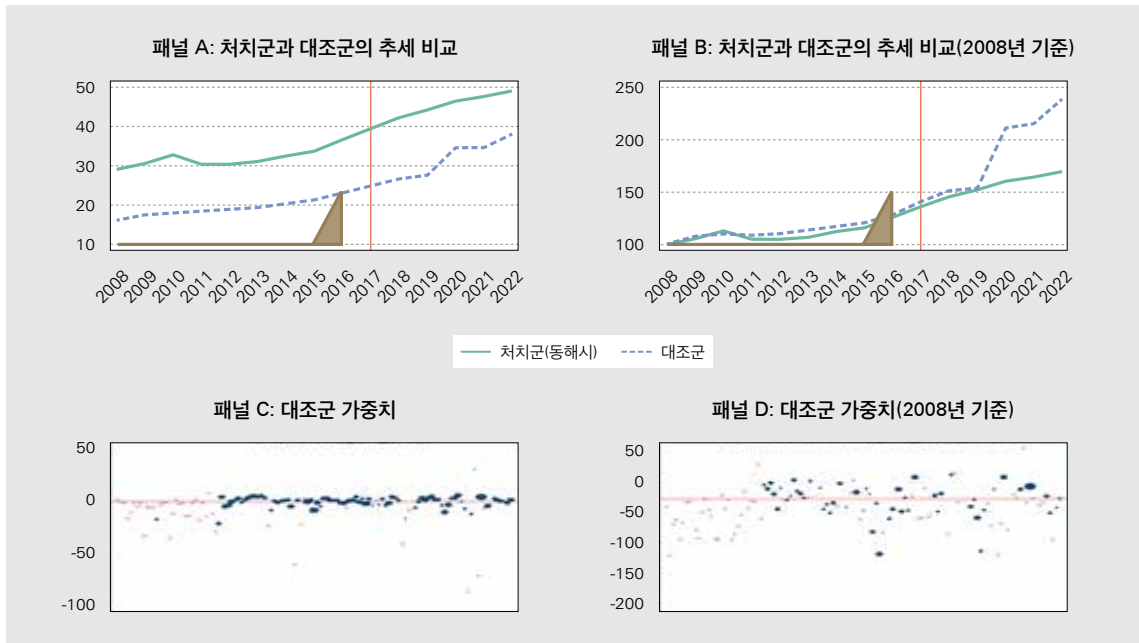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2008년=100 기준으로 표준화)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7] 추정 결과: 한중대(강원도 동해시), 2017년

(단위: 십억원, 2008년=100 기준으로 표준화)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가중치로, 삼각형의 높이가 높은 시점에 가중치가 높게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널 C, D는 자료에 포함된 처치지역 이외 지역들에 대한 SDID 대조군 구성 가중치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패널 C, D의 가로축은 변수값이 아닌 지역이며, 강원도 동해시의 대조군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지역마다 그림에 점이 표시된다. 세로축은 처치 전·후 기간 추정 대상 변수의 기간 가중평균 변화 크기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개별 지역과 처치지역인 강원 동해시와의 차이를 의미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강원 동해시에 대한 처치 전·후 고용 기간

의 가중평균 변화는 $\widehat{\delta}_{treat} = \frac{1}{T_{post}} \sum_{t=T_{pre}+1}^T Y_{treat,t} - \sum_{t=1}^{T_{pre}} \widehat{\lambda}_t Y_{treat,t}$ 로 표현

되며, 가로축에 속하는 지역 c 의 변화는 $\widehat{\delta}_c = \frac{1}{T_{post}} \sum_{t=T_{pre}+1}^T Y_{c,t} - \sum_{t=1}^{T_{pre}} \widehat{\lambda}_t Y_{c,t}$ 로

표현된다. 이때 세로축은 각 c 에 대한 $\widehat{\delta}_{treat} - \widehat{\delta}_c$ 수치를 의미하며, 세로축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처치 전·후의 변화 측면에서 강원 동해시와 유사한 지역임을 의미한다. 패널 C, D의 각 점의 크기는 SDID 방법론에 의해 부여되는 가중치의 크기에 비례하여 표현되며, “x”표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SDID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 4>는 [그림 6], [그림 7]의 추정 결과를 표준오차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그림 6], [그림 7]의 패널 A, B는 처치지역인 강원도 동해시의 지방세수입이 처치 이후 합성대조군에 비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표 4>에 제시된 표준오차를 고려하면 통계적 유의성은 대체로 낮은 편으로, 대학의 폐교 또는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가 지방세 수입 예산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단, 2008년을 100으로 표준화한 증가율에 대한 추정 결과는 -29 ~ -37% 수준에서

<표 4> 추정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대체로 낮은 편으로,
대학의 폐교 또는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가
지방세수입 예산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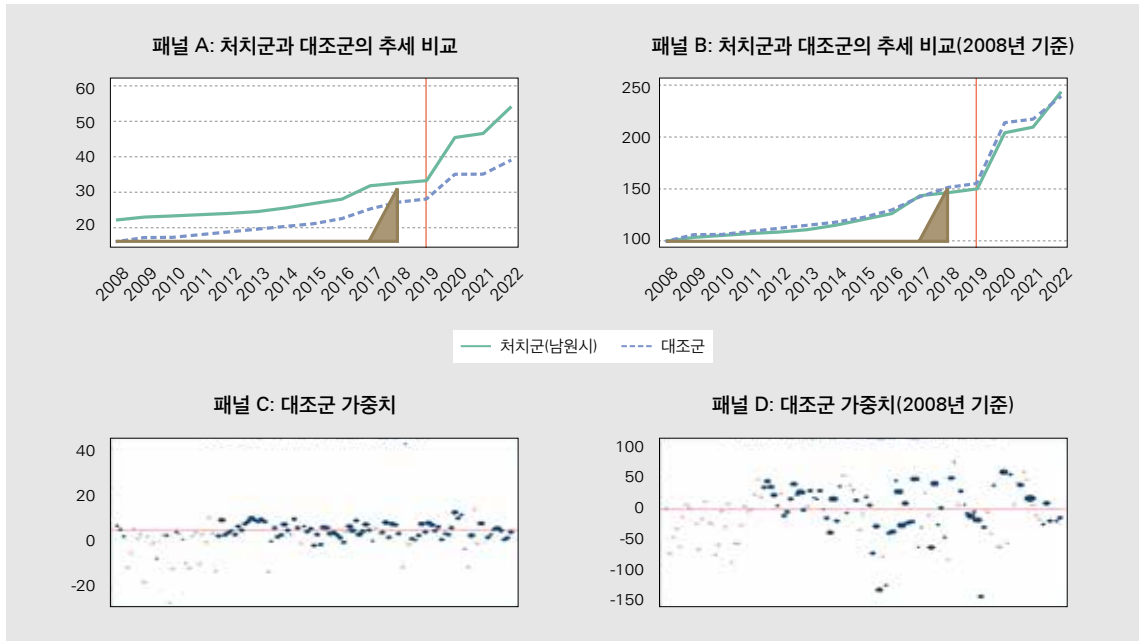
<표 4> 추정 결과: 한중대(강원도 동해시)

구분	십억원		2008년=100으로 표준화	
	2019년 처치	2017년 처치	2019년 처치	2017년 처치
추정치 (표준오차)	-2.147 (11.148)	-0.078 (18.217)	-37.327 (38.421)	-28.614 (35.227)

주: () 안은 표준오차이며, *** p < 0.01, ** p < 0.05, *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8] 추정 결과: 서남대(전라북도 남원시),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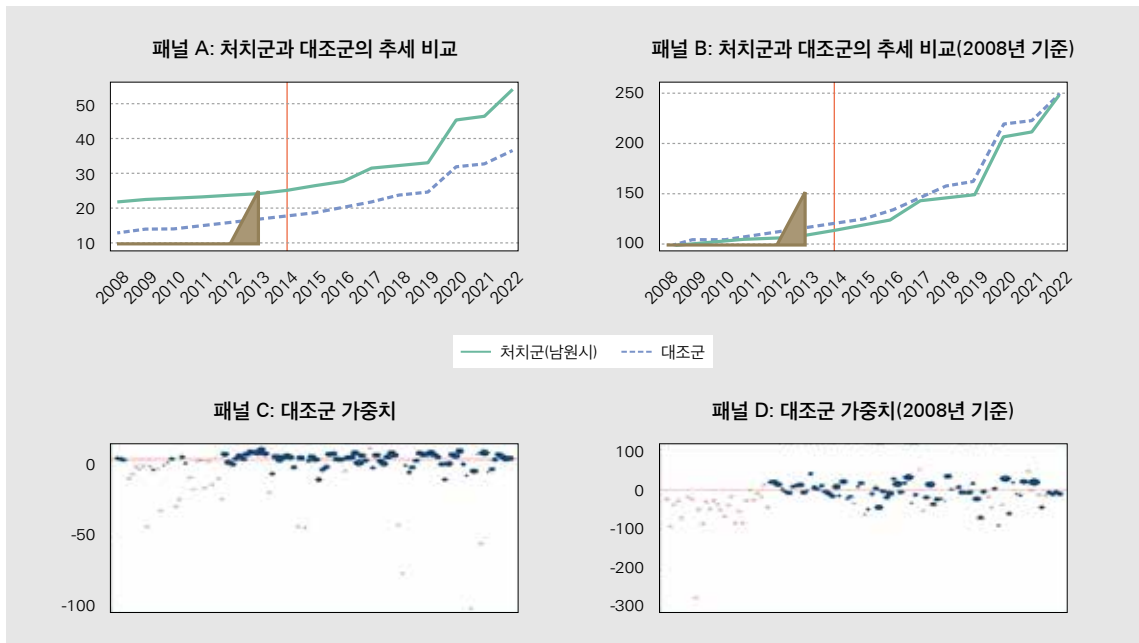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2008년=100 기준으로 표준화)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9] 추정 결과: 서남대(전라북도 남원시), 2014년

(단위: 십억원, 2008년=100 기준으로 표준화)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일정 수준의 유의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함에 따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그림 7]의 패널 C, D는 대조군에 대한 가중치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기보다 다소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주어졌음을 보여준다. 특정 지역에 대한 가중치가 높게 설정되는 것 자체는 문제점은 아니나, 해당 지역에 발생한 다른 사건들과 대학의 폐교 시점이 맞물릴 경우 잘못된 방향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지역 사례 2: 남원시

[그림 8], [그림 9]은 지방세수입에 대해 처치지역인 전북 남원시와 SDID 대조군 사이의 폐교 전후 추세를 비교한 그림과 SDID 대조군의 가중치 분포를 제시한다. [그림 8]는 폐교 시점에 대한 분석으로 2019년이 처치 시점이며, [그림 9]는 학생 수의 대폭 감소에 대한 분석으로 2014년이 처치 시점이다.

<표 5> 추정 결과: 서남대(전북 남원시)

구분	십억원		2008년=100으로 표준화	
	2019년 처치	2014년 처치	2019년 처치	2014년 처치
추정치 (표준오차)	5.276 (11.148)	3.789 (8.772)	-0.059 (38.434)	-1.649 (24.200)

주: () 안은 표준오차이며, *** p < 0.01, ** p < 0.05, *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는 [그림 8], [그림 9]의 추정 결과를 표준오차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그림 8], [그림 9]의 패널 A, B는 강원 동해시에 대한 결과와 다르게 금액 규모에 대한 분석에서는 합성대조군에 비해 지방세수입의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 5>에 제시된 표준오차를 고려하면 통계적 유의성은 매우 낮은 편으로, 대학의 폐교 또는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가 지방세수입 예산에 효과를 미쳤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그림 7]과 유사하게 [그림 8], [그림 9]의 패널 C, D는 대조군에 대한 가중치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기보다 다소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주어졌음을 보여준다.¹¹⁾

[그림 6], [그림 7]과 유사하게 [그림 8], [그림 9]의 패널 C, D는 대조군에 대한 가중치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기보다 다소 분산된 형태임을 보여준다.

11) 패널 B에 따르면 합성대조군이 처치군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처치군의 추세가 2014년 이전 합성대조군에 비해 부진함에 따라 추정 결과는 음(-)의 방향으로 편의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건성 분석 결과,
제2절과 제3절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대학의 폐교와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가 지자체의
지방세수입에 미친
유의한 영향을
관찰할 수 없었다.

4. 강건성 분석

<표 6>은 인접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한 강건성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처치지역인 강원 동해시 및 전북 남원시와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를 대조군 구성에서 제외하였으며, 서남대 의과대학의 수련병원 소재지였던 광주광역시 서구 또한 대조군 구성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처치 시점은 폐교에 대한 분석과 동일하게 2019년으로 설정하였다.

<표 6> 강건성 분석 결과: 파급효과 고려

구분	한중대		서남대	
	십억원	2008년=100으로 표준화	십억원	2008년=100으로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2.078 (5.485)	-33.077 (32.161)	5.341 (5.485)	3.411 (32.167)

주: () 안은 표준오차이며, *** p < 0.01, ** p < 0.05, *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8>은 분석 과정에서 높은 SDID 가중치를 부여받은 상위 다섯 곳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표 7>은 [그림 6], [그림 8]에 제시된 분석의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합성대조 가중치가 높은 다섯 곳을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다. <표 8>의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지역을 제외한 후 [그림 6], [그림 8]와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표 7> 가중치 상위 5개 지역

구분	한중대		서남대	
	십억원	2008년=100으로 표준화	십억원	2008년=100으로 표준화
지역명 (가중치)	경남 의령 (0.033)	경남 의령 (0.082)	전남 화순 (0.020)	경남 의령 (0.039)
	전남 화순 (0.031)	충남 부여 (0.044)	경남 의령 (0.019)	전남 화순 (0.033)
	충남 부여 (0.027)	전남 화순 (0.043)	전남 영광 (0.017)	전남 담양 (0.030)
	충남 홍성 (0.024)	전북 장수 (0.035)	경북 울진 (0.017)	충북 단양 (0.028)
	강원 강릉 (0.022)	경북 울진 (0.033)	전남 담양 (0.017)	경북 청송 (0.027)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8> 강건성 분석 결과: 가중치 강건성

구분	한중대		서남대	
	십억원	2008년=100으로 표준화	십억원	2008년=100으로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2.103 (10.486)	-36.312 (34.235)	4.952 (9.193)	-3.526 (42.927)

주: () 안은 표준오차이며, *** p < 0.01, ** p < 0.05, *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본고의 분석 결과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대학이
폐교된 결과로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강건성 분석 결과, 제2절과 제3절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대학의 폐교와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가 지자체의 지방세수입에 미친 유의한 영향을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표준오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중대(강원 동해시)가 동해시 지방세수입의 증가율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 금액으로 표현된 규모에 대한 추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부정적 영향이 강하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소결 및 분석의 한계점

본 장은 강원도 동해시 소재 한중대,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서남대 남원캠퍼스의 폐교 및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가 해당 지역의 지방세수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예산 과정을 고려하여 폐교 및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한 첫 번째 해의 다음 해 지방세수입 예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학의 폐교와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가 지자체의 지방세수입에 미친 유의한 영향을 관찰할 수 없었다.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합성대조군에 포함되는 지역을 제한하거나 본 분석에서 높은 가중치를 받았던 지역을 제외하고 강건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분석 결과는 대체로 강건하게 유지되었다.

다만 본 분석은 한계점이 존재하며, 해석 과정에서 이러한 한계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두 개의 사례를 이용한 분석이어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점이 존재한다. 폐교대학의 특성, 시점 및 지역 경제상황 등이 상이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어서 분석 대상 대학이 폐교 시점보다 상당 기간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 본 분석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본고의 분석 결과는 대학 폐교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재정수입에 유의미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9월 7일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정책이 발표된 이후 서남대는 2010년, 한중대는 2011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다.¹²⁾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에 따라 교직원 또는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거나 지역에서 수행하는 경제활동이 감소하였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석의 처치 시점에서는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일 수 있음에 따라 분석 결과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대학이 폐교된 결과로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고용 위기 등을 비롯하여 처치지역 또는 합성 대조군에 포함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의 시기가 본 분석 기간과 중첩될 경우, 추정 결과가 이러한 사건들과 혼합됨으로써 올바른 추정치를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기본 분석에서 가중치가 높게 부여되었던 지역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추정하는 강건성 검정을 통해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지만, 완벽한 검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고는 강원도 동해시 소재 한중대,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서남대 남원캠퍼스의 폐교 및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가 해당 지역의 지방세수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예산 과정을 고려하여 폐교 및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한 첫 번째 해의 다음 해 지방세수입 예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학의 폐교와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가 지자체의 지방세수입에 미친 유의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대조군의 선정 과정에 대한 강건성 분석 또한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대체로 강건하게 유지되었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대학의 폐교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재정수입에 유의미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학생들의 인근 지역 대학 편입, 대학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산업 및 고용의 빠른 재편 등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일 수 있다. 또한 폐교 이전 상당 기간 해당 대학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폐교 시점 자체의 충격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다만 폐교대학의 특성, 시점, 및 지역경제 상황 등의 많은 요소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상이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에서 두 대학의 사례를 분

12) 『프라이믹경제』, 「[10년 전 오늘] 정부재정지원대학 발표 10년...'부실대학' 여전」, 2022. 9. 7.,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16939>, 검색일자: 2023. 8. 4.; 천지은 외 (2022).

석한 본고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점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 변화의 방향을 고려할 때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더라도 향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대학들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분석 결과는 이에 해당하는 대학들의 폐교가 지역의 재정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정상 운영이 어려운 대학의 폐교를 늦추기보다 대학부지 및 인근 지역의 토지 활용이 보다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원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다만 본고의 분석에는 앞서 언급하였듯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분석 시점에 앞서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 또한 강건성 검정을 수행하였음에도 추정 결과에 동일 기간 처치지역 또는 합성대조군에 포함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의 영향이 혼재되어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한계점이 존재하며,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한계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정상 운영이 어려운 대학의 폐교를 늦추기보다 대학부지 및 인근 지역의 토지 활용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영선,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3-01, 한국개발연구원, 2023.
- 고창수·이환웅·김우건,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의 재정적·경제적 영향 분석』, 제22권 제14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김민규·김현수·최열, 「대학의 폐교지정이 주변 지역 공동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 동부산 대학교를 중심으로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42권 제2호, 2022, pp. 273~279.
- 이종관, 『대학교 캠퍼스가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시리즈 2018-02, 한국개발연구원, 2018.
- 천지은·최은호·김민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 통제집단 합성법(SCM)의 적용 -」,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9권 제3호, 2022, pp. 81~108.

통계청, 『2020~2070 장래인구추계』, 2021.

행정안전부, 『2022 지방세통계연감』, 2022.

_____, 『지방재정365』, <https://lofin.mois.go.kr/portal/main.do>, 검색일자: 2023. 8. 4.

Abadie, A., “Using Synthetic Controls: Feasibility, Data Requirements, and Methodological Aspect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9(2), 2021, pp. 391~425.

Arkhangelsky, D., Susan A., David A. H., Guido W. I., and Stefan W., “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 *American Economic Review*, 111(12), 2021, pp. 4088~4118.

Dube, A. and Ben, Z., “Pooling Multiple Case Studies Using Synthetic Controls: An Application to Minimum Wage Policies,” IZA Discussion Papers 8944, Institute of Labor Economics(IZA), 2015.

Ko, C., “The Fiscal Consequences of Campus Closing,” Working Paper, 2023.

『국민일보』, 『“절반 가격에도 안 팔려” 폐교 대학, 청산까지 첩첩산중[이슈&탐사]』, 2020. 9. 1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06373&code=61121111>, 검색일자: 2023. 5. 12.

『미디어투데이』, 『강득구 의원, “폐교대학과 그 소재 지역, 국가가 집중 관리해야”』, 2023. 1. 9., <http://www.mediatoday.asia/678680#>, 검색일자: 2023. 5. 12.

『서울경제』, 『대학 5곳 중 4곳 미충원… 재앙이 된 학령인구 감소』, 2023. 2. 5., <https://www.sedaily.com/News/NewsView/NewsPrint?Nid=29LMTT5V3B>, 검색일자: 2023. 5. 12.

『월간조선』, 『폐교대학… 2000년 이후 19곳, 대부분 지방대학』, 2023. 1. 20.,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6949&Newsnumb=20230116949, 검색일자: 2023. 5. 12.

_____, 『소멸된 대학, 폐교대학에 가다 “내가 졸업할 때까지 버텨주길 바랍니다”』, 2023년 4월호,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2304100030>, 검색일자: 2023. 5. 12.

『프라임경제』 「[10년 전 오늘] 정부재정지원대학 발표 10년… ‘부실대학’ 여전」, 2022. 9. 7.,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16939>, 검색일자: 2023. 8. 4.

『한국대학신문』 「논산 한민학교 ‘폐교 인가」, 2013. 5. 30.,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573>, 검색일자: 2023. 5. 12.

_____, 「동부산대학교, 강제폐교 위기…폐교 후유증 예고」, 2020. 3. 2.,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6665>, 검색일자: 2023. 5. 12.

『Medical Times』 「남광병원 이어 서남대 ‘충격적인’ 국민 사기극 들통」, <https://www.medicaltimes.com/News/1077156?ID=1077134>, 검색일자: 2023. 8. 4.

02

고용형태 다변화와 사회보험 제도 변화의 필요성¹⁾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moonkim@kipf.re.kr)

1. 도입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상당히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큰 변화 중 하나는 더 이상 단일한 고용형태에 머물지 않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단일한 고용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점이다. 임금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유튜버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거나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졌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불경기에는 배달라이더로 활동할 수 있다. 프리랜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경우 동시에 여러 업체와 계약을 수행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러한 ‘고용형태 다변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세계화, 기술변화, 노동비용 증가 등의 여러 요인이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변화로 인하여 플랫폼 경제가 발달하면서 부업 혹은 복수취업의 기회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노동시장의 제도 변화나 물가 상승 같은 이유로 부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²⁾

‘고용형태 다변화’ 현상은 정부의 조세 징수 및 사회보험료 부과 측면, 재정정책 지출 및 보험급여 측

- 1) 본고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나 소득기반 고용보험 및 사회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저자가 수행했던 많은 연구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특히, 고창수 부연구위원과 함께 참여한 소득기반 사회보험과 관련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과제(이병희 외, 2023)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동안 본 주제를 연구하면서 저자와 함께 연구했거나 자문을 해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단, 본고에서 발견되는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
- 2)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2022)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부업종사의 비율이 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부업종사예의 의사결정에는 경기 상황, 코로나19 장기화, 플랫폼 산업 발달(배달앱 확산 등), 고용형태 다변화 등의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는 바, 부업종사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면에서 상당한 정책 함의를 갖는다.

첫째, 조세 및 사회보험료 징수 혹은 부과 체계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변화된 고용형태를 징수 및 부과 체계에서 반영하지 않으면 법적 허점이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가 심각할 경우 조세 수입 및 사회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성격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가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³⁾

둘째, 조세재정 지원 및 보험급여 지출 역시 변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는 취약집단에 대한 일정한 가정하에 다양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나 소상공인 등 일정한 취업집단 내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배타적으로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여러 취업형태를 동시에 보유하는 개인에게는 이러한 정부지원이 중복적으로 주어지거나 혹은 원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고용형태 다변화 현상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왔는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특고·프리랜서의 실업급여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2021년 7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⁴⁾ 노무제공자란 특고, 플랫폼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용어로, 근로자와 사업자 중간의 회색영역에 속하는 고용형태(혹은 취업형태)를 갖는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의 성과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큰 폭으로 해소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임의가입)에게만 적용되었고, 사용자 중 속성이 존재하는 등의 근로자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었다.

둘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고용형태 다변화의 특성을 이미 일부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대상자는 복수의 일자리에 취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며 실업급여 수급조건 검토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인별 합산소득을 계산한다. 또한 연간이 아닌 월별 소득변화를 고려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을 따진다. 이는 전술한 정부의 수입과 지출 측면의 한계를 일부 극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주기나 소득출처 개수와 상관없이 고용보험료를 과세하고(수입 측면), 구직급여는 월별 소득변동성에 기반하여 짧은 노동시장 이행주기를 반영했다(지출 측면)는 점에서 그러하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보험 차원에서의 조치만으로는 충분하

‘고용형태의 다변화’ 현상은 정부의 조세 징수 및 사회보험료 부과 측면, 재정정책 지출 및 보험급여 측면에서 상당한 정책 함의를 갖는다.

3) 단, 개별 사회보험의 편익을 고려하면 사회보험료 부과형평성이 저해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간 근로자와 고용자 관점의 비용 차이에 대해서는 심혜정(2020), 강신혁 외(2021)를 참고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보도자료, 2021. 6. 30.) 참조. 2023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본고는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와
도전 과제를 제시하여
고용형태 다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의
변화 방향을 검토한다.

지 않다. 다양한 고용형태의 출현, 복수취업의 가능성, 역동적인 노동시장 이행
행태 등 세 가지 요소로 요약되는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를
피해야 할 사회보험이 비단 고용보험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고용형태 다변화는 조세(수입), 재정(지출), 사회보험제도(사회보험료
부과 및 급여)가 모두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수입 측면에서 자격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 제도의 변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⁵⁾ 또한 고
용형태 다변화는 복지지출이나 사회보험 급여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함의를 가
진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개인 또는 가구의 고용형태 간 이행행태를 신속하게 파
악하는 경우 긴급한 복지지출의 수요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중요한 과제 중에서도 사회보험 적용 및 사회보험료 부과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
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 현행 사회보험제도 현황과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제Ⅳ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한 실증증거⁶⁾

본 장에서는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한 실증증거를 검토하고자 한다.

<표 1> 가구원 유형별·연령대별 복수취업 현황

(단위: 세, 명, %)

가구원 유형	연령대	표본	일자리 개수=1		일자리 개수=2		일자리 개수=3		복수 일자리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가구주	18~29	401	356	88.78	36	8.98	9	2.24	11.22
	30~39	535	495	92.52	34	6.36	6	1.12	7.48
	40~49	561	521	92.87	37	6.60	3	0.53	7.13
	50~59	597	554	92.80	39	6.53	4	0.67	7.20
	60~64	245	217	88.57	25	10.20	3	1.22	11.43
배우자	18~29	41	39	95.12	2	4.88	0	0.00	4.88
	30~39	166	150	90.36	15	9.04	1	0.60	9.64
	40~49	258	238	92.25	19	7.36	1	0.39	7.75
	50~59	323	295	91.33	26	8.05	2	0.62	8.67
	60~64	104	99	95.19	4	3.85	1	0.96	4.81
미혼자녀	18~29	269	244	90.71	23	8.55	2	0.74	9.29
전체		3,500	3,208	91.66	260	7.43	32	0.91	8.34

주: 단독, 가구주+배우자 2인 가구, 가구주+배우자+30세 미만 미혼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3,500명을 대상
으로 2022년 하반기에 조사함. 2022년 8월 소득과 관련된 종사상지위를 최대 5가지를 제시하도록 한 결과,
최대 3개의 일자리가 보고되었음

출처: 김문정·최인혁(2022)에서 조사한 비정형 취업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5) 소득세의 경우 소득유형별로
별도 신고가 이루어지는데다
가 개인별로는 대부분의 소
득이 종합소득세신고 과정에
서 합산되고 있다.

6) 김문정·정다운(2023)의 본
문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2022년 8월 본원에서는 비공식 부문 취업소득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3,500명을 선정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자체 설문조사(김문정·최인혁, 2022)를 실시하였다. 종사한 일자리 문항에서 최대 5개까지 응답할 수 있었는데, 최대 3개의 일자리가 보고되었다. 설문조사 문항에서 ‘일자리’는 ‘종사상 지위’ 개념으로 접근하였고, 구체적으로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 인적용역 사업소득⁷⁾ 등이 제시되었다.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애초에 응답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표 1>은 응답자가 종사한 일자리 개수의 분포를 가구원 유형과 연령대별로 보여주고 있다. 설문조사 시 응답자의 가구유형을 ① 1인 단독가구, ② 가구주와 배우자, ③ 가구주,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제한하였다(미혼자녀는 18~29세로 한정). <표 1>에 따르면, 단일 일자리에만 종사할 확률은 표본 기준 91.66%로 나타난다. 가구주의 경우 단일 일자리 확률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역 U자형을 보이고, 배우자의 경우는 U자형을 보이는 등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18~29세 미혼자녀의 경우 복수 일자리 비중은 9.29%로 전체 평균보다는 높지만 18~29세 가구주나 60~64세 가구주(11.22%, 11.43%)의 비중보다는 낮게 나타난다.

<표 2>에서는 가구원 유형과 응답자의 교육 수준에 따른 복수 일자리 비중을 보여준다. 먼저 가구주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복수 일자리 확률이 높아진다.

<표 2> 가구원 유형별·교육 수준별 복수취업 현황

(단위: 명, %)

가구원 유형	교육 수준	표본	일자리 개수=1		일자리 개수=2		일자리 개수=3		복수 일자리 비율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가구주	고졸 이하	258	228	88.37	26	10.08	4	1.55	11.63
	전문대학	424	389	91.75	28	6.60	7	1.65	8.25
	4년제 이상	1,657	1,526	92.09	117	7.06	14	0.84	7.91
배우자	고졸 이하	172	159	92.44	12	6.98	1	0.58	7.56
	전문대학	192	181	94.27	10	5.21	1	0.52	5.73
	4년제 이상	528	481	91.10	44	8.33	3	0.57	8.90
미혼자녀	고졸 이하	21	20	95.24	1	4.76	0	0.00	4.76
	전문대학	39	35	89.74	4	10.26	0	0.00	10.26
	4년제 이상	209	189	90.43	18	8.61	2	0.96	9.57
전체		3,500	3,208	91.66	260	7.43	32	0.91	8.34

주: 단독, 가구주+배우자 2인 가구, 가구주+배우자+30세 미만 미혼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3,5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에 조사함. 2022년 8월 소득과 관련된 종사상지위를 최대 5가지를 제시하도록 한 결과, 최대 3개의 일자리가 보고되었음
출처: 김문정·최인혁(2022)에서 조사한 비정형 취업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에서 단일한 일자리에 종사할 확률은 가구주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역 U자형, 배우자의 경우 U자형으로 나타나는 등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 7)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실제 설문 문항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라는 보기 문항을 사용하였다.
- 8) ‘기타’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기재하게 하였으나, 실제로 주관식 응답을 한 경우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는
부업 혹은 복수 일자리에의
종사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의사결정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고졸 이하 가구주의 경우 해당 값이 11.63%인데, 4년제 이상 가구주(7.91%)에 비해 3.72%p 높다. 반면, 배우자는 전문대 졸업자의 복수 일자리 비중(5.73%)이 고졸 이하(7.56%)나 4년제 대학 이상(8.90%)보다 낮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18~29세 미혼자녀의 경우는 배우자와 다르게, 전문대 졸업자의 복수 일자리 비중(10.26%)이 고졸 이하(4.76%)나 4년제 대학 이상(9.57%)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상의 결과는 부업 혹은 복수 일자리의 종사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의사결정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고졸 이하 가구주의 경우 괜찮은 보수를 지급하는 단일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동일한 연령대라 하더라도 가구주가 미혼자녀 대비 복수 일자리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1인 가구(가구주 본인) 혹은 2인 이상 가구의 전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감 때문일 수 있다. 한편 고졸 이하 미혼자녀의 복수 일자리 비중은 4.76%로 상당히 낮는데, 이들 중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 편입학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부업에 종사할 확률은 연간 소득유형의 발생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보통 일자리가 하나의 소득유형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여

<표 3> 소득유형 발생 조합의 연도별 추이

(단위: %, %p)

소득유형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17년 대비 2022년		
							차분 수준 (%p)	차분 변화율 (%)	
단일	근로소득	8.24	8.20	7.34	7.39	6.92	6.30	-1.94	-23.56
	사업소득	1.43	1.33	1.40	1.24	1.15	1.18	-0.25	-17.67
	재산소득	1.48	1.65	1.32	1.53	1.65	1.63	0.16	10.60
	계	11.14	11.18	10.06	10.16	9.72	9.11	-2.04	-18.28
근로소득+사업소득		3.34	3.41	3.61	3.69	3.44	3.44	0.11	3.16
근로소득+재산소득		45.19	44.25	44.33	42.75	42.66	42.43	-2.76	-6.11
사업소득+재산소득		9.97	10.04	9.49	9.30	9.95	9.18	-0.80	-8.00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29.11	29.95	31.25	32.80	32.97	34.33	5.22	17.95
소득 없음		1.24	1.17	1.25	1.30	1.26	1.51	0.27	21.47

주: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는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공공형 MDIS 미시자료', 각 연도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러 개의 소득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개의 일자리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22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미시자료로 소득유형 발생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때 고려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다. 소득유형별 발생 혹은 미발생이라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경우의 수는 총 여덟 가지이다. 전술한 세 가지 소득유형 중 한 가지만 발생하는 경우 ‘단일소득 발생’이라고 정의한 후, 단일소득 발생 확률이 2017년 대비 2022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가구유형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2017년 기준 85.88%, 2022년 기준 86.50%), 사업소득 혹은 재산소득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017년 기준 77.64%, 2022년 기준 80.20%).

2017년 대비 2022년에 나타난 특징으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단일소득으로 발생할 확률이 줄어 들었다(-1.94%p). 둘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늘어난 반면(0.11%p),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줄어 들었다(-2.76%p). 셋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모두 발생할 확률은 크게 증가하였다(5.22%p).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점차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보다 보편화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근로자성 취업소득이지만,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요컨대 근로소득을 발생하는 가구가 접근하기 용이한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증가하는 양상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보편화가 진행된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한편 노무제공자에 대한 소득은 국세청이 수집하는 과세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소득지급자가 국세청에 대해 신고하는 지급명세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장지연·홍민기, 2020; 김문정, 2020).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한 인원과 소득이 관찰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통계량에 따르면, 2008년 신고 인원은 285만 1,000명, 지급금액은 38.0조원, 징수된 소득세는 1.2조원이었다. 2021년의 경우 신고 인원은 787만 8,000명, 지급금액은 123.4조원, 소득세는 3.7조원으로 나타나, 분석 기간 각각 2.76배(인원), 24배(지급금액), 3.08배(소득세)로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점차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보다 보편화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9) 국세통계포털,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 a/UTWEPEAA02.xml&sttPblYr=2022&sttsMtalInfrId=20211203D012022C8981>, 검색일자: 2023. 9. 1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 역할만 수행하되
실질적으로 적용, 가입,
급여 업무 등이
모두 분리 운영되고 있다.

Ⅲ. 사회보험 현황과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도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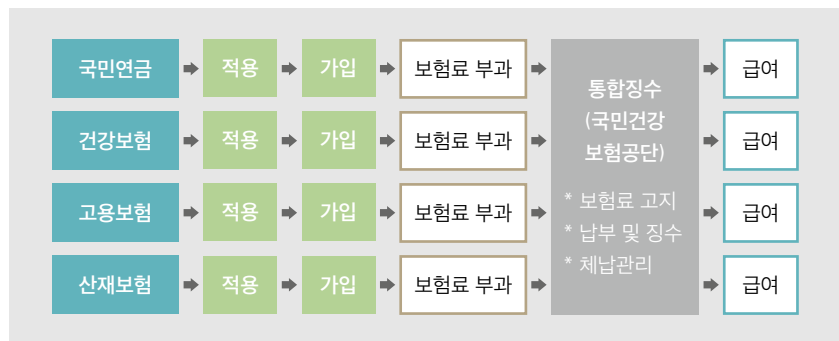
1. 현행 사회보험 제도¹⁰⁾

가장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으로 4대 보험을 들 수 있다.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운영한다. 사회보험의 적용과 가입, 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사회보험 사무가 보험별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고지, 납부 및 징수, 체납관리 등 통합징수 역할을 수행한다. 이후 급여 업무(의료서비스, 실업급여, 국민연금 등)는 다시 각 사회보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그림 1] 참조).

요컨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징수만 하되 실질적으로 적용, 가입, 급여 업무 등이 모두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각 보험에서의 취업형태별로 적용 대상이나 부과 소득기준 등이 사회보험별로 상이하다. <표 4>는 사회보험 적용대상 측면의 이질성을 보여준다. 취업형태는 임금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자(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별로 ‘자격’ 체계가 있는데, 취업유형별 자격과 관련한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 임금근로자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사업장 가입자)’라고 명명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로 명명한다.

건강보험 제도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자(사업주)는

[그림 1] 현행 사회보험 통합징수 체계(2023년 7월 기준)



10) 사회보험료 부과, 징수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최인혁·정다운·김진수(2020)를 참고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험정책」(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20107&PAGE=7&topTitle= 검색일자: 2023. 8. 2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직장가입자 자격을 획득하고, 나머지 취업형태는 지역가입자(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에 해당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인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주체에게만 가입의무가 부여된다. 단, 60세 미만자 중에서 희망자는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60세 이상자라고 하더라도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수급받거나 가입기간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임의계속가입 제도). 가입의무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지역가입자는 다시 소득신고자와 납부예외자로 나눈다. 납부예외자는 사업 중단, 실직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유형을 이른다. 2022년 기준 총가입자(1,943만명) 중에서 사업장가입자는 76.08%, 지역가입자는 19.45%, 임의가입자는 1.88%, 임의계속가입자는 2.57%로 나타났다.¹¹⁾

고용보험의 자격기준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예술인 고용보험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적용 직종에 국한됨)는 당연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으로 운영한다. 특히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달리,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장에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자동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1인 자영업자 혹은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만이 제도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다(임의가입).

산재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한다. 근로자와 특례업종으로 지정된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다. 사업주의 경우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300인 미만 사업주가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이 일하고 있을 때, 2021년 6월 9일부터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도 근로자로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사회보험별로 각 보험의 적용대상과 관리하고 있는 자격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상당히 유사하게 보이는 자격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별로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다르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 계약기간, 월급여 등에 따라 사회보험별 적용대상이 상이하다. 또한 각 보험의 적용단위도 상이하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단위는 개인인데 비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적용단위는 가구(세대)에 가깝다.¹²⁾

상당히 유사하게 보이는 자격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별로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다르다.

11) 통계청, KOSIS, 「국민연금 통계 가입자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22&tblId=DT_32202_B009&conn_path=13, 검색일자: 2023. 7. 11.

12) 하지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피부양자 자격은 신청자가 제출한 취득 및 상실신고서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피보험자의 가구형태나 세대구성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 대비 근로자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부과소득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유형 역시 사회보험 간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표 6> 참조). 가장 포괄적인 소득을 부과하는 보험은 건강보험이다. 이는 보험료 수입과 급여(의료보험 서비스) 지출의 연계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징수가 일종의 소득세 징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특히,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 대비 근로자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소득부과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게 직장가입 자격을 획득한 사업장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보수월액’ 보험료만 부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기타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의 취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합산하여 계산된다. 즉,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라는 자격상 칸막이 구조,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의 이원화 구조 등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험료 부과체계상 반영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¹³⁾

반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임금근로자(사업장 가입자 혹은

13) 이러한 토대가 만들어진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에 기인한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보도자료, 2023. 8. 30.).

<표 4> 취업형태별 사회보험 적용 현황

구분	임금	노무제공자		근로계약 체결	예술인		자영업자(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지정된 업종	그 외 업종		근로계약 체결 X 활동증명 O	근로계약 체결 X 활동증명 X	1인 자영업자	근로자 고용 규모		300인 미만 사업장	300인 이상 사업장
								중소	대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피부양자		피부양자	피부양자				피부양자	피부양자
고용보험	근로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특고)	제외	근로자	예술인 (20. 12.)	제외	(임의) 자영업자	(임의) 자영업자	제외	제외	제외
산재보험	근로자	특고(노무 제공자) ¹⁾	제외	근로자	예술인 ²⁾ (12. 11.)	제외	(임의)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 중소기업 사업주	제외	(임의) 무급가족 종사자	제외

주: 1) 산재보험의 경우, 2023년 7월부터 '특고' 용어를 '노무제공자'로 변경함
 2)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담당: 한국예술복지재단)

출처: 저자 작성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해당 일자리 외 다른 소득은 보험료를 부과할 때 검토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임금근로자 자격의 복수 취득이 가능하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임금근로자가 가입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된다.¹⁴⁾ 반면, 현행 고용보험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이중 취득이 불가능하다.

한편 고용보험·산재보험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간 가장 큰 차이는 노무제공자라는 제3의 자격유형 존재 여부에 있다. 초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노무제공자’를 제도 명칭에 활용하고 있다.¹⁵⁾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노무제공자의 소득에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기타소득을 부과대상 소득으로 산정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과거 소득금액(소위 ‘월보수액’)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보수 제도를 이용하였다. 기준보수 제도란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기준보수금액으로 같음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확대 이후 구축된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를 이용하여 2023년 7월부터는 산재보험제도에서도 동일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준보수가 아닌, 실제 보수액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일부 업종 제외).

반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자격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이러한 노무제공자가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집단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노무제공자로서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재산 및 소득 조건을 만족하

고용보험·산재보험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노무제공자라는 제3의 자격유형 존재 여부에 있다.

14) 단, 한 사업장에서 받는 금액이나 합산 금액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상한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한다.

15) 특고(예: 보험설계사), 프리랜서(예: 컴퓨터 프로그래머), 플랫폼 노동자(예: 배달라이더) 등을 포괄하여 ‘노무제공자’라고 지칭한다. 단,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간의 명확한 정의가 있지는 않으며, () 안의 업종은 흔히 언급되는 업종을 예로 들었다.

16) 피부양자 조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를 참고할 수 있다.

<표 5>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현황

근로 계약 기간	1개월 이상(사회보험법상 ‘상용직’)			1개월 미만(사회보험법상 ‘일용직’)			
	n.a.	3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개월 미만
실제 고용 기간	n.a.	3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n.a.	n.a.	n.a.
소정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월 60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	n.a.	n.a.	n.a.
근무일	n.a.	n.a.		n.a.	월 8일 이상	n.a.	n.a.
보수액	n.a.	n.a.		n.a.	n.a.	월 220만원 이상	n.a.
국민연금	적용/상용	제외	제외 (부분 허용)	적용/일용	적용/일용	적용/일용	제외
건강보험	적용/상용	제외	제외	제외	적용/일용	제외	제외
고용보험	적용/상용	적용/상용	제외	적용/상용	적용/상용	적용/상용	적용/일용
산재보험	적용/상용	적용/상용	적용/상용	적용/상용	적용/상용	적용/상용	적용/일용

출처: 저자 작성

<표 6> 사회보험별 부과소득의 차이

소득 유형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신제보험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포함)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판단 기준)	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특고)	사업주
종합 과세	근로소득	○		○	○	○	○(상용)²		○(상용)²			
	이자소득		○	○	○	○						
	배당소득		○	○	○	○						
	사업소득⁵)		○	○	○	○	○			○³)		
	비과세소득¹)		○									
	공적연금					○						
	사적연금					○						
	기타소득			○	○	○	○	○		○(상용)²	○³)	
	근로소득		○									
	사업소득			○	○	○						
분리 과세	이자,배당소득			○	○							
	사적연금											
	기타소득											
분류 과세	퇴직소득											
	금융투자											
	양도소득											
기준보수 (자발적으로 선택, 또는 부처 장관 고시에 인용) 재산	기준보수											
	(자발적으로 선택, 또는 부처 장관 고시에 인용) 재산										○	○

주: 1) 국민연금 급여액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 사업소득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정액에 포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농업소득, 임업소득, 임업소득 등이 이에 해당됨

2)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과 고용보험과 일용근로소득 중의 한 개로 고용보험 가입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음(동일 시점 이중 취득 불가)

3) 2023년 7월 이후, 신제보험에서 보험료 산정 근거가 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 기준이 동일해졌음

4) 소득확인 어려움 산제 노무제공자 직종으로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골공장 캐디 등 세 가지가 지정되어 있음(<https://www.comwel.or.kr/comwel/paym/spec/spec3.jsp>, 검색일자: 2023. 7. 17.)

5)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출처: 아래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국민연금 참고 사이트: https://www.nps.or.kr/jspage/cyber_pr/easy/easy_06_02.jsp, 검색일자: 2023. 7. 17.

• 국민연금의 소득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를 참고함(<https://www.law.go.kr/%EB%B2%95%EA%B5%AD%EB%AF%BC%EC%97%B0%EA%B8%88%EB%B2%95%EC%8B%9C%ED%96%89%EB%A0%B9>, 검색일자: 2023. 7. 17.)

•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범위는 이병희 외(2023) 관련 중간보고 워크숍 자료(3-1. 소득기반 건강보험 추진의 현황);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8. 30.)를 참고함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소득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함(<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2.html>, 검색일자: 2023. 7. 17.)

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¹⁶⁾ 이러한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비슷하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산정과 관련한 ‘정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다고 판단되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배제되거나(미가입, 혹은 임의가입대상), 지역가입자이지만 납입중지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 사회보험 체계로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절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어려우며, 적용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2. 사회보험 제도 변화의 필요성

이제까지 현행 사회보험 제도를 검토해 보았다. 비록 외형상으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각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과, 적용, 급여 등 각 단계는 사회보험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취업형태별 적용 조건이 사회보험별로 상이하고, 유사한 취업형태에 사회보험별로 부과하는 자격 간의 간극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사회보험 체계로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절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어려우며, 적용 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가장 큰 문제는 복수취업 형태를 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근로자 고용보험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다. 고용보험에서 임금근로자 자격의 복수취득이 어려운 이유는, 해당 제도가 허용되는 순간 실업급여 혹은 실업의 개념 자체가 크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현재 임금근로자의 실업은 단일한 일자리의 상실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복수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피보험자 자격이 인정되면 (현행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서와 같이) ‘부분실업’ 논의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실업급여의 정의 및 집행체계 전체를 흔드는 논의인 탓에 쉽사리 변화가 만들어지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취업형태 간 단기간 내 이행을 포착하기 힘들다. 취업형태 간 이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취업형태의 개시와 종료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과세당국이 보유한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의 흐름을 파악하고, 취업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2024년 1월 이후부터 소득지급자(상대편 계약자 혹은 사업주)는 상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형 기타 소득, 인적용역형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여

소득유형의 성격이 유사한 경우 상당히 다른 수준의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야 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노무제공자의 이러한 실시간 소득과악 인프라에 기반하여, 상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간의 이행(혹은 복수 취득)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실시간 소득과악 자료 접근이 어려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러한 이행관계를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과정이 없고, 소득변동 발생 시에도 소득변동 폭이 20%를 초과하는 경우만 국민연금공단에 신고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4대 보험 중 취업형태 간 이행관계 포착 수준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형태의 이행률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보험료를 연소득 등 장기간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현실 취업형태와 부과체계상 취업형태 간의 간극이 가장 클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취업소득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아 취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셋째, 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피보험 자격 적용, 급여 및 지원 정책 제공 등의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회보험의 현재 제도가 원칙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소득 정보 변동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이지만, 실제로 고용관계가 1개월 이상 이루어지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월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 자격을 부과하고 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노무제공자의 실제소득이 노동부 장관 기준보수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준보수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및 보험급여 수준을 결정한다.¹⁷⁾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요건에서는 2,000만원의 소득요건 등이 존재한다.

넷째, 소득유형의 성격이 유사한 경우에 상당히 다른 수준의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사회보험료 부과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하기 위하여 <표 7>~<표 10>에서 ‘월소득 150만원, 재산 1억원’(예시 1), ‘월소득 300만원, 재산 1억원’(예시 2), ‘월소득 300만원, 재산 5억원’(예시 3), ‘월소득 300만원, 재산 15억원’(예시 4)에 대하여 각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와 관련 고용과 관련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를 계산하였다. 또한 각각의 예시에서 고용형태나 자격 지위에 따라서 총 아홉 가지의 사례를 검토하였다(Case 1~9). 예를 들어, Case 1은 상용근로자 사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고, 국민연금에는 ‘사업장 가입자’,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반

1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52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2490>, 검색일자: 2023. 7. 17.)에 따르면,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는 1,330,000원이다.

대로 Case 9의 경우는 노무제공자 사례를 고려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노무 제공자 고용 및 산재보험 미적용 업종을 가정하였다. 그러므로 이 경우 고용 과 산재는 적용되지 않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7>~<표 10>을 참고할 수 있는데, 해당 표의 하단에 사회보험료를 근로자(상위 패널)와 사용자(하위 패널) 관점에서, 각각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가정하에서 Case 1~9별로 계산한 최종 사회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2]는 최종적으로 제시된 사회보험료를 도식화하였다. [그림 2]에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자. 크게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먼저 고용형태와 자격 지위에 따라 사회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간극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또한 소득과 자산의 규모가 커질수록(예시 1 → 예시 4)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수준의 최솟값과 최댓값의 간극이 커진다는 점이다.

[그림 2]의 두 번째 그래프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관점에서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보여준다. 사업주의 경우 Case 1(직장가입자로서의 근로자)의 사용자 부담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경우에 따라서는(Case 8, 9) 고용과 관련한 사회보험료가 전혀 없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의 해석을 좀 더 살펴보자. 고용, 산재, 국민연금의 경우 급여의 혜택과 사회보험료 부담 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림 2]의 (a)에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가 고용형태 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 자체를 문제시하기는 어렵다. 물론 근로자 그래프의 예시 2~4에서 소득은 동일하고 자산만 다르다는 점을 상기할 때, 사회보험료 간의 고용형태별 차이가 자산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에 의하여 상당 부분 유발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급여와 부담 간의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 의료 및 보건 관점의 함의를 고려할 때, 그러한 건강보험 징수가 소득세 징수 차원에서 이해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형태별로 사회보험료가 다른 부분에 대한 가치판단을 위해서는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반면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와 관련된 사회보험료는 무조건 '비용'일 뿐 급여 수혜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만약 노동생산성이 동일하다면, 노동비용을 줄

고용, 산재, 국민연금의 경우 급여의 혜택과 사회보험료 부담 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가 고용형태 간 차이가 있더라도 단순히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림 2] 고용형태 및 자격유형에 따른 사회부담료 비교

(단위: 원)



출처: <표 7> ~ <표 10>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표 7> 고용형태에 따른 사회보험 보험료 비교(예시 1: 월소득 150만원, 재산 1억원)

기정: ① 「국민건강보험법」상 세대 내 직장가입자 존재 여부: YES
 ② 재산(과세표준): 1억원(주택 기준)
 ③ 소득: 상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노무제공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모두 150만원이라고 가정함¹⁸⁾(단일소득 가정)
 ④ 임금근로자의 경우, 1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함
 ⑤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모두 적용되거나, 혹은 모두 비적용된 경우를 고려함
 ⑥ 노무제공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다고 가정함

(단위: 원)

구분	1	2	3	4	5	6	7	8	9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가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가입	노무제공자 (적용업종) 가입	노무제공자 (적용업종) 가입	노무제공자 (미적용업종) 가입	노무제공자 (미적용업종) 가입
고용보험 (2022. 7. 1.~: 근로자 1.8% 예슬인 노무 1.6%)	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노무제공자 가입	노무제공자 가입	노무제공자 가입	노무제공자 가입
	☞ 13,500 ☞ 17,250	☞ 13,500 ☞ 17,250	☞ 13,500 ☞ 17,250	☞ 13,500 ☞ 17,250	☞ 13,500 ☞ 17,250	☞ 12,000 ☞ 15,750	☞ 12,000 ☞ 15,750	☞ n.a. ☞ n.a.	☞ 15,000 ☞ n.a.
국민연금 9%	사업장 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 67,500 ☞ 67,500	☞ 0 ☞ n.a.	☞ 135,000 ☞ n.a.	☞ 0 ☞ n.a.	☞ 135,000 ☞ n.a.	☞ 0 ☞ n.a.	☞ 135,000 ☞ n.a.	☞ 0 ☞ n.a.	☞ 135,000 ☞ n.a.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 53,170 ☞ 53,170	☞ 0 ☞ n.a.	☞ 0 ☞ n.a.	☞ 162,200 ☞ n.a.	☞ 162,200 ☞ n.a.	☞ 0 ☞ n.a.	☞ 0 ☞ n.a.	☞ 162,200 ☞ n.a.	☞ 162,200 ☞ n.a.
산재보험 (2022. 7. 1.~: 평균 1.6%)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	미가입	미가입
	☞ 0 ☞ 24,000	☞ 0 ☞ 24,000	☞ 0 ☞ 24,000	☞ 0 ☞ 24,000	☞ 0 ☞ 24,000	☞ 12,000 ☞ 12,000	☞ 12,000 ☞ 12,000	☞ 0 ☞ 0	☞ 0 ☞ 0
사회보험료 합계	☞ 134,170 ☞ 161,920	☞ 13,500 ☞ 41,500	☞ 148,500 ☞ 41,250	☞ 175,700 ☞ 41,250	☞ 310,700 ☞ 41,250	☞ 24,000 ☞ 27,750	☞ 159,000 ☞ 0	☞ 162,200 ☞ 0	☞ 312,200 ☞ 0

주: 각 보험료는 주어진 가정하에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계산하였음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검색일자: 2023. 7. 17.)
- 고용보험료 계산기(<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cheq3.jsp>, 검색일자: 2023. 7. 17.)
- 4대 보험료 모의계산기(<https://www.4insure.or.kr/fms4/pt/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검색일자: 2023. 7. 17.)

출처: 저자 작성

18) 고용보험상 노무제공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산출방식은 세법상 산출방식과 다를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논의의 목적은 부과소득 수준이 서로 동일함에도 취업형태에 따라 사회보험 과세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므로 과세제도와 사회보험 제도 간 간극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고자 함

<표 8> 고용형태에 따른 사회보험 보험료 비교(예시 2: 월소득 300만원, 재산 1억원)

가정: ① 「국민건강보험법」상 세대 내 직장가입자 존재 여부: YES

② 재산(과세표준): 1억원(주택 기준)

③ 소득: 상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노무제공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모두 300만원이라고 가정함(단일소득 가정)

④ 임금근로자의 경우, 1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함

⑤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모두 적용되거나, 혹은 모두 비적용된 경우를 고려함

⑥ 노무제공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다고 가정함

(단위: 원)

구분	1	2	3	4	5	6	7	8	9
고용보험 (2022. 7. 1.~: 근로자 1.8% 예슬인 노무 1.6%)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노무제공자 (적용업종)	노무제공자 (적용업종)	노무제공자 (미적용업종)	노무제공자 (미적용업종)
	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노무제공자 가입	노무제공자 가입	노무제공자 미가입	노무제공자 미가입
국민연금 9%	사업장 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135,000 재 135,000	0 재 n.a.	270,000 재 n.a.	27,000 재 34,500	270,000 재 n.a.	24,000 재 31,500	24,000 재 31,500	0 재 n.a.	270,000 재 n.a.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106,350 재 106,350	0 재 n.a.	0 재 n.a.	268,550 재 n.a.	268,550 재 n.a.	0 재 n.a.	0 재 n.a.	268,550 재 n.a.	268,550 재 n.a.
산재보험 (2022. 7. 1.~: 평균 1.6%)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	미가입	미가입
	0 재 48,000	0 재 48,000	0 재 48,000	0 재 48,000	0 재 48,000	24,000 재 24,000	24,000 재 24,000	0 재 0	0 재 0
사회보험료 합계	268,350 재 323,850	27,000 재 82,500	297,000 재 82,500	295,550 재 82,500	565,550 재 82,500	48,000 재 55,500	318,000 재 55,500	268,550 재 0	538,550 재 0

주: 각 보험료는 주어진 가정하에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계산하였음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검색일자: 2023. 7. 17.)
- 고용보험료 계산기(<https://www.comwel.or.kr/comwel/paaym/insu/chek3.jsp>, 검색일자: 2023. 7. 17.)
- 4대 보험료 모의계산기(<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검색일자: 2023. 7. 17.)

출처: 저자 작성

<표 9> 고용형태에 따른 사회보험 보험료 비교(예시 3: 월소득 300만원, 재산 5억원)

가정: ① 「국민건강보험법」상 세대 내 직장가입자 존재 여부: YES

② 재산(과세표준): 5억원(주택 기준)

③ 소득: 상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노무제공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모두 300만원이라고 가정(단일소득 가정)

④ 임금근로자의 경우, 1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함

⑤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모두 적용되거나, 혹은 모두 비적용된 경우를 고려함

⑥ 노무제공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다고 가정함

(단위: 원)

구분	1	2	3	4	5	6	7	8	9
고용보험 (2022. 7. 1.~: 근로자 1.8% 예슬인 노무 1.6%)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노무제공자 (적용·업종)	노무제공자 (적용·업종)	노무제공자 (미적용·업종)	노무제공자 (미적용·업종)
	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노무제공자 가입	노무제공자 가입	노무제공자 미가입	노무제공자 미가입
국민연금 9%	사업장 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미가입	지역가입자
	135,000 323,850	0 n.a.	270,000 323,850	27,000 34,500	270,000 34,500	0 n.a.	270,000 n.a.	0 n.a.	270,000 n.a.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106,350 106,350	0 n.a.	0 n.a.	376,290 n.a.	376,290 n.a.	0 n.a.	0 n.a.	376,290 n.a.	376,290 n.a.
산재보험 (2022. 7. 1.~: 평균 1.6%)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	미가입	미가입
	0 48,000	0 48,000	0 48,000	0 48,000	0 48,000	24,000 24,000	24,000 24,000	0 0	0 0
사회보험료 합계	268,350 323,850	27,000 82,500	297,000 82,500	403,290 82,500	673,290 82,500	48,000 55,500	318,000 55,500	376,290 0	66,290 0

주: 각 보험료는 주어진 가정하에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계산하였음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alLocalCalcView.do?toDt=&검색일자: 2023. 7. 17>)
- 고용보험료 계산기(<https://www.comvel.or.kr/comvel/paym/insu/cnck3.jsp>, 검색일자: 2023. 7. 17)
- 4대 보험료 모의계산기(<https://www.4insure.or.kr/ins4/pt/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검색일자: 2023. 7. 17)

출처: 저자 작성

<표 10> 고용형태에 따른 사회보험 보험료 비교(예시 4: 월소득 300만원, 재산 15억원)

가정: ① 「국민건강보험법」상 세대 내 직장가입자 존재 여부: YES

② 재산(과세표준): 15억원(주택 기준)

③ 소득: 상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노무제공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모두 300만원이라고 가정함(단일소득 가정)

④ 임금근로자의 경우, 1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함

⑤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모두 적용되거나, 혹은 모두 비적용된 경우를 고려함

⑥ 노무제공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다고 가정함

(단위: 원)

구분	1	2	3	4	5	6	7	8	9
고용보험 (2022. 7. 1.~: 근로자 1.8% 예슬인 노무 1.6%)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일용근로자 (일반업종)	노무제공자 (적용업종)	노무제공자 (적용업종)	노무제공자 (미적용업종)	노무제공자 (미적용업종)
	근로자 가입 ₩ 27,000 ₩ 34,500	일용근로자 가입 ₩ 27,000 ₩ 34,500	일용근로자 가입 ₩ 27,000 ₩ 34,500	일용근로자 가입 ₩ 27,000 ₩ 34,500	일용근로자 가입 ₩ 27,000 ₩ 34,500	노무제공자 가입 ₩ 24,000 ₩ 31,500	노무제공자 가입 ₩ 24,000 ₩ 31,500	노무제공자 가입 ₩ 24,000 ₩ 31,500	노무제공자 미가입 ₩ n.a. ₩ n.a.
국민연금 9%	사업장 가입자 ₩ 135,000 ₩ 135,000	미가입	지역가입자 ₩ 270,000 ₩ n.a.	미가입	지역가입자 ₩ 270,000 ₩ n.a.	미가입	지역가입자 ₩ 270,000 ₩ n.a.	미가입	지역가입자 ₩ 270,000 ₩ n.a.
	직장가입자 ₩ 106,350 ₩ 106,350	피부양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471,320 ₩ n.a.	지역가입자 ₩ 471,320 ₩ n.a.	미가입	지역가입자 ₩ 471,320 ₩ n.a.	지역가입자 ₩ 471,320 ₩ n.a.	지역가입자 ₩ 471,320 ₩ n.a.
건강보험	근로자 ₩ 0 ₩ 48,000	근로자 ₩ 0 ₩ 48,000	근로자 ₩ 0 ₩ 48,000	지역가입자 ₩ 471,320 ₩ n.a.	지역가입자 ₩ 471,320 ₩ n.a.	피부양자 ₩ 0 ₩ n.a.	피부양자 ₩ 0 ₩ n.a.	지역가입자 ₩ 471,320 ₩ n.a.	지역가입자 ₩ 471,320 ₩ n.a.
	직장가입자 ₩ 106,350 ₩ 106,350	피부양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471,320 ₩ n.a.	지역가입자 ₩ 471,320 ₩ n.a.	피부양자 ₩ 0 ₩ n.a.	피부양자 ₩ 0 ₩ n.a.	지역가입자 ₩ 471,320 ₩ n.a.	지역가입자 ₩ 471,320 ₩ n.a.
산재보험 (2022. 7. 1.~: 평균 1.6%)	근로자 ₩ 0 ₩ 48,000	근로자 ₩ 0 ₩ 48,000	근로자 ₩ 0 ₩ 48,000	근로자 ₩ 0 ₩ 48,000	근로자 ₩ 0 ₩ 48,000	노무제공자 ₩ 24,000 ₩ 24,000	노무제공자 ₩ 24,000 ₩ 24,000	미가입	미가입
	직장가입자 ₩ 268,350 ₩ 323,850	피부양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498,320 ₩ 82,500	지역가입자 ₩ 498,320 ₩ 82,500	노무제공자 ₩ 48,000 ₩ 55,500	노무제공자 ₩ 48,000 ₩ 55,500	노무제공자 ₩ 48,000 ₩ 55,500	노무제공자 ₩ 471,320 ₩ 0
사회보험료 합계	₩ 268,350 ₩ 323,850	₩ 27,000 ₩ 82,500	₩ 297,000 ₩ 82,500	₩ 498,320 ₩ 82,500	₩ 768,320 ₩ 82,500	₩ 48,000 ₩ 55,500	₩ 318,000 ₩ 55,500	₩ 471,320 ₩ 0	₩ 741,320 ₩ 0

주: 각 보험료는 주어진 가정하에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계산하였음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검색일자: 2023. 7. 17.)
- 고용보험료 계산기(<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chek3.jsp>, 검색일자: 2023. 7. 17.)
- 4대 보험료 모의계산기(<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검색일자: 2023. 7. 17.)

출처: 저자 작성

이기 위하여 사회보험료가 낮은 고용형태를 취하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사용자 관점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보험료의 분포가 노동수요를 왜곡할 여지가 다분히 존재한다. 물론 각각의 고용형태가 임의적(random)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배타적인 형태일 때 교육 수준, 근속연수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사용자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업무나 직무에 따라서 선호하는 고용형태 역시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떠한 업무가 비교적 단순노동 등 쉽게 기계나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능한 경우, 굳이 직장가입자 형태로 고용형태를 유지할 유인이 없을 수 있다. 최근 확산하는 플랫폼 노동 추세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사용자 관점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보험료의 분포가
노동수요를
왜곡할 수 있다.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이상 본문의 내용을 요약 및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형태 다변화라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첫째,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예전에 비해 더욱 흔하게 발현되고 있다. 둘째, 부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복수의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셋째, 여러 고용형태 간 이행의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제Ⅱ장은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자체 설문조사, 공신력 있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국세청의 「국세통계」 등을 활용하였다.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한 다양한 개념 중 통계자료로 파악이 가장 용이한 ‘복수취업’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검토 결과 복수취업(혹은 부업) 발생과 관련한 패턴이 개인 및 가구의 특징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인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⁹⁾

제Ⅲ장은 사회보험 현황과 고용형태 다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험은 현재 관리 중인 자격의 유형이 서로 다르고(<표 4>), 유사해 보이는 자격(예: 임금근로자) 내에서의 자격 정의(<표 5>) 및 부과소득 유형(<표 6>))이 상이하며, 나아가 사회보험료의 부과 단위(개인 대 가구) 역시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9) 단, ‘여러 고용형태 간 빠른 이행형태(즉, 단일한 고용형태의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귀속연도 기간 다양한 소득유형을 가진 개인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일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무제공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보험료 부과 측면에서
노무제공자라는 취업형태를
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단, 사회보험 제도별로 운영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질적으로 운영된다
는 것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제도는 수
입-지출 간 관계가 없고, 사회보험료의 성격이 소득세와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
서 혹자는 건강보험료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가장 포괄적인 소득범위에 보험
료를 부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사회보험 제
도가 서로 다른 것이 이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러나 현행 사회보험체계는 고용형태 다변화를 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측
면이 있다고 여전히 지적할 수 있다. 그 문제는 개별 사회보험 자체를 살펴볼 때
에도 혹은 2개 이상의 사회보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에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다양한 취업형태의 포용

본고는 어떠한 사회보험제도의 ‘다양한 취업형태의 포용’ 여부를 사회보험제
도가 ‘노무제공자’로서의 경제활동을 가입자격의 유형이나 사회보험료 부과 여
부 등에서 반영하고 있는 지로 판단하고 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 ‘노
무제공자’라는 별도의 자격을 상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²⁰⁾

반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
러므로 관건은 노무제공자로서의 소득이 보험료 부과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는
지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사후정산 제도 등
을 갖춘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연금에 비해 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사회보험 모두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통
해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무제공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보험료 부과’ 측면에서조차 노무제공자라는 취
업형태를 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나. 복수취업 형태의 포용

<표 11> 사회보험별 복수취업 형태의 포용 현황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근로+임금근로	○	○	○	×
임금근로+비임금근로	○	△	○	○
비임금근로+비임금근로	○	△	○	○

주: 여기에서 비임금 근로는 진성사업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의 경제활동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20)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제공자의 일부 직종에
국한한다는 점에서 그 포용
수준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어떠한 사회보험 제도가 ‘복수취업을 포용한다’는 것은 피보험자의 복수취업 활동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위법요인이 발생하지 않거나, 해당 소득이 사회보험료에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근로자가 다른 임금 일자리를 취득하는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서는 기존 자격을 유지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의 제도의 경우 복수취업 여부에 따라 사회보험료 수준도 연동되어 변화한다. 반면 고용보험의 경우 두 개 이상의 임금 일자리를 동시에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고용보험에서 복수취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부분실업’의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에서는 ‘임금+비임금 일자리’가 보험료 부과 측면에서 포용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 부과 측면에서 비임금 일자리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나 전산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노동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법상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에서는 해당 가입자의 추가적인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²¹⁾ 유사한 이유로, 복수의 비임금 일자리를 갖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그러한 복수취업 형태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 고용형태간 짧은 이행형태

2024년 1월부터는 과세당국이 근로성 소득(연말정산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형 사업소득, 인적용역형 기타소득 등)에 대해서 소득지급자가 매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는 이러한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의 구축으로 근로성 소득과 관련된 취업형태 간 이행관계는 쉽게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단, 현재 과세당국에서는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로 취합한 월별 과세정보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관리·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에만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에서는 근로성 소득에 대한 월별 변동분을 파악하지 못하며, 보험행정업무가 ‘연간’을 기준으로 수행되고 있다. 물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급여의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연동되지 않거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에서는 ‘임금+비임금 일자리’가 보험료 부과 측면에서 포용되고 있다.

21)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액이 각 가입자의 기여수준(B값)에 비례한다. 만약 최근 3년간 매년 말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A값)이 동일하다면, 비임금 일자리에서의 소득이 온전히 반영된다면, 해당 가입자의 은퇴 후 소득은 늘 어날 수 있다.

사회보험 제도의 비연속성으로 인하여 경제주체의 고용형태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은 고용형태 다변화라는 노동시장 변화를 포용하기 위하여 각 사회보험 제도가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건강보험), 두 요인 간 연계성이 상당 기간 이후에 발현되고 있다(국민연금). 이러한 점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어도 ‘급여지출’ 측면에서는 실시간 소득과악 인프라의 활용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과’ 측면에서는 전산 인프라로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여전히 절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귀속연도 기간 내 상당한 고용형태 변화가 존재하여 경제활동의 소득이 누락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거나(국민연금),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민원(건강보험, 국민연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라. 사회보험료의 부과형평성


이상의 세 가지 사항을 논의할 때, 저자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유사한 경제활동에 대하여 자격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에 차이가 난다면(그림 2 참조), 경제주체의 전략행위를 유도하거나 제도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개인 관점에서는 소득활동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제도 측면에서는 비연속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역동적인 변화 양상에 사회보험 제도가 탄력적으로 반응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현행 제도로 인하여 경제주체의 고용형태가 왜곡되는 상황도 야기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본고의 논의에서 현행 사회보험체계가 고용형태 다변화를 포용하기에는 다분히 한계가 존재하며, 그러한 한계는 개별 제도를 살펴보거나(‘가’~‘다’), 사회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에도(‘라’) 모두 존재함을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보험 제도의 비연속성(자격 간 칸막이)으로 인하여 경제주체의 고용형태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은 사회보험 제도가 제각기 나름의 고유한 운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고용형태 다변화라는 노동시장 변화를 포용하기 위하여 각 사회보험 제도가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고용형태 다변화를 사회보험 제도 내에서 포용하기 위해서 개인의 합산 소득에 기반하여 사회보험료를 전면적으로 부과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소득기반 사회보험에 대한 정의가 제도별로 다르고, 제도 간 정합성을 어느 수준까지 추구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충분한 제도 검토 없이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추진한다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시작단계로서 사회보험료 부과방식의 자격별 간극을 줄이고, 사회보험 제도 간 조정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관성을 꾀하도록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를 정의하는 방식의 경우 현재의 사회보험 제도 간 이질적인 자격 체계(<표 5> 참고)가 각 사회보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의 불가피함에서 기인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가능하다면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를 일정부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소득세법과 사회보험 제도 간, 사회보험 행정과 세무행정 간의 유기적 연계를 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사회보험공단에서 입수하는 소득자료는 국세청의 과세자료에 기반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파악 혹은 추정하는 수입·비용과 관련된 정보가 비단 조세수입(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이나 조세지출(예: 근로장려금) 측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노무제공자의 수입에 대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협조받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노무제공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율을 높이는 것은 조세수입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함의를 가질 수 있다.²²⁾ 비록 보고에서는 진성사업자에 대한 논의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노무제공자를 포함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당국의 ‘경비’ 추정 혹은 인정 방식은 당연히 모든 사회보험 제도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세당국은 제도와 정책을 검토할 때 조세 수입이나 지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회보험 제도도 같이 아우르는 방향을 꾀할 필요가 있다. 

과세당국은 제도와 정책을 검토할 때 조세 수입이나 지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회보험 제도도 같이 아우르는 방향을 꾀할 필요가 있다.

22)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결정세액은 1% 미만으로 상당히 낮다(김문정·안종석·정다운, 2022).

참고문헌

- 강신혁·김문정·안종석·홍민기, 『조세 및 사회보험제도가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역, 2021.
- 김문정, 『과세자료 활용을 통한 특고종사자 소득 파악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김문정·안종석·정다운,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2022.
- 김문정·정다운,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와 지원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12.(출판 예정)
- 김문정·최인혁, 『비공식 취업소득 추정과 조세재정 정책함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심혜정, 「고용형태의 변화와 개인소득 과세체계: 현행 과세체계가 고용형태 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산정책연구』, 2020.
- 이병희·강신욱·김문정·성재민·강희정·류재린·박종식·고창수·김혜원·이승호·오상봉·이다미·송창길·고숙자·여나금·이재은, 『소득기반 사회보험 혁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
- 장지연·홍민기,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20.
- 최인혁·정다운·김진수,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검색일자: 2023. 7. 17.
- 고용노동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보도자료, 2021. 6. 30.,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431, 검색일자: 2023. 6. 30.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검색일자: 2023. 7. 17.
- _____,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2호, <https://www.law.go.kr/LSW/admRullInfoP.do?admRulSeq=2100>

000202490, 검색일자: 2023. 7. 17.

_____, 「국민연금법 시행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C%97%B0%EA%B8%88%EB%B2%95%EC%8B%9C%ED%96%89%EB%A0%B9>, 검색일자: 2023. 7. 17.

국민건강보험, 「4대 보험료 계산하기」,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검색일자: 2023. 7. 17.

국민연금 사이버홍보관 웹페이지, 「알기쉬운 국민연금 100문 100답」, https://www.nps.or.kr/jsp/page/cyber_pr/easy/easy_06_02.jsp, 검색일자: 2023. 7. 17.

국세통계포털,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1&sttsMtalnfrId=20210303D012021F7419>, 검색일자: 2023. 9. 18.

근로복지공단 웹페이지, 「고용보험료 계산」,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chek3.jsp>, 검색일자: 2023. 7. 17.

_____, 「산재·고용보험 적용특례 > 보험료 산정 및 부과」, <https://www.comwel.or.kr/comwel/paym/spec/spec3.jsp>, 검색일자: 2023. 7. 17.

기획재정부, 「소득정보 인프라 추진 현황 및 주요 세법개정 사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영업자고용보험적용연구회, 발표자료, 2021. 12. 17.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험정책」,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20107&PAGE=7&topTitle=, 검색일자: 2023. 8. 25.

_____,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보도자료, 2023. 8. 30.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업 근로자 추이 및 특징분석」, 2022. 12. 20., 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4809&category=ST, 검색일자: 2023. 9. 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공공형 MDIS 미시자료」, 2017~2022년 각 연도.

_____, KOSIS, 「국민연금통계 가입자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22&tblId=DT_32202_B009&conn_path=I3, 검색일자: 2023. 7. 11.



특집

+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

계강훈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오종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01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



계강훈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장

1. 서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던 것은 ‘건전재정’이다. 한 가정이나 기업, 지자체 모두 그 수입과 지출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나라의 살림살이도 다를 것이 없다.

‘건전재정’은 무조건적으로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소극적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여 재정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재투자하는 적극적인 내용까지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껴야 잘 산다’는 옛말을 건전재정에 적용하면 절반만 맞는 말이다. 아끼면서도 써야할 곳에는 꼭 쓰는 균형의 묘를 잘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전재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재정은 지난 몇 년간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최초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민간의 시장과 기회를 구축하는 한편, 대외신인도 저하, 자본조달 비용 상승 등 우리 경제와 재정을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23년 예산부터는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여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2024년 예산안 역시 재정이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미래세대에 대한 과중한 빚 부담 전가 방지, 민생 안정을 위한 책임있는 재정의 역할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였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는 말처럼 건전재정은 지금 당장은 힘든 길이다. 국채발행을 통해 손쉽게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이모저모, 그간 무풍지대로만 여겨지던 곳까지 살살이 살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은 책임과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다. 내년 예산이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II. 2024년 예산안 주요 내용

1.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

2024년 예산안은 슬로건 ‘알뜰 재정, 살뜰 민생’에서 드러나듯 재정을 알뜰히 쓰면서 건전성은 지키는 한편, 민생과 경제활력 제고 분야는 살뜰히 챙겨 제대로 투자한다는 고민을 담았다. 국세수입이 2023년 대비 33조원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미래 준비와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하였다.

먼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2.8% 증가한 657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이는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인 동시에 2024년 전망 경상성장률 4.9%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통해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

구하고,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악화를 최소화하였다. 어려운 세수여건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Delta 1.3\text{p}$ 악화되었으나, GDP 대비 국가채무는 기금재원 활용 등을 통해 과거 증가폭(2017년 36.0% → 2022년 50.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전년대비 0.6%p 증가로 억제하였다.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Delta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중장기적으로도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의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사중복·집행부진·성과미흡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낭비적 지출요인을 강력한 재정사업 정상화를 통해 철저히 제거하였다. 국채발행과 같이 손쉬운 방법으로 지출규모를 크게 늘리기보다 강도 높은 재정정상화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이고 규모 있게 사용하는 데 집중하였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부정·비리 연루 보조금, 관행적 나눠먹기·폐쇄적 연구·온정적 평가에 기인한 R&D 사업 등 타당성·효과성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삭감하였다. 소규모 사업이라도 철저히 점검하여 재정의 체질 개선에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Delta 20$ 조원 이상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투자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공고화하고자 하였다.

2. 중점 투자

2024년 예산안은 ①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②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③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④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라는 네 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였다.

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진정한 약자복지 구현을 위해 저소득·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체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투자했다. 또한 청년의 미래와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먼저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를 지난 5년간 총 인상액 19만 6,000원보다 큰 수준인 21만 3,000원으로 인상하였다. 2015년 제도설계 이후 처음으로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여 총 3만 9,000가구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돌봄을 강화하였다. 장애 정도가 극심한 발달 장애인 2,300여 명에게 1: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12만 4,00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더불어, 이번 예산안에는 어르신에 대한 국가 지원도 크게 강화하였다.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증가폭인 14만 7,000명 확대하여 최초로 100만 일자리를 돌파하였고, 6년 만에 수당도 7% 수준 인상하였다. 기초연금 또한 인상하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초기 정착 뒷받침’ 방식에서 ‘교육·취업 등 사회적 격차 완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저소득 다문화 가정 자녀 6만여 명에

게 교육활동비를 신규 지원하는 한편,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다문화 자녀 특화 직업훈련 또한 신규로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중위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하고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지원단가도 월 5만원 인상한다. 아울러 가족돌봄청년의 의료·문화·교육비 등에 사용하도록 분기별 50만원 수준의 자기돌봄비를 신규 지원하고, 가족돌봄서비스 바우처도 월 70만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소아·응급 필수분야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소아암 거점병원 5개소 확충, 닥터카 신규 도입, 닥터헬기 8→9대 확대 등 인력·장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체감형 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을 단념한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청년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6,000명 규모로 신규 지원하고, 구직청년들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까지 감면한다. 또한 청년들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 줄여주는 청년우대 교통카드 ‘K-Pass’를 도입하였다. 노후 산업단지에는 복합문화센터와 아름다운거리, 기숙사형 오피스텔 등 청년의 주거·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이른바 산리단길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한편, 저소득 가구 아동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연령을 금년 ‘12세부터 17세’에서 내년부터는 ‘출생부터 17세’까지로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대상 또한 소득요건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까지로 약 13만 3,000명 수준 확대한다.

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바이오·우주 등 첨단 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대규모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첨단 바이오 분야의 한-미 공동 융합 프로젝트인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이 세계 최고 그룹과의 전략적 공동연구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용수·전력·도로·폐수 등 핵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기술 실증·상용화 촉진을 위한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산업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등 인력양성 등을 종합 지원한다.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효율 냉난방설비 4만 9,000개 설치 및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1만 5,000개 지원으로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또한 자원 공급 불안에 대비하여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공비축을 평균 42일분에서 60일분으로 40% 이상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원 수준의 이자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별 저리 융자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 있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일과 육아의 조화로운 병행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 부모 맞돌봄 시 영아기 특례 기간을 3→6개월, 급여상한을 300만→45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만 0세 기준 월 70만→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만 1세

기준 월 35만→50만원으로 확대했다. 안정적 보육 서비스를 위해 정원미달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한편,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 또한 5% 인상한다. 아동 25인 이상이 이용하는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각 1명씩 총 3,001명의 생활복지사를 추가 배치하여 돌봄 인프라 강화를 도모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하청 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조선업 등 업종별(신규 3개)·사업장별(150개소) 임금개편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488개 중소기업의 상생형 안전 투자를 신규 지원하는 한편,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를 100억 원 규모로 신규 지원하는 등 상생협력 이행을 위한 투자도 과감히 지원하였다.

다.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디지털 플랫폼 정부(Digital 플랫폼 정부) 등 4개 분야(A·B·C·D)에 대한 정부지원을 3조 6,000억원에서 4조 4,000억원으로 확대하여 첨단 서비스 산업 고도화를 지원한다. 국내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유턴투자, 지방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K-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해 K-콘텐츠 전략펀드를 6,000억원 수준으로 신규 조성하는 등 정책금융을 8,000억원에서 1조 8,000억원으로 2023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회복의 모멘텀을 살려 수출 플러스 기조 본격화를 재정 측면에서 지원한다. 원전·방산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을 1조 3,000억원 수준 추가 공급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한국형 스테이션F를 조성하여 청년·스타트업·투자자가 교류하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1,500억원 출자)를 신설하는 등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해외창업 지원을 확실히 뒷받침하였다.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민간과 연계하여 신규 3,000억원 수준으로 조성한다. 또한 대학에 대한 재정권한을 지자체로 부여하고 30개 지방대를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하여 교당 1,000억원씩 지원하는 등 지역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였다. 한편, 농어민 경영안정, 청년농 유입촉진, 쌀 적정생산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불예산을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청년농의 단계별(진입 → 정착 → 성장) 맞춤형 지원을 1.5배 수준 확대하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장병에 대한 처우 및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원 수준 인상하고, 노후숙소 4만 2,000개를 전량 개선한다.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 국정과제 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병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2023년 130만원에서 2024년 16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한편 병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 장병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지급하고, 모든 부대에 얼음정수기 1만 5,000개를 보급한다. 아울러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

는 등 일류보훈체계 구축을 위해 보훈보상금을 2년 연속 5%대로 인상하고, 일상에서도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훈전시관을 개소한다.

최근 ‘묻지마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저위험 권총을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3인 1총기 → 1인 1총기)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방검복·삼단봉 등 흉기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한다. 또한 국민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732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정신 응급의료센터는 10 → 12개소로 확충하고, 고·중위험군 정신질환자 상담지원을 2027년까지 100만명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5조 1,000억원에서 2024년 6조 3,00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 댐 신규 건설 확대 및 저수지 준설을 대대적으로 시행(7 → 77개)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하천 합류구간 20곳을 정비하고,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설비 지원 확대와 급경사지 점검을 확대(5,000 → 1만개소)한다.

국격에 걸맞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확대(4조 5,000억 → 6조 5,000억원)를 통해 우리나라 국익 증진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도모하였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을 5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리나라 기업 진출 기반 조성 및 재난대응·식량 지원을 4,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더불어, 경제협력 관계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인·태지역과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도 6,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Ⅲ. 맺음말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천명한 후 2년 차가 되는 예산안이다. 이제는 기조 전환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 기조 공고화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채무 증가세의 안정적인 관리 등 우리의 재정건전화 노력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건전재정은 무작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지출을 효율화하여 민생안정·경제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판의 역할도 특특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각고의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 관계기관이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건전한 재정과 효율적인 지출구조를 갖춘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었다.

내년 예산안이 올해 9월초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예산안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결과라기보다 민생과 경제활력을 위한 과정이다. 올해 연말 국회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예산이 법정 기한 내에 확정된 후, 재정당국-각 부처-집행기관이 협업하여 의도한 바대로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이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02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jhoh@kipf.re.kr)

1. 서론

지난 8월 29일 정부는 「2024년 예산안」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의 목표를 “민생안정,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비”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은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재정의 정상화로 예산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다. 특히,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각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한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건

<표 1> 2024년 예산안 투자 중점

투자 중점	세부 내용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① 더 두터운 사회안전망 ②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③ 청년의 미래와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① 창의·혁신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 ②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 ③ 출산·양육 부담 경감 지원 ④ 첨단인재 양성과 합리적 노동시장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① 경제재도약을 위한 투자 활성화 ②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코리아 뒷받침 ③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① 강하고 사기높은 군대 ② 공공질서·안전 시스템 강화 ③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역할 수행

출처: 기획재정부(2023a, p. 2)

전재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예산안은 현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이다. 작년 2023년 예산 편성 시 정부는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번 2024년 예산안 또한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정의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예산 대비 2.8%라는 낮은 총지출 증가율과 약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러한 재정기조를 잘 말해준다. 12대 분야별로 보면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줄인다는 점도 이번 예산안에서 도드라진다.¹⁾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재정 정책 결정의 중요한 고려사항인 경제여건부터 간단히 살펴보자. 필자의 생각에 최근 경제정책에서 화두는 단연 물가상승률이다. 높은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하였다. 한국은행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으로 0.5%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2021년 8월 26일부터²⁾ 인상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기준금리가 3.5%에 이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속도가 미국에 미치지 못해 한미 간 정책금리가 역전되었고 그 격차가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한미 간 금리 격차와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에 대한 시장의 평가 등으로 환율도 높은 상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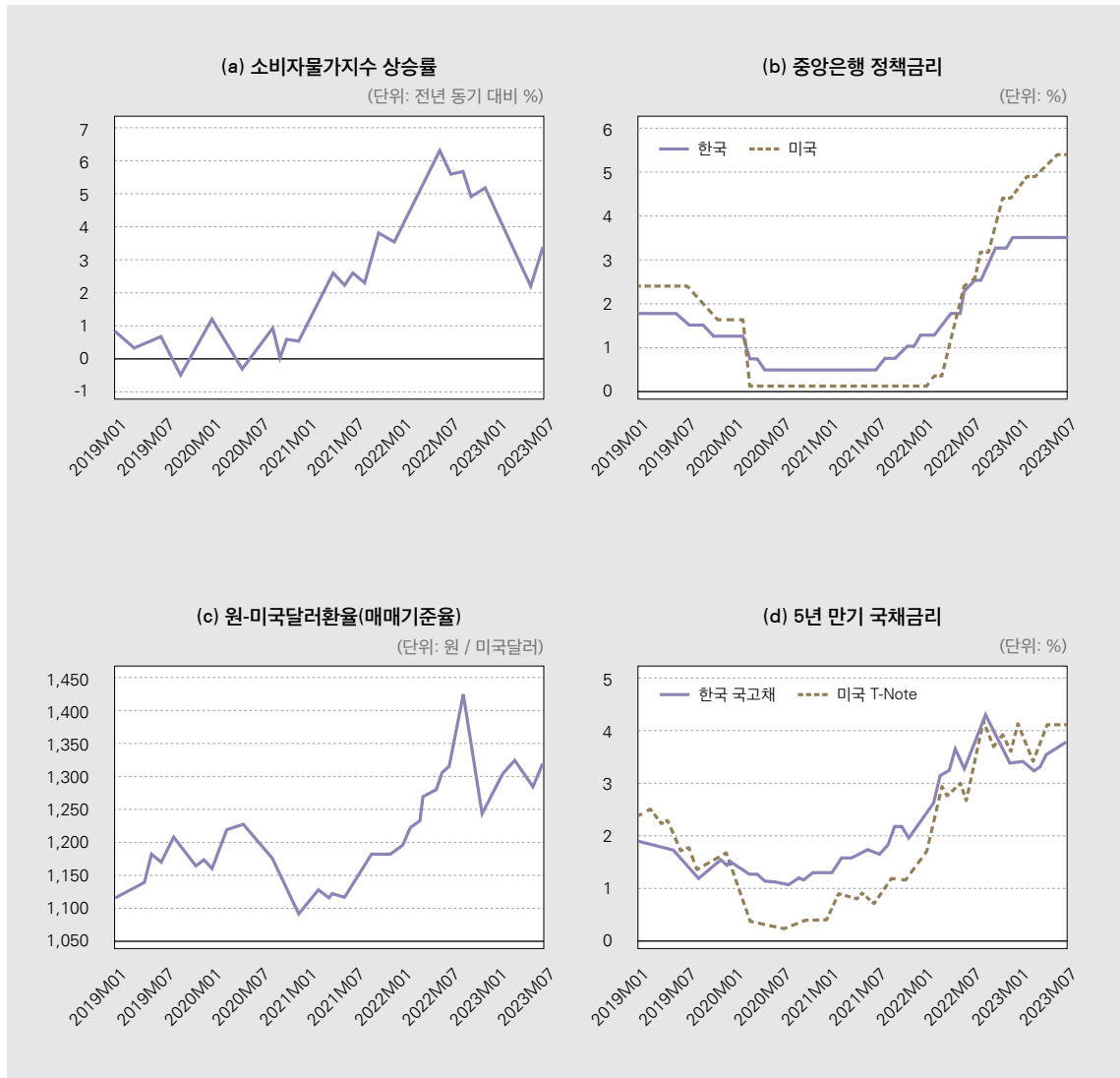
유지하고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이며, 이에 국내외 주요 전망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4~1.5%로 예측하고 있다. 즉, 저성장이다.

내년의 경제여건은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올해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내년에는 2.3~2.6%로 올해보다는 안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은 다른 선진국도 유사하여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또한 내년에는 멈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또한 올해보다 높은 2.1~2.4% 정도로 전망된다. 다만 경기 국면상 호황은 아니고 회복기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점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 예산안 수립 당시의 예상보다 1%p 이상 낮아지고 물가상승률도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듯,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내년의 경제여건 또한 낙관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주요 전망 기관들은 높은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패권 경쟁과 지리경제학적 분열, 이에 따른 국제 공급망 재편, 중국의 부동산 시장 위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경제의 하방위험이 높다고 진단한다.

1) 건전재정이라는 용어를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이를 통해 총지출 증가율을 낮춘 수준으로 통제한다는 점에서 건전재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생각에 건전재정보다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더 명확하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협소하게 정의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적절한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도 적절한 국가채무 비율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다. 본고는 건전재정이라는 용어의 불명확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설명자료 등에서 정부가 사용한 용어를 차용하며, 이를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평가한다.

2) 한국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list.do?dataSeCd=01&menuNo=200643>, 검색일자: 2023. 9. 11.

[그림 1] 경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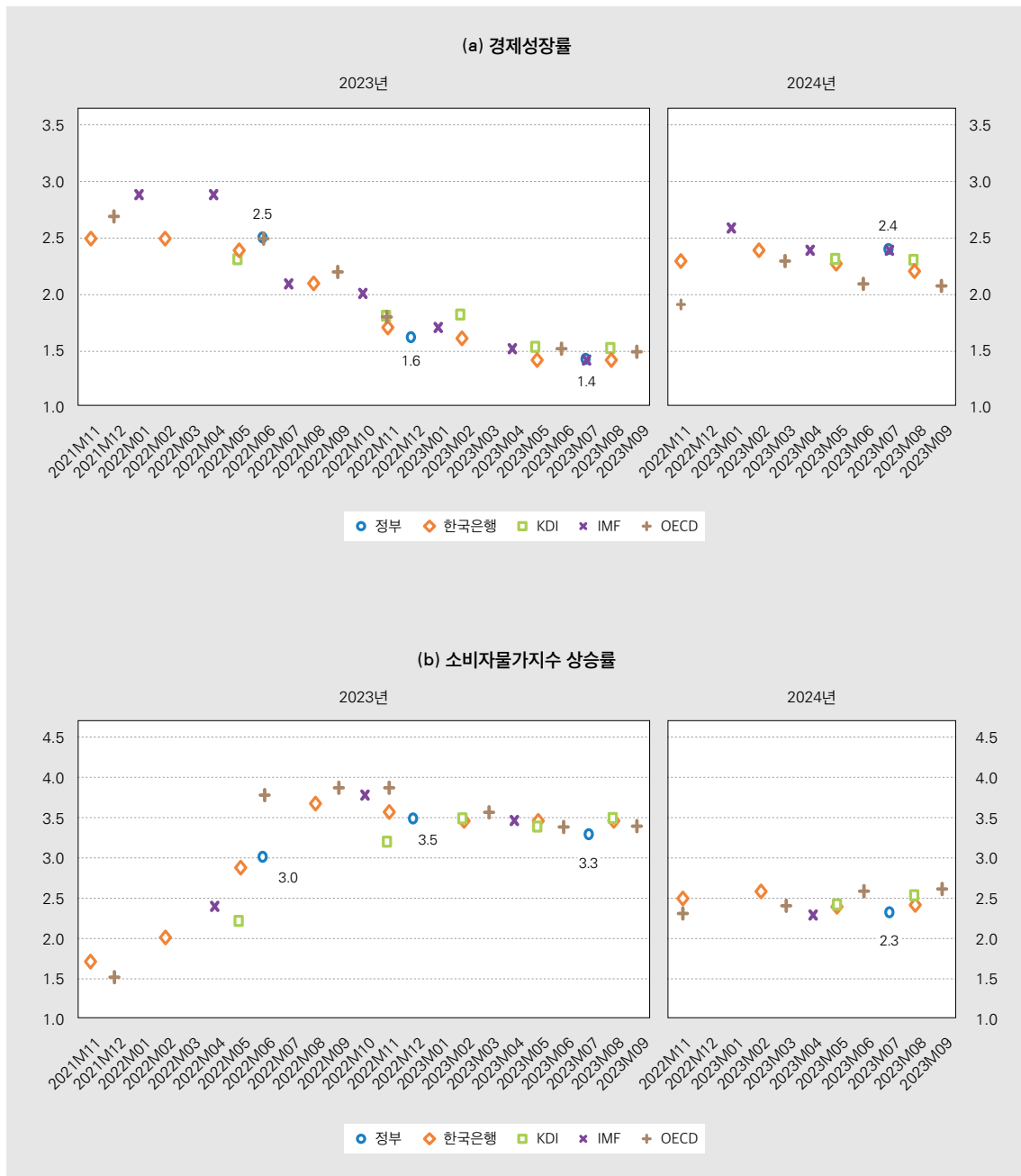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3.2.2. 시장금리(월, 분기, 년)」, <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자: 2023. 9. 11.
 ____, 경제통계시스템, 「3.1.2.1.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자: 2023. 9. 11.
 ____, 경제통계시스템, 「4.2.1. 소비자물가지수」, <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자: 2023. 9. 11.
 ____, 경제통계시스템, 「9.1.1.3. 국제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금리」, <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자: 2023. 9. 11.

이러한 경제여건하에서 2024년 예산안의 건전 재정으로 설정된 재정기조의 방향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시점에서 전망되는 내년도 경기 국면은 회복기로 대대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

황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면 자칫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를 자극하여 고물가, 고금리,

[그림 2] 2023~2024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주: 가로축은 전망 시점이며, 그림의 수치 표시는 정부 전망치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2a, p. 52; 2022b, p. 58; 2023, p. 52)

한국은행(2021, p. 26, 34; 2022a, p. 26, 34; 2022b, p. 26, 34; 2022c, p. 25, 34; 2022d, p. 26, 35; 2023a, p. 26, 35; 2023b, p. 16, 23; 2023c, p. 22, 26)

한국개발연구원(2022a, p. 30; 2022b, p. 30; 2023a, p. 12; 2023b, p. 30; 2023c, p. 12)

IMF(2022a, 데이터 파일; 2022b, p. 38; 2022c, 데이터 파일; 2022d, p. 43; 2023a, 데이터 파일; 2023b, p. 37; 2023c, 데이터 파일)

OECD(2021, p. 162; 2022a, p. 168; 2022b, pp. 4~5; 2022c, p. 165; 2023a, pp. 4~5; 2023b, p. 187; 2023c, pp. 6~7)

고환율로 인한 고통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될 우려도 있다. 다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경기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려했던 위협의 실현이 가시화될 경우 재정정책은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건전재정 기조의 필요성은 내년에 예상되는 경제여건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3여 년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부채에 의존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었는데, 이는 건전재정이 필요한 더 중요한 이유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 회복 및 확보는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다뤄져야만 한다.

재정은 지속가능하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024년 예산안이 중점 투자방향으로 제시했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는 재정의 필수적인 역할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재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복지 지출은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반면, R&D 예산은 이례적으로 크게 삭감되었다. 점점 치열해지는 세계 기술 경쟁 속에서 재정의 대응에 따라 우리 미래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질 텐데, R&D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지 걱정된다. SOC, 환경,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예산의 증가율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는 향후 재정의 역할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2024년 예산안」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평가하

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재정총량을 통해 이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난 재정기조를 논의한다. 제Ⅲ장에서는 분야별 재원배분을 통해 이번 예산안에 나타난 재정투자 방향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Ⅱ. 재정총량에 나타난 재정기조

앞서 필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24년 예산안의 건전재정 기조는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실제로 건전재정에 부합하는가는 재정총량을 통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가장 곤혹스러웠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은 바로 세입여건이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이 367.4조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33.1조원(8.3%)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세수입 감소로 인해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13.6조원(2.2%) 감소한 612.1조원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의 세수결손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2023b)는 지난 9월 18일 올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수입을 예산보다 59.1조원 적은 341.4조원으로 재추계하여 발표하였다. 2022년에 395.9조원 견뎌던 국세수입이 1년 만에 54.5조원 줄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 악화된 세입여건이 내년에도 영향을 미쳐 내년도 총수입 규모가 올해 예산보다 축소되는 것이다.

<표 2> 재정총량(규모)

(단위: 조원, %)

구분	본예산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연평균 증가폭 (연평균 규모)			연평균 증가율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4년	2025~2027년	2024~2027년	2024년	2025~2027년	2024~2027년	2024년	2025~2027년	2024~2027년
총수입	625.7	612.1	661.5	692.0	722.3	722.3	-13.6	36.7	24.2	-2.2	5.7	3.7	-2.2	5.7	3.7
국세수입	400.5	367.4	401.3	423.2	444.9	444.9	-33.1	25.8	11.1	-8.3	6.6	2.7	-8.3	6.6	2.7
세외수입	25.0	27.9	33.6	30.9	29.9	29.9	2.9	0.7	1.2	11.6	2.3	4.6	11.6	2.3	4.6
기금수입	200.3	216.8	226.6	237.9	247.5	247.5	16.5	10.2	11.8	8.2	4.5	5.4	8.2	4.5	5.4
총지출	638.7	656.9	684.4	711.1	736.9	736.9	18.2	26.7	24.6	2.8	3.9	3.6	2.8	3.9	3.6
예산지출	441.1	438.7	456.9	474.1	489.0	489.0	-2.4	16.8	12.0	-0.5	3.7	2.6	-0.5	3.7	2.6
기금지출	197.7	218.2	227.5	237.0	247.9	247.9	20.5	9.9	12.6	10.4	4.3	5.8	10.4	4.3	5.8
의무지출	340.3	348.2	373.3	394.0	413.5	413.5	7.9	21.8	18.3	2.3	5.9	5.0	2.3	5.9	5.0
복지분야	154.7	172.7	180.7	190.6	199.6	199.6	18.0	9.0	11.2	11.6	4.9	6.6	11.6	4.9	6.6
지방이전	155.4	139.8	154.7	163.0	171.4	171.4	-15.6	10.5	4.0	-10.0	7.0	2.5	-10.0	7.0	2.5
이자지출	22.9	27.4	29.6	32.3	34.8	34.8	4.5	2.5	3.0	19.7	8.3	11.0	19.7	8.3	11.0
기타	7.3	8.3	8.3	8.1	7.8	7.8	1.0	-0.2	0.1	13.7	-2.0	1.7	13.7	-2.0	1.7
재량지출	298.4	308.7	311.1	317.1	323.4	323.4	10.3	4.9	6.3	3.5	1.6	2.0	3.5	1.6	2.0
지방이전 제외 지출	483.3	517.1	529.7	548.1	565.5	565.5	33.8	16.1	20.6	7.0	3.0	4.0	7.0	3.0	4.0
통합재정수지	-13.1	-44.8	-22.9	-19.2	-14.6	-14.6	[-44.8]	[-18.9]	[-25.4]	-	-	-	-	-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1	47.2	49.3	50.3	51.2	51.2	[47.2]	[50.3]	[49.5]	-	-	-	-	-	-
관리재정수지	-58.2	-92.0	-72.2	-69.5	-65.8	-65.8	[-92.0]	[-69.2]	[-74.9]	-	-	-	-	-	-
국가채무	1,134.4	1,196.2	1,273.3	1,346.7	1,417.6	1,417.6	61.8	73.8	70.8	5.4	5.8	5.7	5.4	5.8	5.7
적자성 채무	721.3	792.4	849.8	910.4	968.6	968.6	71.1	58.7	61.8	9.9	6.9	7.6	9.9	6.9	7.6
금융성 채무	413.0	403.7	423.5	436.3	449.0	449.0	-9.3	15.1	9.0	-2.3	3.6	2.1	-2.3	3.6	2.1
경상 GDP	2,249.0	2,345.6	2,454.3	2,563.5	2,672.3	2,672.3	96.6	108.9	105.8	4.3	4.4	4.4	4.3	4.4	4.4

주: 1.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2. 음영 부분은 위 표에 보고된 2023~2027년 재정총량 규모를 이용해 계산한 것으로 원자료와 다를 수 있음

3. 2023년 경상 GDP 전망 시점은 국회 본예산 확정 당시이고, 2024년 이후는 2023년 6월이며, 참고로 관계부처 합동(2023)은 2024년 경상성장률을 4.9%로 전망

출처: 대한민국정부(2023a, pp. 21, 25, 26, 39; 2023b, p. 17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 재정총량(GDP 대비 비중)

(단위: %, %p)

구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연평균 비중		연평균 비중 증감폭		
			2025년	2026년	2027년	2025~ 2027년	2024~ 2027년	2024년	2025~ 2027년	2024~ 2027년
총수입	27.8	26.1	27.0	27.0	27.0	27.0	26.8	2024년 -1.7	2025~2027년 0.3	2024~2027년 -0.2
국세수입	17.8	15.7	16.4	16.5	16.6	16.5	16.3	2024년 -2.1	2025~2027년 0.3	2024~2027년 -0.3
세외수입	1.1	1.2	1.4	1.2	1.1	1.2	1.2	2024년 0.1	2025~2027년 -0.0	2024~2027년 0.0
기금수입	8.9	9.2	9.2	9.3	9.3	9.3	9.3	2024년 0.3	2025~2027년 0.0	2024~2027년 0.1
총지출	28.4	28.0	27.9	27.7	27.6	27.7	27.8	2024년 -0.4	2025~2027년 -0.1	2024~2027년 -0.2
예산지출	19.6	18.7	18.6	18.5	18.3	18.5	18.5	2024년 -0.9	2025~2027년 -0.1	2024~2027년 -0.3
기금지출	8.8	9.3	9.3	9.2	9.3	9.3	9.3	2024년 0.5	2025~2027년 -0.0	2024~2027년 0.1
의무지출 (의무지출 비중)	15.1 (53.3)	14.8 (53.0)	15.2 (54.5)	15.4 (55.4)	15.5 (56.1)	15.4 (55.4)	15.2 (54.8)	2024년 -0.3 (-0.3)	2025~2027년 0.2 (1.0)	2024~2027년 0.1 (0.7)
복지분야	6.9	7.4	7.4	7.4	7.5	7.4	7.4	2024년 0.5	2025~2027년 0.0	2024~2027년 0.1
지방이전	6.9	6.0	6.3	6.4	6.4	6.4	6.3	2024년 -0.9	2025~2027년 0.2	2024~2027년 -0.1
이자지출	1.0	1.2	1.2	1.3	1.3	1.3	1.2	2024년 0.1	2025~2027년 0.0	2024~2027년 0.1
기타	0.3	0.4	0.3	0.3	0.3	0.3	0.3	2024년 0.0	2025~2027년 -0.0	2024~2027년 -0.0
재량지출	13.3	13.2	12.7	12.4	12.1	12.4	12.6	2024년 -0.1	2025~2027년 -0.4	2024~2027년 -0.3
지방이전 제외 지출	21.5	22.0	21.6	21.4	21.2	21.4	21.5	2024년 0.6	2025~2027년 -0.3	2024~2027년 -0.1
통합재정수지	-0.6	-1.9	-0.9	-0.7	-0.5	-0.7	-1.0	2024년 -1.3	2025~2027년 0.5	2024~2027년 0.0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0	2.0	2.0	2.0	1.9	2.0	2.0	2024년 0.0	2025~2027년 -0.0	2024~2027년 -0.0
관리재정수지	-2.6	-3.9	-2.9	-2.7	-2.5	-2.7	-3.0	2024년 -1.3	2025~2027년 0.5	2024~2027년 0.0
국가채무	50.4	51.0	51.9	52.5	53.0	52.5	52.1	2024년 0.6	2025~2027년 0.7	2024~2027년 0.7
적자성 채무 (적자성 채무 비중)	32.1 (63.6)	33.8 (66.2)	34.6 (66.7)	35.5 (67.6)	36.2 (68.3)	35.5 (67.6)	35.0 (67.2)	2024년 1.7 (2.7)	2025~2027년 0.8 (0.7)	2024~2027년 1.0 (1.2)
금융성 채무	18.4	17.2	17.3	17.0	16.8	17.0	17.1	2024년 -1.2	2025~2027년 -0.1	2024~2027년 -0.4

주: 의무지출 비중은 총지출 대비, 적자성 채무 비중은 국가채무 대비 비중

출처: <표 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어려운 세입여건으로 정부는 총지출 규모를 결정하는데 많은 고심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2.8% 증가한 656.9조 원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3년도 예산 편성 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한 데 이어 2024년도 예산안 또한 이러한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과거 본예산의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2.8%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수립 시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상당히 무게를 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5~2027년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4%보다 낮은 3.9%로 계획하였다. 즉 건전재정 기조를 중기 시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경제규모 대비 재정지출 규모를 점차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건전재정에 대한 의지는 재량지출에서도 잘 읽힌다. 올해 예산 대비 2024년 예산안의 재량지출 증가율은 3.5%로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9%(관계부처 합동, 2023)보다도 낮다. 올해 재량지출 예산이 작년보다 감소한 데 이어 내년 재량지출 예산 증가율도 높지 않은 점은 정부가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내년 예산안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5~2027년 연평균 재량지출 증가율 또한 1.6%로 매우 낮춰 잡아 2027년까지 GDP 대비 재량지출 비중을 12.1%까지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2018년 하반기에 접어든 경기 불황 국면과 2020년부터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확장재정을 강조하면서 2019년 이후 GDP 대비 재량지

<표 4> GDP 대비 재량지출 비중

(단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2.0	11.6	11.3	11.6	12.8	15.3	15.4

주: 결산 기준
 출처: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의무·재량지출」,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m/UOPKOSMA09?acntYrFr=2015&acntYrTo=2023&langCd=ko>, 검색일자: 2023. 8. 20.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1.2.2.3. 국내총산에 대한 지출(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자: 2023.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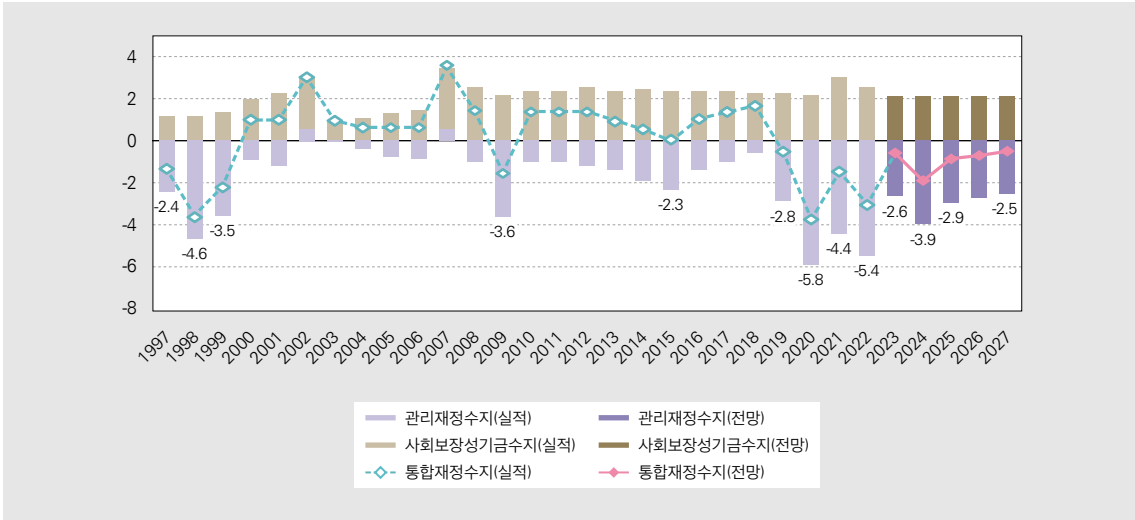
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이를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놓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그 과정을 담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수지를 보면 건전재정 기조라는 정부의 주장에 고개가 갸웃해진다. 내년도 관리재정수지가 GDP의 3.9%가량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국제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3.6%)보다도 높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의 3.9%를 넘어선 시기는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4.6%)과 코로나19 대유행기였던 2020~2022년(4.4~5.8%)뿐이었다. 따라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내년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에 부합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현재 정부는 재정이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안에서는 이를 지키지 못하는 형국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의 핵심 내용은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상한을 GDP의 3%로 설정하되,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상한을 GDP의 2%로 조정하는 수지준칙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낮은 재량지출 증가율에도

[그림 3]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실적 및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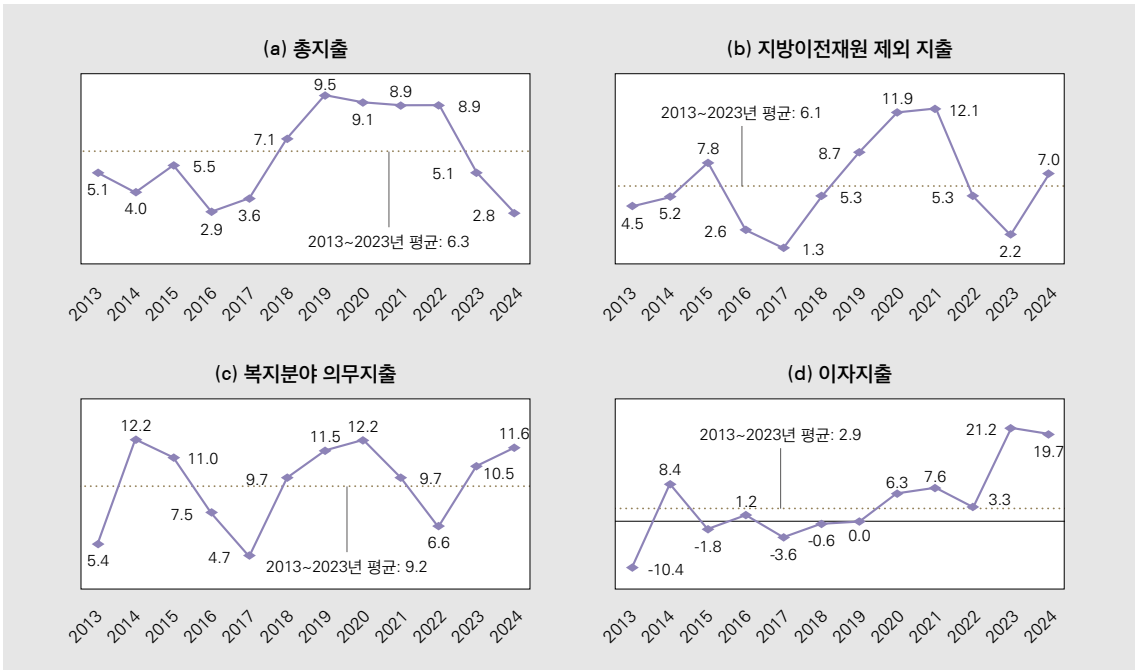


주: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출처: e-나라지표, 국정모니터링시스템, 「통합재정수지」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4, 검색일자: 2023. 8. 20. 대한민국정부(2023a, p. 39)

[그림 4] 재정지출 예산 증가율 추이

(단위: %)



주: 2023년 이전은 국회 확정 본예산, 2024년은 정부 예산안 기준

출처: 대한민국정부(2012, p. 37~39; 2013, pp. 28~30; 2014, pp. 25~27; 2015, pp. 27~28; 2016, pp. 27~28; 2017, pp. 25~26; 2018, pp. 25~26; 2019, pp. 25~26; 2020, pp. 29~30; 2021, pp. 25~26; 2022, pp. 25~26; 2023a, pp. 25~2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큰 이유는 세입여건 악화와 더불어 복지분야 의무지출과 이자지출의 증가율이 높기 때문이다. 국세수입이 감소하면 당연히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커진다. 다만, 국세수입이 감소하면 내국세 등에 연동된 지방이전재원도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여건 악화만으로는 내년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설명하기 어렵다.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살펴볼 때 총지출에서 지방이전재원을 제외한 지출을 기준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과거와 비교하면 총지출 증가율과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이 기준으로 계산한 2024년 예산안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7.0%로 과거 11년간의 평균인 6.1%보다 높다. 총지출에는 내국세 등과 연동되는 지방이전재원이 포함되어 있고 내년도 국세수입이 33.1조원(8.3%)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이전재원도 15.6조원(10.0%) 감소한다. 그만큼 재정지출 예산에 여유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내년도 지방이전재원을 제외한 지출 예산안은 올해보다 33.8조원(7.0%) 증가하여 그 증가폭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복지분야 의무지출과 이자지출 증가율이 높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두 지출의 증가율이 각각 11.6%와 19.7%로 2013~2023년 평균 증가율인 9.2%와 2.9%를 넘어서는 수치다. 즉, 정부는 내년에 재량지출 증가율을 낮춰 건전재정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의무지출 중 복지분야 지출과 이자지출이 각각 빠르게 증가하는 바람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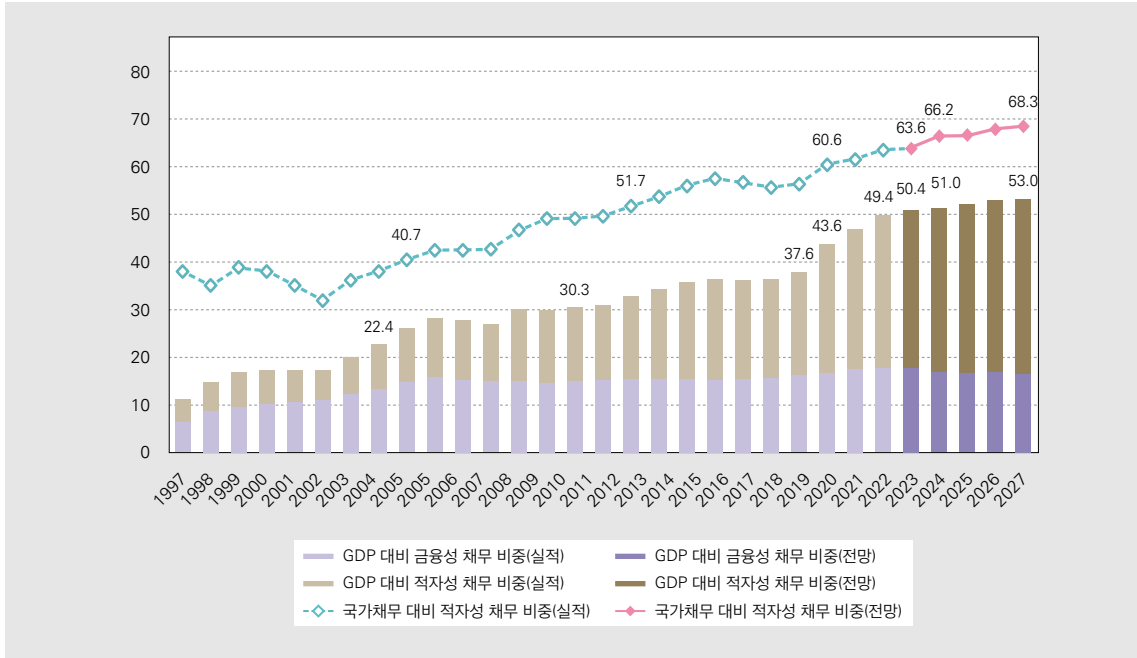
2024년 큰 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61.8조원 증가한 1,196.2조원이 될 전망이다. 또한 「2023~2027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나타난 중기 시계의 관리재정수지는 2025~2027년 3년간 평균적으로 GDP의 2.7%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계획이다. 2025년 이후의 재정운용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에 부합한다. 다만 GDP 대비 2.7% 규모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과거의 재정운용과 비교하면 이 또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 53.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속도가 2020~2022년에 비해 상당히 완만해진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중기 시계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재정운용에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도 드러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재량지출에만 의존한 재정건전화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특히 2024년 예산안에서 복지분야 의무지출과 이자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단 내년만의 문제는 아니다.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고령화 등으로 향후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지출은 복지분야 의무지출보다 규모가 작지만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국가채무로 인해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증가율이 높고, 고금리로 인해 앞으로도 과거의 증가율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향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에는 국세수입 감소로 지방이전재원이 재정에 부담을 다소 덜어주었지만 일반적으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국세수입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이전재원도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5~2027년 재량지출 증가율은 1.6%로 매우 낮지만 의무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5.9%로 갈

[그림 5]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실적 및 전망

(단위: %)



출처: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국가재정운용계획」,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검색일자: 2023. 8. 23.
대한민국정부(2022, p. 39; 2023, p. 39)

은 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경상성장률인 4.4%보다 높다. 세부적으로 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이 각각 연평균 4.9%, 7.0%, 8.3%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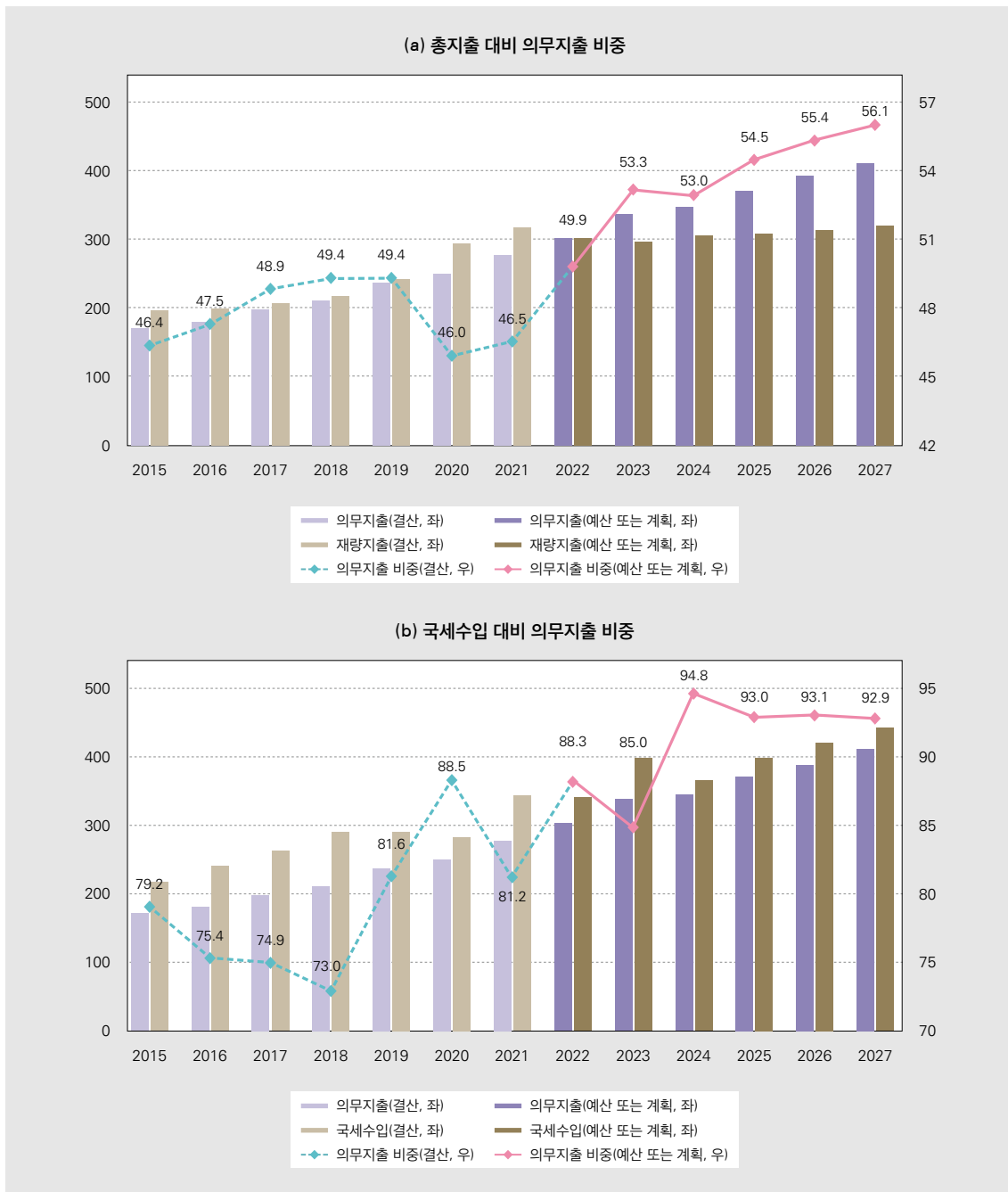
앞으로 의무지출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은 지표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의무지출이 재량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다보니 총지출 예산 중 의무지출 비중이 2027년에는 약 56.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과거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이 50%를 밑돌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국세수입 대비 의무지출 비중 또한 2024년에는 94.8%에 이르고 2027년에도 92.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또한 국세수입 대비 의무지출 비중이 2018년 이전 70%대에서 감

소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즉, 앞으로는 국민으로부터 걷는 세금의 대부분을 의무지출에 써야한다는 것과 동시에 의무지출을 더 이상 늘리는 것에 대한 한계에 거의 다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총지출 대비 또는 국세수입 대비 의무지출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운용에서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운신의 폭이 작아진다는 것과 함께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재정수지를 통해서도 앞으로의 재정여건은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보통 차년도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는 세입여건 및 경제여건에 따라 적자 규모를 크게 잡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중기계획의 마지막 3년간은 적자폭을 줄여 재정을 건전하게 관

[그림 6] 국세수입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예산

(단위: 조원, %)



주: 2022년은 의무지출 결산자료가 없어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

출처: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의무·재량지출」,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m/UOPKOSMA09?acntYrFr=2015&acntYrTo=2023&langCd=ko>, 검색일자: 2023. 8. 20.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5.4.2. 조세징수액」, <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자: 2023. 9. 13.

대한민국정부(2023a, p.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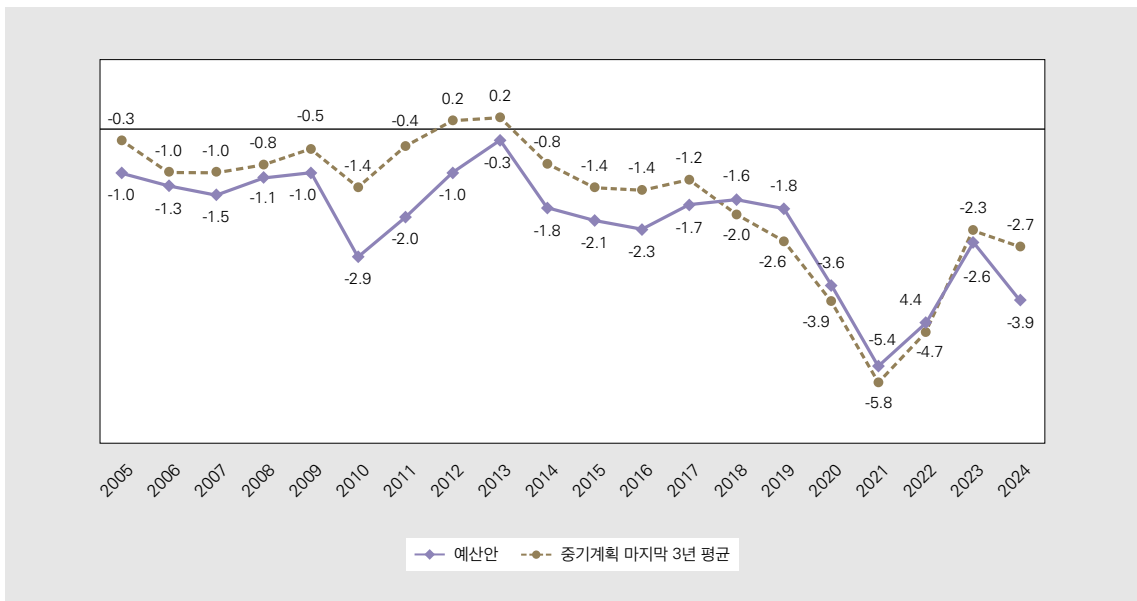
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4년 처음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작성된 이후 2016년에 발표한 2017년 예산안까지는 이러한 모습이 잘 관찰된다. 그러나 2018~2022년 예산안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사라지고 중기계획 마지막 3년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오히려 예산안보다 더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행스럽게도 2023년 예산안부터는 다시 과거와 같이 중기계획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 수준에서 2017년 이전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2017년 이전에는 중기계획의 마지막 3년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모두 1.5% 미만이었고, 균형 재정에 가깝거나 심지어 흑자 재정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운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중기계획 마지막 3년의 평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

율은 각각 2.3%와 2.7%로 2017년 이전의 중기계획보다 높다. 정부가 재량지출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도 의무지출 때문에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상당히 답답한 모양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의무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필자가 내년의 재정운용이 더욱 긴축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때문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상한 3%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것이 더 부적절할 수 있다. 경제 및 재정여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도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유연하게 운용하더라도 중기 시계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신뢰성 있게 전달할 필

[그림 7]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단위: %)



출처: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국가재정운용계획」,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검색일자: 2023. 8. 23.
대한민국정부(2022, p. 39; 2023a, p. 39)

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고 설명한다. 주로 R&D 예산과 보조금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이다. 필자가 지출 구조조정의 세부 내용을 모두 검토해보진 못했지만, 대부분 재량지출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량 지출에 대한 혁신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에 대한 혁신도 불가피하다. 그간 정부는 예산안과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안에 법 개정 필요 등의 제약으로 인해 의무지출 혁신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였다. 이번 예산안에서 건전재정의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는 재정의 부담자이자 수혜자인 국민과 함께 의무지출 개편도 시작해야 한다.

Ⅲ. 분야별 자원배분에 나타난 재정투자 방향

우리나라의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분야별 자원 배분을 통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우선 최근 10년간의 12대 분야별 자원배분을 살펴보자. 2013년과 2023년의 분야별 예산 비중을 비교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예산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분야도 보건·복지·고용 분야로 연평균 8.8%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2013년 총지출 예산에서 28.5%를 차지했던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비중은 2023년 35.4%로 확대되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다음으로는 일반·지방행정, 교육, 국방 분야 순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올해 2023년은 이 네 개 분야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77.0%³⁾를 차지한다. 한편 SOC와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지난 10년간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아 비중이 축소되었다. SOC 예산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0.3%로 증가해 예산 규모에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과 다름없으며, 농림·수산·식품 예산도 2.9%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SOC와 농림·수산·식품 예산이 2013년에는 R&D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보다 컸으나, 2023년에는 작아졌다. 그밖에 공공질서·안전, 환경, 문화·체육·관광, 외교·통일 분야에는 지난 10년간 비교적 적은 예산이 투입되어, 2023년에는 이 네 개 분야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7.8%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난 분야별 자원배분의 특징을 살펴보자. 각 분야의 예산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예년과 유사하게 상대적으로 빠른(느린) 증가율을 보인 분야도 존재하지만, 과거에는 빠른(느린) 증가율을 보였지만 이번 예산안 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 분야도 있다. 이하에서는 지면 관계상 특징적인 몇몇 분야의 예산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2024년 분야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R&D 예산이 16.6% 삭감된 것이다. 이는 2013~2023년까지 10년간 R&D 예산이 연평균 6.3%의 증가율을 보였던 점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2024년 R&D 예산이 크게 삭감된 탓에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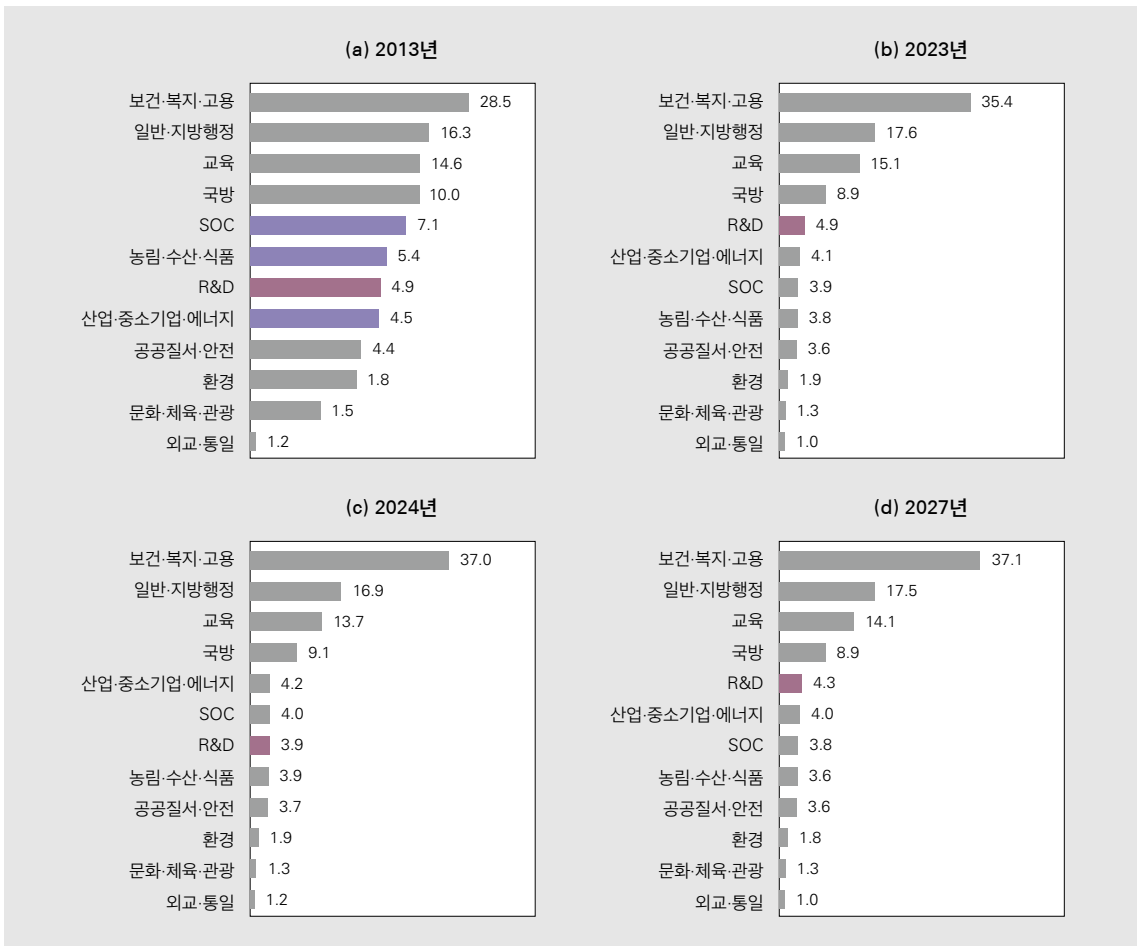
3) 12대 분야별 예산에서 국방 예산은 집계방식이 다른 분야와 달라 그 비중을 단순히 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집계방식을 다른 분야와 동일하게 수정하여도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본고는 수정하지 않은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2027년 연평균 증가율 또한 0.7%로 다른 분야의 예산 증가율보다 확연히 낮게 계획되었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 삭감에 대해 “그간 R&D 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는 미흡”하여, “나뉘먹기·관행적 지원 사업 등 비효율적인 R&D는 구조조정하고, 도전적·성과창출형 R&D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집중 투자 기술로는 바이오, 우주,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한 첨단

분야를 꼽고 있다. 정부의 설명대로 그간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많은 R&D 예산을 투입하였고 성공률도 높았지만, 성과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R&D 예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한편, 최근 R&D 예산은 2019년 20.5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단 3년 만에 9.3조원(45.4%) 증가하였는데, 내년에 삭감된 5.2조원은 최근에 급증한 R&D 예산을 조정하는 성격도

[그림 8] 총지출 대비 분야별 지출 예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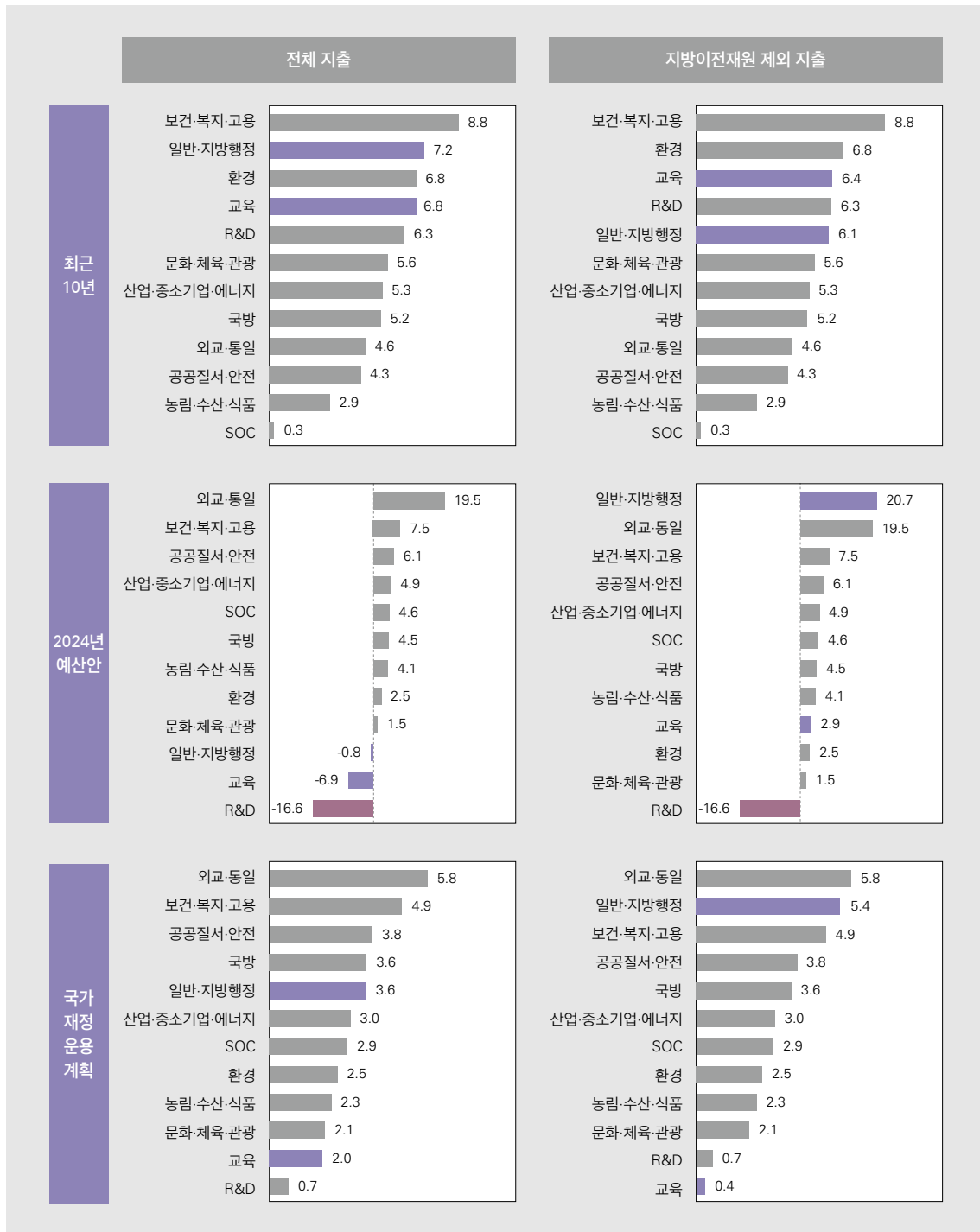
(단위: %)



출처: 대한민국정부(2013, p. 49; 2023a, p. 4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9] 분야별 본예산 연평균 증가율

(단위: %)



주: 최근 10년은 2013년 대비 2023년, 예산안은 2023년 대비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3년 대비 2027년 연평균(기하평균) 증가율
 출처: 기획재정부(2023a, p. 5)와 대한민국정부(2013, p. 31, 49; 2023a, p. 28, 42, 77, 19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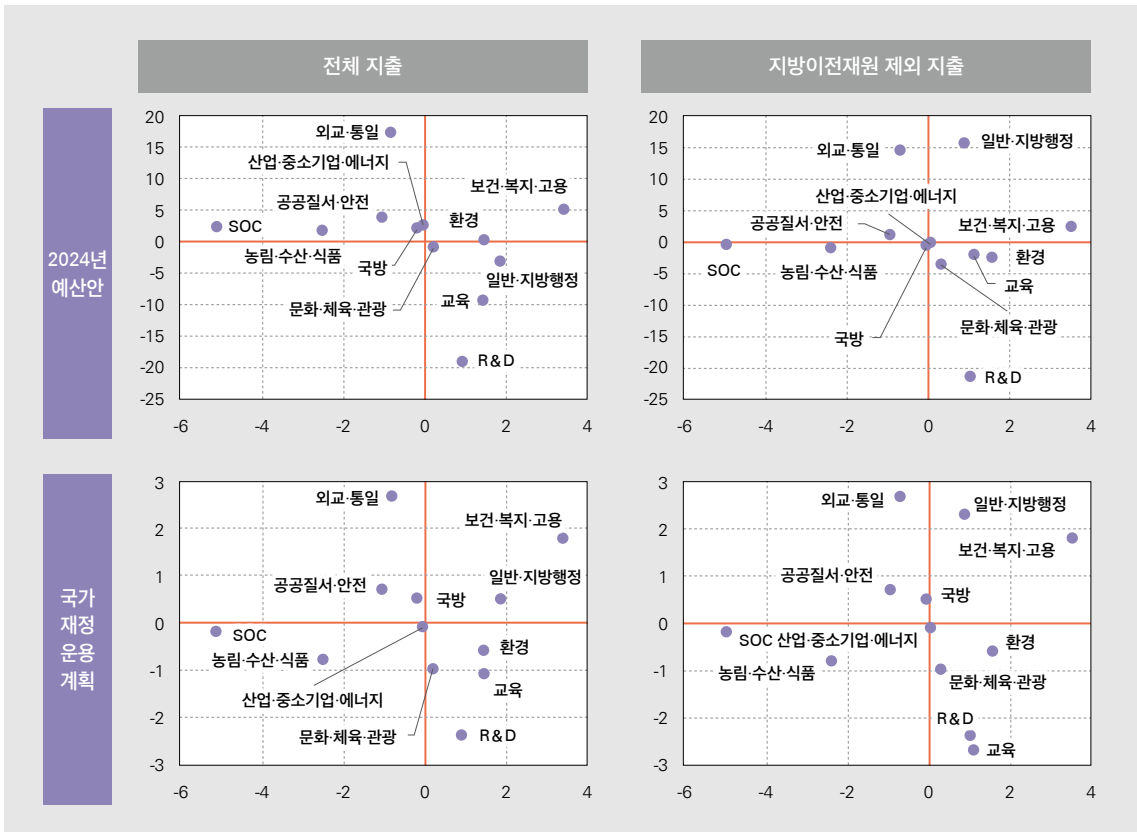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R&D 예산의 구조조정이 어떠한 과정과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 특히 대규모 R&D 예산 삭감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낮추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미래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규모와 위험성 등으로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R&D 분야에 국가의 투자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R&D의 가시적인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어 그 평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 단기

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R&D는 민간에 맡기면 되기 때문에 굳이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 더 나아가 내년 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토양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당장 내년에 연구비가 없어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 연구 현장에서 대거 이탈할 수 있다. 이는 미래를 책임질 우수 인력의 심각한 과학기술계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수 인력 양성의 실패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치명적이고 성장잠재력을 급격히 악화시킨다. 따라서 2024년 예산안에서 R&D 예산

[그림 10] 최근 10년 대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지출 증가율

(단위: %p)



주: 1. 각 수치는 (해당 분야의 지출 증가율 - 12대 분야의 평균 지출 증가율)
 2. 가로축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며, 세로축은 예산안 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출처: [그림 9]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 대거 구조조정된 만큼 정부는 그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여 미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R&D 예산과는 반대로 과거에는 예산 증가율에 있어 비교적 낮은 순위에 속했지만 이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높은 순위에 위치한 분야(그림 10)의 2사분면)도 존재한다. 외교·통일과 공공질서·안전 분야가 그렇다. 특히 2024년 외교·통일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19.5%로 다른 분야와 비교해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외교·통일 분야는 12대 분야 중 예산 규모가 2023년 기준 6.4조원으로 가장 작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증가해도 증가율은 높을 수 있다. 외교·통일 분야 예산 증가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등 전략지역 지원, 그리고 자연재해, 지역 분쟁, 식량위기 등으로 인한 인도적 지원 등으로 ODA 예산을 1.4조원 확대한 것이 포함되었다. 공공질서·안전 예산에서는 마약, 문지마 범죄 등의 범죄 예방과 수해 등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었다. 두 분야의 예산 증가는 최근의 국제 정세와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드러난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SOC 예산 증가 또한 과거와 사뭇 다르다. SOC 예산 규모는 과거 거의 정체되어 있었는데,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은 4.6% 증가하고 2027년까지는 연평균 2.9% 증가한다. 내년 SOC 예산에는 GTX 등 핵심 교통 인프라와 도로, 철도 등의 안전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었고, K-Pass 도입 등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며, 미래 모빌리티 등 교통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되었

다. 다만 새만금 개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 5,363억원을 비롯해 대구 경북신공항, 서산공항 등 신공항 건설 예산이 포함되었으며, 진해신항만 개발 예산이 3,749억원 증액되는 등의 변화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해 보인다.

과거에는 예산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지만 이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그렇지 못한 분야(그림 10)의 4사분면)도 있다. 바로 환경과 교육 분야이다. 지방이전재원을 제외한 지출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환경과 교육 예산의 증가율은 각각 6.8%와 6.4%로 보건·복지·고용 예산 다음으로 높았다. 그러나 두 분야의 내년 예산 증가율은 올해 대비 각각 2.5%와 2.9%로 R&D와 문화·체육·관광 예산 다음으로 낮게 증가한다. 올해 대비 2027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도 교육 예산은 0.4%만 증가해 12대 분야 중 가장 낮게 증가하고, 환경 예산 증가율도 2.5%로 낮은 편에 속한다.

최근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조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그런데 환경 예산의 낮은 증가율이 이러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24년 예산안에서 환경 분야 프로그램 예산 중 온실가스 감축 예산은 697억원 증가하였지만, 저탄소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기반 구축,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각각 782억원, 115억원, 99억원 감소한 점이 눈에 띈다. 기후변화 대응은 환경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R&D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탄소중립을 위한 뚜렷한 대응방안이 잘 보이지 않는데, 기후변화 대

응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고용과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예년처럼 이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분야(그림 10의 1사분면)이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경우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0.8% 감소한다. 이는 국세수입 감소로 내국세 등에 연동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하면 일반·지방행정의 예산이 20.7% 증가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를 제외하더라도 일반·지방행정 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약 36.9조원으로 규모가 작지 않다. 이는 57.0조원인 국방 예산보다 작지만 31.1조원인 R&D 예산보다 크다. 이러한 일반·지방행정의 예산이 내년에는 44.5조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특히, 일반·지방행정 분야 중 재정·금융 부문의 예산이 올해 26.3조원에서 내년 33.2조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최저신용자, 영세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번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 중에 하나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볼 수 있다.

총지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 대비 내년에 7.5%, 2027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한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2013년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전체 예산의 28.5%를 차지했는데, 2023년 35.4%로 대폭 확대되었다. 2024년 예산안이 만약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 분야의 예산 비중은 37.0%로 더 증가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7년에도 37.1%로 내년과 유사한 수준

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생계급여 인상 등 기초생보의 보장성이 강화되고 부모급여가 확대되는 등 취약계층 지원과 출산·양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복지지출 효율화에 대한 방향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증가는 상당부분 의무지출의 증가로 이어진다. 2023년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은 총 226.0조원인데, 이 중 68.4%인 154.7조원이 의무지출이다. 그런데 이 비중이 내년에는 71.1%, 그리고 2027년에는 73.0%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의무지출의 비중이 확대되면 그만큼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은 더욱 힘들어진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이 많이 축소되었다. 복지 분야 내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더라도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의무지출인 지방이전재원의 결정방식 개편과 함께 세수확충을 통한 자원마련 방안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러한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표 5> 보건·복지·고용 부문 의무지출 비중

(단위: %)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68.4	71.1	71.6	72.6	73.0

출처: 대한민국정부(2023a, p. 28, 5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IV. 결론

본고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크게 재정총량에 나타난 재정기조를 평가하였고, 분야별 자원배분을 통해 향후 정부의 재정투자 방향을 대략적으로 짚어 보았다.

재정총량을 보면 어려운 경제 및 세입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드러난다. 이는 정부의 재정혁신이 대체로 재량지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우리 재정의 문제점은 빠르게 증가하는 의무지출에 있다. 의무지출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의무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혁신 방향 중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재정준칙의 법제화다. 하지만 이 재정준칙은 의무지출을 통제하지 못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마지막 3년인 2025~2027년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을 준수하는데 이는 재량지출을 통한 것이다. 하지만 2025년 이후 평균 1.6%라는 재량지출 증가율에 나타나듯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상당한 고통이 따른다. 실질적으로 경제여건 등으로 이 계획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지준칙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

고 있는 재정준칙에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한도만 정하기 때문에 의무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가령 국세수입 대비 의무지출 비중과 같은 지표를 통해 특정 의무지출 증가 시 다른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하거나 세입을 확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세수입의 경우 경제여건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를 매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 특정 수준의 목표치(anchor)를 정하고 중기 시계에서 평균적으로 해당 목표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의무지출 도입 시 재원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된다면 기존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물론 지표만 설정한다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 및 운영 주체, 재정위험 진단 체계, 예방 및 교정 수단 등 이러한 지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요소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특히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당국 혼자만의 결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현재의 예산 편성 구조에서 재정당국은 지출 구조조정을 재량지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의무지출에는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무지출의 규모가 목표치를 지속적으로(가령, 3년 연속) 상회할 경우 구조조정의 우선순위나 방법 등을 법으로 사전에 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의무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도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예산을 현재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는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SOC 예산 또한 지역이 아닌 국가의 관점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이번 예산 편성과 중기 계획이 성장잠재력 확충,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중장기적 역할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기 전 남은 기간 각계 각층과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 경제·사회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이 다듬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a. 6. 16.
- _____,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2b. 12. 21.
- _____,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 7. 4.
-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보도자료 별첨, 2023a. 8. 29.
- _____, 「금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9조원 예상, 여유재원 활용해 차질없는 재정집행 추진: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보도자료, 2023b. 9. 18.
- 대한민국정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2. 9.
- _____,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 10.
- _____,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 9.
- _____,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5. 9.
- _____,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6. 9.
- _____,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7. 9.
- _____,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8. 9.
- _____,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9. 9.
- _____,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0. 9.
- _____,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 9.
- _____,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 9.
- _____,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a. 9.
- _____,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2023b. 9.
-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22년 상반기』, 제39권 제1호, 2022a. 5.
- _____, 『KDI 경제전망: 2022년 하반기』, 제39권 제2호, 2022b. 11.
- _____, 『KDI 경제전망: 수정』, 제40권 제1호, 2023a. 2.
- _____, 『KDI 경제전망: 2023년 상반기』, 제40권 제2호, 2023b. 5.
- _____, 『KDI 경제전망: 수정』, 제40권 제3호, 2023c. 8.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21. 11.
- _____,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22a. 2.
- _____,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22b. 5.
- _____,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22c. 8.
- _____,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22d. 11.
- _____,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23a. 2.
- _____,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23b. 5.
- _____,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23c. 8.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Rising Case loads, a Disrupted Recovery, and Higher Inflation,” Washington, D.C., January 2022a.(데이터 파일 링크: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2/Update/January/English/Data/WEOJanuary2022update.ashx>, 검색일자: 2023. 8. 23.)
-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War Sets Back the Global Recovery,” Washington, D.C., April 2022b.
-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Gloomy and More Uncertain,” Washington, D.C., July 2022c. (데이터 파일 링크: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2/Update/July/English/Data/WEOJuly2022update.ashx>, 검색일자: 2023. 8. 23.)
-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Countering the Cost-of-Living Crisis,” Washington, D.C., October 2022d.
-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Inflation Peaking amid Low Growth,” Washington, D.C., January 2023a.(데이터 파일 링크: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3/Update/January/English/Data/WEOJanuary2023update.ashx>, 검색일자: 2023. 8. 23.)
-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A Rocky Recovery,” Washington, D.C., April 2023b.
-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Near-Term Resilience, Persistent Challenges,” Washington, D.C., July 2023c.(데이터 파일 링크: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3/Update/July/English/WEOJuly2023update.ashx>, 검색일자: 2023. 8. 23.)
- OECD,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1 Issue 2, No. 110, OECD Publishing Paris, December 2021.
- _____,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2 Issue 1, No. 111, OECD Publishing Paris, June 2022a.
- _____,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Paying the Price of War,” OECD Publishing Paris, September 2022b.
- _____,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2 Issue 2, No. 112, OECD Publishing Paris, November 2022c.
- _____,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A Fragile Recovery,” OECD Publishing Paris, March 2023a.
- _____,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3 Issue 1, No. 113, OECD Publishing Paris, June 2023b.
- _____,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Confronting Inflation and Low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September 2023c.
-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국가재정운용계획」,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검색일자: 2023. 8. 23.
- _____,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의무·재량지출」,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m/UOPKOSMA09?acntYrFr=2015&acntYrTo=2023&langCd=ko>, 검색일자: 2023. 8. 20.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1.2.2.3. 국내총산에 대한 지출(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자: 2023. 9. 10.
- _____, 경제통계시스템, 「1.3.2.2. 시장금리(월, 분기, 년)」, <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자: 2023. 9. 11.

- _____, 경제통계시스템, 「1.5.4.2. 조세징수액」, <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자: 2023. 9. 13.
- _____, 경제통계시스템, 「2.1.2.2.3. 국내총산에 대한 지출 (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자: 2023. 9. 10.
- _____, 경제통계시스템, 「3.1.2.1.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 <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자: 2023. 9. 11.
- _____, 경제통계시스템, 「4.2.1. 소비자물가지수」, <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자: 2023. 9. 11.
- _____, 경제통계시스템, 「9.1.1.3. 국제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 금리」, <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자: 2023. 9. 11.
- _____,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list.do?dataSeCd=01&menuNo=200643>, 검색일자: 2023. 9. 11.
- e-나라지표, 국정모니터링시스템, 「통합재정수지」,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4, 검색일자: 2023. 8. 20.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스테이킹 보상(Staking Rewards)을 과세대상으로 명시]

■ 미국 국세청은 2023년 7월 31일, 지분증명(Proof of Stake, PoS)¹⁾으로 얻은 가상화폐 스테이킹²⁾ 보상(Cryptocurrency Staking Rewards)이 과세대상 소득임을 명시한 ‘Rev.Rul. 2023-14’를 발표함^{3), 4)}

- 가상화폐를 스테이킹한 보유자는 네트워크에서 검증자로 선정될 수 있고 선정된 검증자는 검증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보상받을 수 있음

■ 자산거래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받은 납세자는 해당 가상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한 과세연도에 공정시장가치(the fair market value of the crypto currency)를 총수입금액(gross income)으로 신고해야 함

- 전환가능한 가상화폐(convertible virtual currency)는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IRC)상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자산거래

에 적용되는 조세원칙이 가상화폐 거래에도 적용되는 것임

- IRC Sec 61은 수입금액(income)에 대해 재산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해 실현된 모든 이익 또는 부정할 수 없는 부의 접근이라 규정하고 있음

- 납세자는 실제 또는 추정 수령을 통해 해당 가상화폐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획득한 과세연도에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함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영국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회계기준 개정안 채택]

■ 영국 승인이사회(UK Endorsement Board, UKEB)는 2023년 7월 26일,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인세 회계기준인 IAS 12 개정안의 채택을 발표함^{5), 6)}

- 2023년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 불

1) 지분증명이란 가상화폐 지분율에 비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합의 메커니즘을 의미함

2) 스테이킹이란 보유한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한 후 가상화폐의 검증과정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화폐를 받는 행위를 의미함

3) IRS, “Revenue Ruling 2023-14,” 2023. 7. 31., <https://www.irs.gov/pub/irs-utl/rev-ruling-2023-14.pdf>, 검색일자: 2023. 8. 24.

4) IBFD, “IRS: Taxpayers Must Report Cryptocurrency Staking Rewards as Gross Income Upon Obtaining Control Over Rewards,” 2023. 8.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8-01_us_3.html, 검색일자: 2023. 8. 24.

5) UK Endorsement Board, “UKEB adopts International Tax Reform: Pillar Two Model Rules(Amendments to IAS 12),” 2023. 7. 19., <https://www.endorsement-board.uk/ukeb-adopts-international-tax-reform-pillar-two-model-rules-amendments-to-ias-12>, 검색일자: 2023. 8. 3.

6) IBFD, “United Kingdom – United Kingdom Amends Accounting Rules to Comply with Pillar Two Rules,” 2023. 7. 2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7-26_uk_1.html, 검색일자: 2023. 8. 2.

확실성 해소를 위해 IAS 12 법인세 개정 기준 (International Tax Reform-Pillar Two Model Rules)을 발표⁷⁾한 바 있으며, 이번에 해당 개정안을 채택한 것임

-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이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임시적 예외규정을 마련함
- 상기 예외사항에 대해 별도 주식 공시를 하도록 함
-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당기 법인세 비용)을 공시하도록 함
-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시행 전에는 공시 대상인지를 판단해 공시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개정사항은 2024년 3월 IAS 12에 통합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EU 글로벌 최저한세 지침(2022/2523)을 이행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함⁸⁾

- 법안 초안은 대체로 EU 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 및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ayments Rule, UTPR)을 도입함
- 적격소재국 추가세(qualifying domestic top-up tax) 및 경과 세이프하버(transitional safe harbour)를 도입함
 - 다국적기업 그룹이 초과이익에 대하여 부담세액을 최저한세율로 증가시키는 적격소재국 추가세를 부담하면,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세액은 발생하지 않음
 - 경과 세이프하버는 경과기간⁹⁾ 동안 다국적기업 그룹이 국가별 보고서(CbC Report)에 기초하여 최소기준(de minimis test), 간소화된 실효세율 기준(simplified tax rate test), 경상이익 기준(routine profits test)을 충족하면 해당 회계연도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함¹⁰⁾



룩셈부르크

[필라2 이행 법안 초안 발표]

- 룩셈부르크는 2023년 7월 28일, 필라2와 관련한

- EU 회원국은 2022년 12월 15일, EU 내 다국적기업 그룹과 대규모 내국 그룹에 대하여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도록 하는 지침에 합의하였음

7) IBFD, "IASB Announces Amendments to Give Temporary Relief from Deferred Tax Accounting Arising from Pillar Two Reform," 2023. 5.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5-23_o2_2, 검색일자: 2023. 8. 3.

8) Ministère des Finances, "Projet de loi pour la mise en œuvre du Pilier Deux de la réforme fiscale internationale de l'OCDE dans l'UE approuvé par le Conseil de Gouvernement," <https://mfin.gouvernement.lu/fr/actualites.gouvernement%2Bfr%2Bactualites%2Bto%2Bactualites%2Bcommuniqués%2B2023%2B07-juillet%2B28-backes-pilier-deux-ocde.html>, 검색일자: 2023. 9. 7.; IBFD, "Council of Ministers Adopts Draft Bill to Implement Pillar Two Rules," 2023. 7.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7-31_lu_1.html, 검색일자: 2023. 8. 24.

9) 경과기간은 2026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개시된 회계연도로, 2028년 6월 30일 이후의 회계연도는 제외함

10) 경과 세이프하버는 2022년 12월 OECD가 발간한 세이프하버 관련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세 한도금액 인상 계획을 발표함¹⁵⁾

- 2024년 개인소득세 면세 한도액을 기존 11,693유로¹⁶⁾에서 12,500¹⁷⁾유로로 인상할 예정임
 - 오스트리아 개인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각 구간별 세율이 상이함
 - 2023년 기준 오스트리아 개인소득세는 연소득의 11,693유로까지는 면세, 11,693~19,134유로¹⁸⁾는 20% 세율, 19,134~32,075유로¹⁹⁾는 30% 세율로 구간별 세율이 증가하며 100만 유로²⁰⁾ 이상은 최대 세율 50%를 부과함
-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소득세 면세 한도액을 인상함으로써 2024년 총 36억 5,000만유로²¹⁾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함

<자료수집 및 정리: 유승혜 연구원>



이탈리아

[은행에 횡재세 도입]

■ 이탈리아는 2023년 8월 10일, 적격 은행에 대

한 특별세인 횡재세 도입을 관보에 게재하였고 2023년 8월 11일 발효되었음²²⁾

- 이탈리아는 2023년 8월 8일,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제활동과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긴급조치를 승인하면서 적격 금융중개자에 대한 특별횡재세 도입을 포함하였으나 자산관리 및 증개 회사는 제외되었음²³⁾
- 횡재세는 다음 중 더 높은 금액에 40%의 세율로 과세됨
 - 2023년 1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역년 채택 은행의 경우 2022년 회계연도)에 실현된 이자 마진 중 2022년 1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역년 채택 은행의 경우 2021년 회계연도)에 실현된 이자 마진의 최소 5%를 초과한 부분
 - 2024년 1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역년 채택 은행의 경우 2023년 회계연도)에 실현된 이자 마진 중 2022년 1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역년 채택 은행의 경우 2021년 회계연도)에 실현된 이자 마진보다 10% 이상 초과된 부분
- 단, 부과되는 횡재세액은 2023년 1월 1일 시작

15) Bundesministerium Finanzen(Österreich), "Brunner: Steuerzahler sparen sich kommendes Jahr 3,65 Milliarden Euro Steuern," 2023. 8. 8., <https://www.bmf.gv.at/presse/pressemeldungen/2023/august/brunner-pr%C3%A4sentation-progressionsbericht.html>, 검색일자: 2023. 8. 30.

16) 2023년 8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82만 3,888.4원임

17) 2023년 9월 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98만 5,000원임

18) 2023년 9월 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34만 2,294원임

19) 2023년 8월 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583만 4,854원임

20) 2023년 8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억 2899만원임

21) 2023년 8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조 2,531억 5,300만원임

22) IBFD, "Italy Introduces Windfall Tax on Banks," 2023. 8.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8-14_it_1.html, 검색일자: 2023. 8. 24.

23) 이탈리아 정부, "Comunicato stampa del Consiglio dei Ministri n. 47," 2023. 8. 8., <https://www.governo.it/it/articolo/comunicato-stampa-del-consiglio-dei-ministri-n-47/23385>, 검색일자: 2023. 8. 24.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역년 채택 은행의 경우 2022년 회계연도)에 보고된 자산 가치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황재세는 2024년에 납부해야 하며 소득세 또는 지방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납세자는 현재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째 되는 날(역년 채택 은행의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납부한 세금은 소득세 또는 생산활동에 대한 지방세(Imposta Regionale Sulle Attività Produttiva, IRAP) 목적으로 공제할 수 없음
- 관련한 평가, 벌금, 징수 및 소송 수행에 관하여는 이탈리아 소득세 조항이 적용됨
- 해당 세금으로 증가된 수입은 첫 주택 구매에 대한 모기지 자금 조달과 가계 및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계획임

<자료수집 및 정리: 이나현 변호사>



그리스

[그리스 국채에 대한 이자 면제 확대]

■ 그리스는 2023년 8월 1일, 그리스 국채에서 파생

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정하였음^{24), 25)}

- 그리스 소득세법(법률 4172/2013, A167) 제47조 제5항의 개정을 통해 그리스 국채 및 이자부 약속 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가 법인에도 적용되게 되었음
 - 현재 국채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국채 이자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음
- 또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그리스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법인이나 비거주 법인이 수취한 그리스 국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의 면제에 관한 내용도 규정되었음

<자료수집 및 정리: 이나현 변호사>



네덜란드

[소규모 기업을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 이행 법안 제정]

■ 네덜란드는 2023년 8월 14일, 소규모 기업을 위한 특별 제도에 관한 유럽연합 부가가치세 지침(Council Directive 2006/112/EU)을 개정하는 2020년 2월 18일의 유럽연합 지침(Council Directive 2020/285/EU)을 이행하는 법안을 제정함²⁶⁾

24) IBFD, "Greece Extends Interest Exemption for Greek Government Bonds, Treasury Bills to Companies," 2023. 8.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8-01_gr_2.html, 검색일자: 2023. 8. 24.

25) 그리스 재무부, "ΣΧΕΔΙΟ ΝΟΜΟΥ," 2023. 7. 29., http://www.opengov.gr/minfin/wp-content/uploads/downloads/2023/07/sxedio_nomou.pdf, 검색일자: 2023. 8. 24.

26) IBFD, "Netherlands Enacts Bill Implementing Directive on VAT Scheme for Small Businesses," 2023. 8.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8-14_nl_1.html, 검색일자: 2023. 8. 24.

- 해당 법안은 소규모 기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중요한 수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지의무에 관한 조항은 2024년 10월 1일부터, 기타 일반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네덜란드에 설립되었거나 고정사업장이 있는 소규모 기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 매출액 기준을 기존 연간 2만유로²⁷⁾에서 2만 5,000유로²⁸⁾로 완화하였으며, 면제 신청은 2024년 12월 3일까지 제출되어야 함

- 다른 EU 회원국에 설립된 소규모 기업도 유럽 연합 내 연간 매출액이 10만유로²⁹⁾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면제 적용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일부 면제 적용 불가 사항이 존재함
 - 판매자나 구매자에 의해 또는 판매자나 고객의 계정을 위해 구매하고 다른 회원국으로 발송하거나 운송하는 새로운 운송 수단 및 과세대상자가 회사에서 사용하던 부동산 및 관련 권리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네덜란드에 설립된 소규모 기업은 EU 내 연간 매출액이 1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른 EU 회원국에 대한 면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3년의 최소 면제 적용기간을 폐지함
- 2024년 기준 연간 매출액이 2만유로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2025년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거나 기존 면제 혜택을 종료하려는 기업은 늦어도 2024년 12월 3일까지 세무당국에 통보하여야 함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세금부담 없는 전환에 관한 법령 업데이트]

■ 네덜란드는 2023년 7월 17~18일부터 적용되는 공개 유한회사(Naamloze Vennootschap, NV) 또는 비공개 유한회사(Besloten Vennootschap, BV)의 소득세 부과 단체(income tax entity)로의 '세금 부담 없는 전환(geruisloze terugkeer)'에 관한 업데이트된 법령을 발표함³⁰⁾

- 업데이트된 법령의 주요 변경사항은 손실 계수의 변경이며, 이전 계속 주주가 사용할 수 있는 손실 계수를 기존 15/42에서 19/44로 변경함
- 네덜란드 법인세법(Wet op de vennootschapsbelasting 1969, CITA) 제14c조에 따라 BV 또는 NV의 해산시 청산소득에 대해서 과세연이 허용되는데, 세금부담 없는 전환으로 인하여 자연인만을 주주로 하는 단체에 대해 적용되며, 전환 시 반영되어야 하는 손실계수를 세율 변화에 따라 조정된 것임
 - NV 또는 BV의 세금부담 없는 전환이란 표준 조건에 따라 주주가 계속 비법인 형태로

27) 2023년 8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888만원임

28) 2023년 8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11만원임

29) 2023년 8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366만원임

30) IBFD, "Netherlands Updates Decree on Reconversion Without Tax Consequences," 2023. 7.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7-18_nl_1.html, 검색일자: 2023. 8. 24.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뜻함

- 손실 계수는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회사가 소득세 부과 단계로 전환될 때 법인세법상 회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소득세법상 손실의 일부로 결정할 때 곱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함
- 손실 계수의 변경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기존 15%에서 19%로 인상되고, 개인소득세 공제율이 40%에서 36.92%로 인하된 것을 반영한 것임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된 영구 건물과 무형자산의 경우 납세자는 국세청에 통지를 제출하여 납세자의 장부를 기준으로 실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선택할 수 있음

- 기존 규정에 따르면 영구 건물은 일괄적으로 20년에 걸쳐 감가상각함

-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유형자산의 수리비는 해당 자산의 회계상 순장부가액으로 자본화된 후 감가상각비로 처리됨
- 최대 1년 동안 사육 후 번식하는 가축은 최대 4년 동안 감가상각할 수 있음

<자료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인도네시아

[감가상각에 대한 추가 지침 발표]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유형자산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 상각에 관한 추가 지침을 발표함³¹⁾
- 해당 지침에는 건물,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 무형자산, 가축 등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됨
 - 납세자는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영구 건물(일시적인 건물이 아닌 건물) 및 무형자산에 대해 자신의 장부 기준 실제 내용연수 또는 20년 중 하나의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음
 - 2022년 과세연도 이전에 소유 및 사용되었으며 20년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중국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소액대출 관련 조세 완화 정책 발표]

- 중국 재무부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문제 완화 및 지원을 위해 소액대출 이자소득 부가가치세(VAT) 및 인지세 면제 정책을 공고함³²⁾
- 2023년 8월 3일 중국 재무부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및 고액 자금조달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소기업, 영세기업의 소액 대출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부가가치세(VAT) 면제 및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간 대출 계약에 따른

31) IBFD, "Indonesia Issues Further Guidance on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2023. 8.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8-09_id_1.html, 검색일자: 2023. 8. 17.

32) Ministry of Finan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关于支持小微企业融资有关税收政策的公告," 2023. 8. 13., http://szs.mof.gov.cn/zhengcefabu/202308/t20230802_3899765.html, 검색일자: 2023. 8. 16.

인지세 면제를 발표함³³⁾

- 조세정책 적용 대상인 소기업 및 영세기업은 대출 실행 시 총자산 및 종업원 지표 등 '중소기업 분류 표준 조례'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 대상이 되는 소액대출이란 단일 대출액 원금을 포함하여 100만원³⁴⁾ 미만인 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대출을 뜻하며 해당 정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임
- 금융기관은 관련 면세 증명자료 보관 의무가 있으며 면세 조건 충족 소액대출 이자소득은 별도 계산 및 세무신고서 제출 필요

<자료수집 및 정리: 정효림 세무사>



호주

[조세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혁안 발표]

- 호주 재무부는 2023년 8월 10일 조세 건전성 (tax integrity)을 강화하고 다국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안을 발표함³⁵⁾
 - 본 개혁안은 여성부, 재무부, 공공서비스부, 법무부, 금융서비스부 장관 공동 언론 보도를 통해 이루어짐

■ 조세회피를 주도한 발기인에 대한 처벌법을 강화하여 조세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함

- 조세 포탈 계획 주도에 대한 벌금을 최대 7억 8,000만호주달러³⁶⁾까지 10배 인상함
- 호주 국세청이 조세회피 발기인 처벌에 대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행위 발생 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함

■ 호주 국세청 및 공인세무사 협회(Tax Practitioners Board, TPB)와 같은 규제 기관의 권한을 강화함

- 세무대리인의 조사를 제한하던 조세비밀보호법(Tax Secrecy Laws)을 완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
- 징계 및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전문협회에 윤리적 위법 행위를 회부할 수 있게 함

■ 세부적인 규제 조치와 관련한 재무부 검토를 포함한 협의를 진행한 후, 관련 법안을 2023년에 도입하고자 함

- 다양한 발기인의 활동 유형을 포괄하는 발기인 처벌법, 조세 시스템의 계획적 남용에 의한 신종 사기 및 위협요소 등과 관련한 협의가 포함됨
- 또한 세무조사 시 비밀유지특권과 국세청의 필수정보 수집 권한, 국세청 및 공인세무사

33) IBFD, "China Extends Tax Reliefs for Loans to Small Businesses to 2027," 2023. 8.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8-03_cn_2.html, 검색일자: 2023. 8. 16.

34) 2023년 8월 16일 환율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8,294만원임

35) IBFD, "Australia - Treasury Announces Reforms to Strengthen Tax Integrity, Counter Multinational Tax Avoidance," 2023. 8.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08-10_au_1, 검색일자: 2023. 8. 22.

36) 2023년 9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48억 8,760만원임

협회에 적용되는 비밀유지 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2023년 R&D 세제혜택 청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호주 국세청은 2023년 8월 16일, 2023년 소득세 R&D 세제혜택 청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³⁷⁾

- R&D 관련 사업자는 세제혜택 청구 전 R&D 활동을 등록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R&D 세제혜택 요율(tax incentive schedule)을 기재해야 함
 - 연매출 2,000만호주달러³⁸⁾ 이상인 R&D 공제 대상 기업의 소득공제율은 R&D 집중도(R&D intensity) 2% 이하 지출은 8.5%, 2%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16.5%임
 - 연매출 2,000만호주달러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환급은 해당 납세자의 법인세 세율에 18.5%를 더한 요율로 이루어짐
- 국외에서 수행된 R&D 활동은 국외 공제와 관련한 Overseas Findings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함
- 또한 일반적인 회피 방지 규칙에 따라 공제가 취소될 수 있음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 규정 확정안 발표]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3년 8월 17일,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전환기 적용을 위한 이행 규정 확정안을 발표함³⁹⁾

- CBAM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전환기로 정한 바 있음
- 전환기에는 각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확정안에는 세부보고 방법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산정방식 등이 담김
 - 의무보고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여섯 가지 품목임
-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톤당 10~50유로의 페널티가 부과됨
 - 다만, EU는 전환기 초반에 해당하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말까지 EU의 산정방식이 아닌 제3국 규정에 따라 계산된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도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함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37) Bloomberg Tax, "Australia Tax Agency Clarifies R&D Tax Incentive Claims for 2023," 2023. 8. 21.,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australia-tax-agency-clarifies-r-d-tax-incentive-claims-for-2023>, 검색일자: 2023. 8. 22.

38) 2023년 9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0억 4,440만원임

39)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adopts detailed reporting rules for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transitional phase," 2023. 8. 1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4186, 검색일자: 2023. 8. 23.



OECD

[필라1·2 경과보고서 공개]

■ 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2023년 7월 11일, BEPS 프로젝트 필라1 및 필라2와 관련된 작업을 발표하고, 두 개의 필라 이행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실행 계획을 준비할 예정임⁴⁰⁾

- 필라 1과 관련하여 작업을 마무리하고, Amount B에 대한 초안을 공개함
 - Amount A와 관련하여 다자간 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MLC)에 필요한 문서를 공개하였으며, 2023년 연말까지 서명이 예정되어 있음
 - OECD는 2023년 7월 17일, Amount B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적용 대상 및 가격 체계와 관련하여 2023년 9월 21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함⁴¹⁾
- 필라 2와 관련하여 원천지국과세규칙(Subject To Tax Rule, STTR)에 대한 모델규정(Model Rule) 및 주석서(Commentary)를 발표함⁴²⁾
 -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은 2023년 10월부

터 서명이 예정된 STTR 이행을 위한 다자간 기구(Multilateral Instrument, MLI)를 통한 이행 또는 STTR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 조약의 수정 중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음

- 이후 발표될 설명문서(Explanatory Statement)는 MLI에서 취해진 접근법에 대한 협약자들의 합의된 이해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필라2 행정지침 및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추가 발표]

■ OECD 포괄적 이행체계는 2023년 7월 17일, BEPS 프로젝트 필라 2와 관련하여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과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를 추가 발표함

- 필라 2 행정지침은 2023년 2월에 발표된 행정지침에 이어 필라 2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상세한 적용을 위하여 추가로 발표된 지침임⁴³⁾
 - GloBE 규칙을 위한 일반 통화 환산 규칙, 세액공제 지침, 실질기반제외소득(Substance-

40) OECD, "Outcome Statement on the Two-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11 July 2023," <https://www.oecd.org/tax/beps/outcome-statement-on-the-two-pillar-solution-to-address-the-tax-challenges-arising-from-the-digitalisation-of-the-economy-july-2023.html>, 검색일자: 2023. 7. 31.

41) OECD, "Tax challenges of digitalisation: OECD invites public input on Amount B under Pillar One relating to the simplification of transfer pricing rules," <https://www.oecd.org/tax/beps/oecd-invites-public-input-on-amount-b-under-pillar-one-relating-to-the-simplification-of-transfer-pricing-rules.html>, 검색일자: 2023. 7. 31.

42)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Subject to Tax Rule(Pillar Two)," <https://www.oecd.org/tax/beps/tax-challenges-arising-from-the-digitalisation-of-the-economy-subject-to-tax-rule-pillar-two-9afd6856-en.html>, 검색일자: 2023. 7. 31.

43)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Administrative Guidance on the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Pillar Two)," <https://www.oecd.org/tax/beps/administrative-guidance-global-anti-base-erosion-rules-pillar-two-july-2023.pdf>, 검색일자: 2023. 7. 31.

based Income Exclusion), 적격소재국 추가세, 적격소재국 추가세 세이프하버 및 경과 소득산업보완규칙(UTPR) 세이프하버의 내용을 담음

- 수정된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기존 발표되었던 신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후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발표됨⁴⁴⁾
 - 신고서는 부록으로 데이터 항목과 이에 대한 설명 지침을 제공함
 - 데이터 항목은 ‘다국적기업 그룹 정보, 관할 국별 세이프하버 및 제외, GloBE 산정’으로 구성됨

<자료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44)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GloBE Information Return(Pillar Two),” <https://www.oecd.org/tax/beps/globe-information-return-pillar-two.pdf>, 검색일자: 2023. 7. 31.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추가 인상(2023. 7. 27.)¹⁾

- ECB 정책위원회는 적기에 중기 물가상승률 목표(2.0%)를 달성하기 위해 8월 2일부터 기준금리, 한계대출금리, 수신금리를 각각 4.25%, 4.5%, 3.75%로 인상
 - 2022년 7월부터 9번째 연속 금리인상이며 금리 인상폭은 0.25%p로 지난달과 동일
 - 유로지역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2022년 10월 10.6%로 정점을 찍은 이후 5월에 6.1%, 6월에 5.5%로 하락세이나, 에너지 및 식품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은 지난 5월과 동일한 5.5%로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

- 한편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9월 20일부터 최소 지급준비금(remuneration of minimum reserves)²⁾에 대한 이자율을 0%로 결정

■ EU 이사회,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 시행(2023. 7. 25.)³⁾

- (배경) 현재 에너지효율지침은 'Fit for 55'* 입법패키지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2030년 에너지 소비량 전망치(2007년 추산) 대비 32.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
- (주요 내용) EU 27개국이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2030년 에너지 사용량 전망치(2020년 추산) 대비 11.7% 감축하도록 에너지 효율지침을 개정

<표 1> EU 정책금리 인상 경로

(단위: %, %p)

구분	2022					2023				
	6월	7월	9월	10월	12월	2월	3월	5월	6월	7월
기준금리	0.00	0.50	1.25	2.00	2.50	3.00	3.50	3.75	4.00	4.25
한계대출금리	0.25	0.75	1.50	2.25	2.75	3.25	3.75	4.00	4.25	4.50
수신금리	-0.50	0.00	0.75	1.50	2.00	2.50	3.00	3.25	3.50	3.75
변동 폭	-	+0.50	+0.75	+0.75	+0.50	+0.50	+0.50	+0.25	+0.25	+0.25

출처: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3. 7. 27.;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3/html/ecb.mp230727~da80cfcf24.en.html>, 검색일자: 2023. 8. 4.

2) 최소 지급준비금은 신용 기관이 국가 중앙은행에 보유해야 하는 준비금 잔액으로 통상 특정 부채(고객예탁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해야 함

3) EU 이사회, "Council adopts energy efficiency directive," 2023. 7. 25.;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07/25/council-adopts-energy-efficiency-directive/>, 검색일자: 2023. 8. 16.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2007년에 추산한 2030년 에너지 소비량 전망치 기준으로는 총 에너지 소비량 및 1차 에너지 소비량⁴⁾ 감축 목표를 각각 38%, 40.6%로 상향
- 2024~2030년 기간 연간 에너지 절약 목표는 연평균 1.49%에서 점진적으로 1.9%에 도달할 계획이며, 공공 부문(대중교통과 군사 분야는 제외)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 연간 1.9%를 의무 감축하도록 함

<표 2> 브라질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실질 GDP(연평균)	2.9	2.1	1.2
실업률(Q4 평균) ¹⁾	9.3	9.5	9.4
물가상승률(Inflation, 연평균)	9.3	5.1	4.6
중앙정부 기초수지(GDP 대비 %) ²⁾	0.5	-1.3	-0.8
일반정부 총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GDP 대비 %)	72.9	77.1	79.3
경상수지(GDP 대비 %)	-3.0	-2.3	-2.5

주: 2023, 2024년은 추정치

1) 2022년 실업률은 3월, 6월, 9월, 12월의 평균치

2) 연방정부, 중앙은행, 사회보장제도(INSS) 포함

출처: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Brazil," 2023. 7. 31.



IMF

■ IMF 집행위원회, 브라질과 연례협의 결과 발표 (2023. 7. 31.)⁵⁾

※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 간 점검 활동

-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2.9%에서 2023년 2.1%로 감소하고, 중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⁶⁾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초에는 농업 생산량이 성장을 뒷받침하였으나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은 부진하였으며, 민간 소비 둔화와 투자 감소로 추가적인 성장 둔화 전망
 -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2023년 말 5.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근원물가 상승률

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물가상승 기대치 역시 목표를 상회

- 급격한 국제 경기 둔화 및 긴축금융, 원자재 가격의 큰 변동성, 재정의 불확실성과 물가상승의 지속 등이 하방위험으로 존재
- IMF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녹색 경제 구축을 위한 구조적 개혁을 실시하는 동시에 재정건전화 및 물가안정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장려

■ IMF 블로그, '화석연료 보조금 7조달러로 급증' 게시(2023. 8. 24.)⁷⁾

- IMF 연구진은 2022년 화석연료 보조금이 7조달러로 급증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170개국) GDP의 7.1%에 해당(의료 부문

4) 1차 에너지 소비(primary consumption)는 에너지 생산·공급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포함한 소비량으로 최종 에너지소비와 전환손실을 포함

5) IMF 집행위원회,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Brazil," 2023. 7. 31.,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7/31/pr23280-brazil-imf-exec-board-concludes-2023-art-iv-consult>, 검색일자: 2023. 8. 22.

6) 2024년 1.2%, 2025년 1.7%, 2026년 1.9%

7) IMF Blog, "Fossil Fuel Subsidies Surged to Record \$7 Trillion," 2023. 8. 24.,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08/24/fossil-fuel-subsidies-surged-to-record-7-trillion>, 검색일자: 2023. 8. 28.

10.9%, 교육 부문 4.3%)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와 기업을 지원함에 따라 명시적 보조금(화석연료 공급 비용에 대한 과소 청구)이 증가

- 화석연료 가격, 특히 석탄 및 디젤에는 환경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조금의 대부분은 암묵적 보조금(implicit subsidies, 환경비용 과소 청구 및 소비세 감면) 형태이며, 개발도상국의 화석연료 소비가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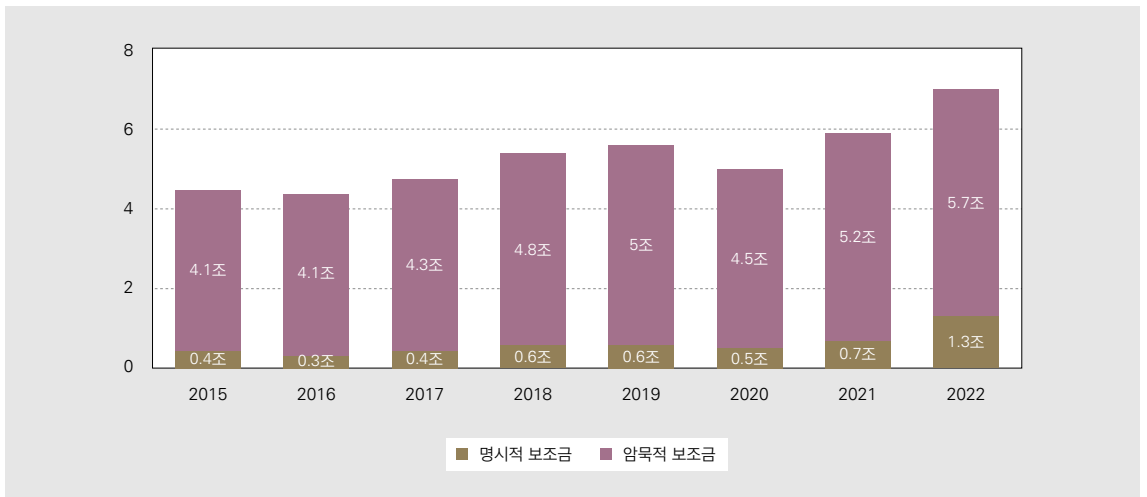
- 명시적 보조금의 규모는 2021~2022년 사이 1조 3,000억달러로 약 2배 증가하면서 화석

연료 보조금은 지난 2년 동안 2조달러 증가 ([그림 1] 참조)

- 연료별 보조금은 석유 47%, 석탄 30%, 천연가스 18%, 전기 5%를 차지하고, 국가별 보조금 규모는 중국(2,235억달러), 미국(757억달러), 러시아(421억달러), 한국(162억달러) 순임⁸⁾
-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환경과 정부의 재정여력 증가를 위해 명시적 및 암묵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할 시기
- 명시적 및 암묵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면 매년 정부 수입은 4조 4,000억달러 증가하고, 지구온난화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상화할 것으로 분석

[그림 1] 화석연료 보조금 추이

(단위: 달러)



주: 2019~2022는 연료 사용량에 따른 추정치

출처: IMF, "IMF Fossil Fuel Subsidies Data: 2023 Update," 2023.

8) Simon Black 외, "IMF Fossil Fuel Subsidies Data: 2023 Update," IMF working paper, 2023, p. 17, p. 27.



OECD

■ OECD, 2023년 1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 (2023. 8. 10.)⁹⁾

- OECD 회원국의 2023년 1분기 1인당 실질 가계 소득 증가율은 전기 대비 증가하여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인 0.3%를 상회한 0.9%로 나타남
-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은 3분기 연속 증가했으며, 팬데믹 관련 지원 프로그램으로 소득이 증가한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증가율을 보임
- 2023년 1분기 OECD 회원국의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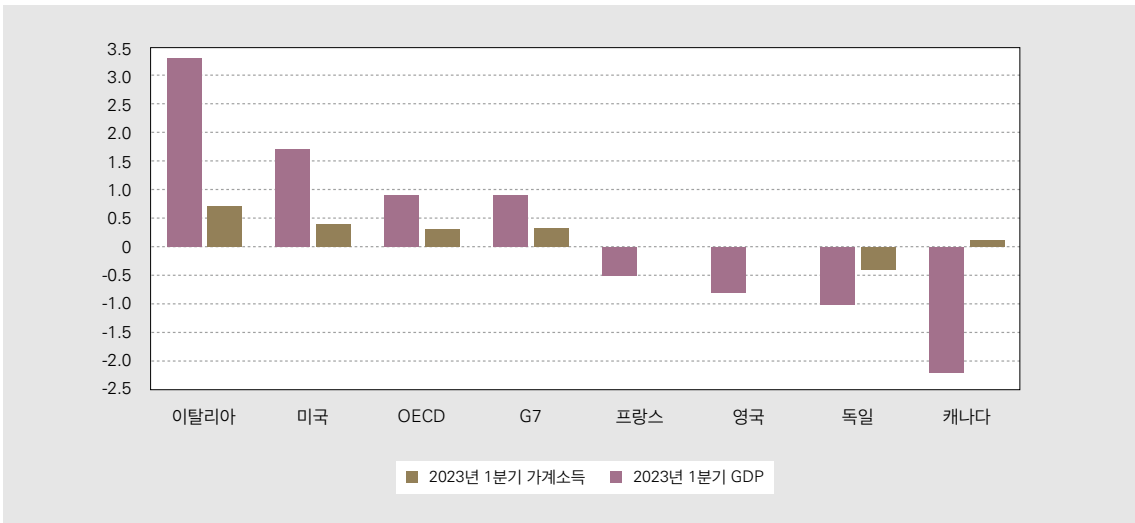
국가간 다른 양상을 보여, 데이터가 제공되는 21개국 중 11개국은 증가한 반면 10개국은 감소

- G7 회원국 중 이탈리아와 미국의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은 증가하였지만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은 감소

- 캐나다는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이 가장 크게 감소(-2.2%)했는데, 이는 이전 분기보다 가계에 대한 정부 이전이 더 낮아졌기 때문
- 독일의 1인당 실질 GDP와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은 모두 2분기 연속 하락함
- 이탈리아는 2023년 1분기 1인당 실질 가계소득(3.3%)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둔화되어 실질 기준

[그림 2] G7 국가의 2023년 1분기 실질 가계소득 및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기 대비 %)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일본은 2022년 분기별 추정치가 제공되지 않아 G7 국가에서 제외됨

3. 2023년 1분기 프랑스와 영국의 GDP는 0.0%의 성장률을 기록

출처: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Fourth quarter 2023," p. 1 Figure 1.

9)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First quarter 2023," <https://www.oecd.org/newsroom/growth-and-economic-well-being-first-quarter-2023-oecd.html>, 검색일자: 2023. 8. 14.

으로는 가계소득이 개선되었기 때문임

- 미국의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의 증가(1.7%)는 주로 임금 및 급여 증가 및 2020년 세금 납부 이연 등으로 인해 2022년에 실질 가계소득이 증가한 후 2023년 1분기에 납부할 세금이 감소한 데 기인¹⁰⁾
- 기타 OECD 회원국 중 폴란드는 1인당 실질 GDP(3.9%)와 1인당 실질 가계소득(3.5%)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덴마크(4.3%), 벨기에(4.1%), 네덜란드(2.6%)의 1인당 실질 가계소득도 크게 증가함



미국

[예산·결산 등]

- OMB, 대통령 예산안 수정 전망(Mid-Session Review, MSR) 발표(2023. 7. 28.)¹¹⁾
 - (재정수지) 2024회계연도 재정적자의 7월 수정 전망 규모는 1조 8,770억달러로 3월 본 전망(1조 8,460억달러) 대비 1.7% 증가
 - (수입) 2024회계연도 총수입의 7월 수정 전망 규모는 5조 280억달러로 3월 본 전망(5조

<표 3> 미국 예산안 전망(3월 대통령 예산안 VS 7월 수정 MSR)

(단위: 십억달러, GDP 대비 %)

재정 전망			실적			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	2032	2033
금액	수입	3월	3,421	4,047	4,897	4,802	5,036	5,419	5,773	6,080	...	7,601	7,991
		7월				4,587	5,028	5,414	5,762	6,039	...	7,672	8,043
	지출	3월	6,550	6,822	6,273	6,372	6,883	7,091	7,294	7,589	...	9,472	10,026
		7월				6,130	6,905	7,111	7,323	7,629	...	9,456	10,013
	재정 적자	3월	3,129	2,775	1,376	1,569	1,846	1,671	1,521	1,509	...	1,871	2,035
		7월				1,543	1,877	1,697	1,561	1,590	...	1,784	1,970
	연방 채무 ¹⁾	3월	21,017	22,284	24,252	25,910	27,783	29,592	31,233	32,851	...	41,553	43,619
		7월				25,344	27,008	28,825	30,508	32,203	...	40,924	42,938
GDP 대비 비중	수입	3월	16.3	18.1	19.6	18.2	18.5	19.1	19.5	19.7	...	20.0	20.1
		7월				17.3	18.3	18.9	19.3	19.4	...	20.0	20.1
	지출	3월	31.2	30.5	25.1	24.2	25.3	24.9	24.6	24.6	...	24.9	25.2
		7월				23.1	25.2	24.8	24.5	24.5	...	24.7	25.0
	재정 적자	3월	14.9	12.4	5.5	6.0	6.8	5.9	5.1	4.9	...	4.9	5.1
		7월				5.8	6.8	5.9	5.2	5.1	...	4.7	4.9
	연방 채무 ¹⁾	3월	100.1	99.6	96.9	98.4	102.0	104.1	105.2	106.3	...	109.1	109.8
		7월				95.5	98.4	100.6	102.0	103.4	...	106.7	107.3

주: 1) 정부 내부거래 제외

출처: OMB, Mid-Session Review, 2023. 7. 28., p. 17 Table S-1.

10) 세금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납부하지만, 국민계정에는 발생 기간(분기)에 납부할 세금이 표시됨

11) OMB, "Mid-Session Review," 2023. 7. 28.,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3/07/msr_fy2024.pdf, 검색일자: 2023. 8. 4.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360억달러) 대비 0.2% 감소
- (지출) 2024회계연도 총지출의 7월 수정 전망 규모는 6조 9,050억달러로 3월 본 전망(6조 8,830억달러) 대비 0.3% 증가
- (채무) 2024회계연도 연방채무(내부거래 제외)의 7월 수정 전망 규모는 27조 80억달러로 3월 본 전망(27조 7,830억달러) 대비 2.8% 감소
- (경제전망) 2023년 4분기 실질성장률은 전년 동기(0.9%) 대비 0.5%p 하락한 0.4%로 전망되며, 2024년에는 1.8% 전망
 - (물가)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도 4분기 대비 당해 연도 4분기)은 3.3%, 2024년에는 2.5%로 하락하며, 장기적으로는 2.3% 전망
 - (실업률) 2023년 실업률은 전년(3.6%) 대비 소폭 증가한 3.8%로 전망되며, 이후 장기적

으로는 3.8%를 유지할 전망

- (금리) 2023년 5.0%에서 시작한 금리(단기 채권¹²⁾ 기준)는 이후 2028년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3.4% 전망

[기타]

■ 의회예산처(CBO), 2023-2025년 경제 수정 전망 (An Update to the Economic Outlook: 2023 to 2025) 보고서¹³⁾ 발표(2023. 7. 26.)¹⁴⁾

- (경제성장률) 2023년 실질성장률은 0.9%(하반기 0.4%)로 전망되며, 이후 통화정책 완화로 인해 2024년 1.5%, 2025년 2.4%로 증가할 전망
 - (개인소비) 금리 인상과 엄격한 신용시장 기준, 실업률 증가, 팬데믹 기간 동안 지출 유보되었던 자금(저축 금액)의 감소로 2023년 하반기 개인소비지출은 약해지나, 2024년 말~2025년에 금리와 실업률의 하락으로 증가 전망
 - (민간투자) 장비(equipment), 비주택 구조물(structures), 지적재산권 투자 상품 수요 감소, 채무 증가, 신용시장 경색 등으로 인해 2023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2% 수준으로 증가
 - (정부지출) 2023년 4분기 정부지출(고속도로, 군대 장비, 공공교육 서비스 등)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수출·입) GDP 대비 무역적자는 2024년 중

〈표 4〉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십억달러, %)

구분	실적	전망					
	2022	2023	2024	2025	2026	...	2033
실질성장률 ¹⁾	0.9	0.4	1.8	2.4	2.0	...	2.2
도시소비자 물가지수 (CPI-U) ¹⁾	7.1	3.3	2.5	2.3	2.3	...	2.3
실업률 ²⁾	3.6	3.8	4.4	4.2	4.1	...	3.8

주: 1) 전년도 4분기 대비 당해 연도 4분기 증가율, Chained 2012 Dollars

2) 연평균, 계절 조정

출처: OMB, "Mid-Session Review," 2023. 7. 28., p. 6 Table 2.

12) 91-Day Treasury Bills

13) CBO의 예산기준선 전망 보고서는 1974년에 제정된 의회예산법(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 / P.L. 93-344)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의 경제 전망은 2023. 6. 22.까지의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

14) CBO, "An Update to the Economic Outlook: 2023 to 2025," 2023. 7. 26., <https://www.cbo.gov/publication/59258>, 검색일자: 2023. 8. 9.

<표 5> 미국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분기별 전망 (연평균)					실적	연도별 전망 (전년도 4분기 대비 4분기)			
	2023			2024			2022	2023	2024	2025
	Q2	Q3	Q4	Q1	Q2					
GDP(실질)	1.4	0.6	0.3	0.9	1.4	0.9	0.9	1.5	2.4	
개인소비 ¹⁾	1.1	0.6	-0.1	0.4	0.7	1.7	1.3	1.1	2.0	
민간투자	-	-	-	-	-	-	-	-	-	
기업고정 투자 ²⁾	4.2	0.1	-0.8	0.2	1.7	4.5	1.2	1.9	3.5	
주택투자	1.1	2.3	1.0	-0.9	1.1	-18.8	-0.3	2.1	6.5	
정부지출	0.2	0.6	1.0	0.7	1.2	0.9	1.7	0.8	0.6	
연방	-1.2	-0.6	0.2	-0.2	1.3	0.1	1.4	0.4	0.3	
주 지방	1.1	1.3	1.5	1.3	1.1	1.3	1.9	1.0	0.7	
무역(순수출)	-	-	-	-	-	-	-	-	-	
수출	-0.3	0.5	0.5	2.0	2.1	4.6	1.4	2.1	2.8	
수입	3.4	-0.9	-2.5	-2.4	-0.3	1.5	0.9	0.1	2.5	

주: 1) PCE 값으로 적용

2) 비주택 투자(장비, 비주택 구조물, 지적재산권 상품) 포함

출처: CBO, "An Update to the Economic Outlook: 2023 to 2025," 2023. 7. 26., p. 3 Table 2.

반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축소 양상 전망

- (물가) 2023년 물가상승률은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수요의 공급초과 현상 완화 등의 이유로 둔화 전망
- (노동시장) 2023년 하반기 노동시장은 완화(slacken)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 2024년 말까지 고용을 둔화, 실업률 상승,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 임금 하락 등 악화 전망
- (이자율) 2023년 중반에 정책금리 추가 인상 전망 → 2024년 상반기에 하락 전망

<표 6>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십억달러, %)

재정	분기별 전망 ¹⁾			실적	연도별 전망 ²⁾			
	2023				2022	2023	2024	2025
	Q2	Q3	Q4					
실질성장률 ³⁾	1.4	0.6	0.3	0.9	0.9	1.5	2.4	
물가	CPI-U ¹⁾	2.8	3.2	3.3	7.1	3.3	2.7	2.2
	PCE	3.0	3.0	3.1	5.7	3.3	2.6	2.2
실업률 ⁴⁾	3.6	3.8	4.1	3.6	4.1	4.7	4.5	

주: 1) 연평균

2) 전년도 4분기 대비 당해 연도 4분기

3) 전년 대비 증가율

4) 4분기 평균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3 to 2033," 2023. 2. 15., p. 35 Table 1-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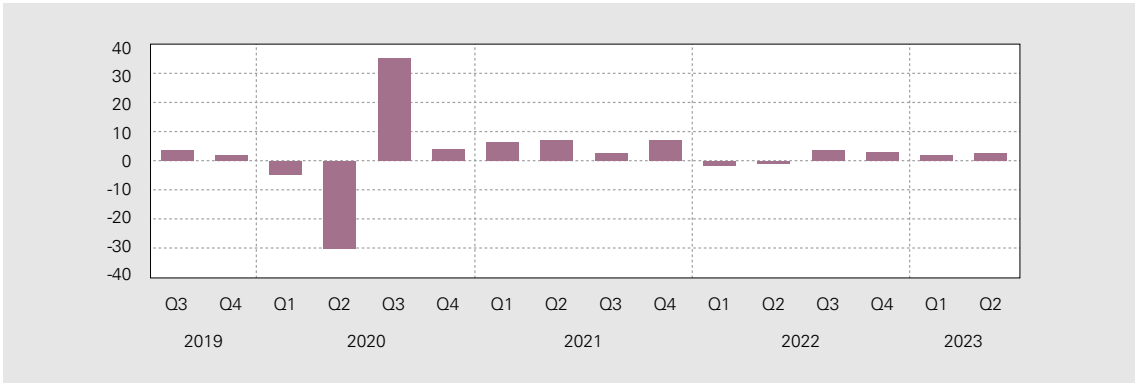
■ 미국 경제분석국(BEA), 2023년 2분기 GDP (속보) 발표(2023. 7. 27.)¹⁵⁾

- 전기 대비 2023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2.4%(연율 기준)를 기록하여 전 분기(2.0%) 대비 상승
 -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2.6%로,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1.8%)에 비해 상승
 - 전기 대비 2023년 2분기 명목 GDP 성장률은 4.7%이며, 명목 GDP 규모는 26조 8,350억 달러(계절조정된 연율 기준)로 집계됨
- 2023년 2분기 실질 GDP의 증가에는 개인소비, 비주택 고정투자, 정부지출, 민간 채고투자의 증가가 반영되었으며, 증가폭은 수출 및 주택 고정투자의 감소로 인해 일부 상쇄됨
 - 부문별 GDP 성장률 기여도는 다음과 같음
 - 개인소비 성장률 기여도: 1.12%p(재화: 0.16%p, 서비스: 0.95%p)

15) 미국 경제분석국(BEA), "Gross Domestic Product, Second Quarter 2023(Advance Estimate)," 2023. 7. 27.,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3-07/gdp2q23_adv.pdf, 검색일자: 2023. 8. 1.

[그림 3] 미국 분기별 실질 성장률(2019년 3분기~2023년 2분기)

(단위: 전기 대비 연율, %)



출처: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Gross Domestic Product, Second Quarter Year 2023(Advance Estimate)," 2023. 7. 27.

<표 7> 미국 2023년 2분기 경제성장률

(단위: 전기 대비 연율, %)

구분	연간 성장률	분기별 성장률					
		2022년				2023년	
		2022년	Q1	Q2	Q3	Q4	Q1
GDP(실질)	2.1	-1.6	-0.6	3.2	2.6	2.0	2.4
개인소비	2.7	1.3	2.0	2.3	1.0	4.2	1.6
재화	-0.5	-0.1	-2.6	-0.4	-0.1	6.0	0.7
서비스	4.5	2.1	4.6	3.7	1.6	3.2	2.1
민간투자	4.0	5.4	-14.1	-9.6	4.5	-11.9	5.7
고정투자	-0.2	4.8	-5.0	-3.5	-3.8	-0.4	4.9
비주택	3.9	7.9	0.1	6.2	4.0	0.6	7.7
주택	-10.6	-3.1	-17.8	-27.1	-25.1	-4.0	-4.2
민간 재고투자	-	-	-	-	-	-	-
순수출	-	-	-	-	-	-	-
수출	7.1	-4.6	13.8	14.6	-3.7	7.8	-10.8
수입	8.1	18.4	2.2	-7.3	-5.5	2.0	-7.8
정부지출	-0.6	-2.3	-1.6	3.7	3.8	5.0	2.6
연방	-2.5	-5.3	-3.4	3.7	5.8	6.0	0.9
주·지방	0.7	-0.4	-0.6	3.7	2.6	4.4	3.6
GDP(명목)	9.2	6.6	8.5	7.7	6.6	6.1	4.7

주: 1. 분기별 성장률은 계절조정된 전기 대비 연율로 나타냄

2. 연간 성장률은 전년 대비 성장률을 의미

출처: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Gross Domestic Product, Second Quarter Year 2023(Advance Estimate)," 2023. 7. 27., Table 1.

- 비주택 고정투자 성장률 기여도: 0.83%p
 - 정부지출 성장률 기여도: 0.45%p(연방정부: 0.06%p, 주·지방정부: 0.39%p)
 - 민간 재고투자 성장률 기여도: 0.14%p
 - 수출 성장률 기여도: -1.28%p
 - 주택 고정투자 성장률 기여도: -0.16%p
- 2023년 1분기 대비 2분기의 GDP 증가율이 상승한 것은 민간 재고투자의 호전(upturn) 및 비주택 고정투자 증가율의 상승(0.6 → 7.7%) 주로 반영됨
- 이러한 GDP의 상승추세는 수출의 감소(7.8 → -10.8%), 개인소비 증가율의 감소(4.2 → 1.6%), 정부지출 증가율의 감소(5.0 → 2.6%)로 인해 상쇄됨

■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 미국 신용등급 AAA → AA+로 강등(2023. 8. 1.)¹⁶⁾

16)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 "Fitch Downgrades the United States' Long-Term Ratings to 'AA+' from 'AAA'; Outlook Stable," 논평 자료, 2023. 8. 1.,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fitch-downgrades-united-states-long-term-ratings-to-aa-from-aaa-outlook-stable-01-08-2023>, 검색일자: 2023. 8. 4.

-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조정하며, 그 이유로 ① 재정 거버넌스의 후퇴, ② 일반정부 재정 악화, ③ 중기적 재정이슈에 대한 미흡한 대처를 지적
- (거버넌스의 후퇴) 지난 20년 동안 채무한도 협상이 막판까지 교착상태에 머무르다가 한도를 넘기기 직전에 결의안이 도출되는 현상이 반복되어 옴
 - 지난 6월 채무한도가 2025년 1월까지 지연되도록 양당 간 합의한 것을 포함하여 20년간 재정 및 부채 이슈에 대한 거버넌스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옴
 - 채무한도 협상이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다가 막판 합의에 이르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재정운영의 신뢰성이 손상됨
- (일반정부 재정 악화) 같은 등급의 다른 국가 대비 미국의 일반정부 채무의 수준은 높은 편이며 향후 3년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정부 적자는 2022년 GDP의 3.7%에서 2023년 6.3%, 2024년 6.6%, 2025년 6.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일반정부 채무는 2025년 GDP의 118.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AAA등급 국가의 중간값인 39.3%와 AA등급 국가의 중간값인 44.7% 보다 두 배 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높은 채무수준과 높은 이자율이 지속됨에 따라 2025년 수입 대비 이자비율(interest-to-revenue ratio)은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되며, 이는 AA등급 국가들의 중간값인 2.8%와 AAA등급 국가들의 중간값인 1%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임

- (중기적 재정문제 대처 미흡) 미국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이 부재하며,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 및 메디케어의 비용증가에 대해 중기적 관점에서의 대처에 미흡
 - AAA등급에 속해있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달리 중기재정계획(Medium-Term Fiscal Framework)이 존재하지 않으며, 예산절차가 복잡하여 지난 십년 동안 경제적 위기와 감세 및 새로운 지출의 증가로 인해 잇따른 채무증가 발생
 - 이자율 증가와 채무 잔고 증가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며, 재정정책 개혁이 없다면 고령화와 보건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커질 것임
 - CBO는 미국의 공적연금이 2033년, 메디케어의 병원보험(Hospital Insurance) 신탁기금은 203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적시에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재정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에 미흡



일본

[예산·결산 등]

- 일본 재무성, 2024회계연도¹⁷⁾ 예산에 대한 개산

17) 일본의 2024회계연도는 2024년 4월~2025년 3월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요구 기본방침¹⁸⁾ 발표(2023. 7. 25.)¹⁹⁾

- 2024회계연도 예산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방침 2023」,²⁰⁾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방침 2022」,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방침 2021」을 바탕으로 경제·재정의 일체적인 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선택의 폭을 좁혀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지속
- 각 부처는 이하 기준에 따라 개산 요구를 시행하며, 제출 기한은 8월 말까지로 함
 - (연금·의료 등 관련 경비) 전년도 당초 예산 금액에 고령화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5,200억엔)을 가산한 범위 내에서 요구
 - (방위력정비계획 대상 경비)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제3항²¹⁾에서 규정한 방위력정비계획 대상 경비는 「방위력정비계획」²²⁾을 바탕으로 소요 비용을 요구

-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지방교부세·교부금 및 지방특례교부금 합계는 「신경제·재정재생계획」²³⁾ 과의 정합성에 유의하여 요구
- (의무적 경비) 전년도 당초 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요구하며, 의무적 경비를 삭감한 경우 동일한 금액을 재량적 경비로 요구 가능, 2024년도 경제총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증감에 대해서는 가감산
- (동일본 대지진 부흥 대책 관련 경비) 기준

18) 일본은 예산 편성 시 전년 8월 말까지 각 성에서 다음 회계연도 정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구를 재정당국에 제출하는데 이를 ‘개산 요구’라고 하며,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의에서 사전에 개산 요구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개산 요구를 하도록 함(출처: 藤井亮二, 「予算編成過程における「概算要求基準」-実効性が弱まるシーリング効果-, 『経済のプリズム』, 第179号, 일본 상의원, 2019. 8, p. 2, https://www.sangin.go.jp/japanese/annai/chousa/keizai_prism/backnumber/h31pdf/201917901s.pdf, 검색일자: 2023. 8. 14.)

19)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た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 2023. 7. 25., <https://www.mof.go.jp/policy/budget/sy230725c.pdf>, 검색일자: 2023. 8. 3.

20)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방침 2023」은 일본이 직면한 역사적·구조적인 변화 및 과제 극복을 위해, 30년 만의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 기업 부문에 대한 투자의욕 증가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사회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3년 6월 16일 각의 결정됨.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 6월 재정동향」, p. 27을 참조,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967>, 검색일자: 2023. 8. 7.

21) 방위력정비계획 대상 경비란 자위대의 관리 및 운영, 이에 관한 사무와 조약에 따른 외국군대 주둔 및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에 기초한 미국 정부 책무 수행에 따른 사무에 관한 것으로 각 연도의 일반회계 예산(방위성 소관에 한정)에 계상되는 경비(방위성이 실시하는 정보 시스템의 정비 및 관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디지털청 설치법 경비를 포함)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함(출처: 일본 법령검색 홈페이지, 「我が国の防衛力の抜本的な強化等のために必要な財源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令和五年法律第六十九号);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505AC0000000069_20230623_0000000000000000, 검색일자: 2023. 8. 17.)

1.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아래에 설치된 오키나와현에 소재한 주둔군(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 군대)의 시설 및 구역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특별행동위원회가 정리하고 협의위원회가 승인한 오키나와현 주둔군의 시설 및 구역 정리, 통합 및 축소, 오키나와현 주둔군 운용방법 조정 방안과 관련된 계획 및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2. 2006년 5월 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협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주둔군 또는 자위대 부대나 기관의 편성, 배치 또는 운용 형태 변경에 관하여 정부가 강구하는 조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

3. ‘자위대법’ 제100조의 5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로 국빈 등 수송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항공기 취득에 필요한 경비

22) 「국가방위전략」(2022년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결정 및 각의결정)에 따라 「방위력정비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방위력 정비, 유지 및 운용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실시. 출처: 일본 방위성, 「防衛力整備計画」, 2022. 12. 16.

23)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방침 2018」에서 책정된 「신경제·재정재생계획」은 ‘경제재생 없이는 재정건전화도 없다’는 방침을 유지하면서 ‘디플레이션 탈출·경제재생’, ‘세출개혁’, ‘세입개혁’의 세 가지 주요 개혁을 가속 및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5년도까지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고 GDP 대비 채무 잔고를 안정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새로운 재정건전화 목표로 설정. 새로운 재정건전화 목표와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해 지방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재원 총액을 전년도 지방재정계획의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실질적으로 동일수준) 확보하는 것을 지방세출 수준 목표로 설정(출처: 일본 내각부, 「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 2018 について」, 2018. 6. 15.,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2018/2018_basicipolicies_ja.pdf, 검색일자: 2023. 8. 16.)

사업의 성과 등을 검토하면서 재해 지역 부
 흥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
 - (기타 경비) 전년도 당초 예산 금액의 90%
 (요구 기초 금액) 범위 내에서 요구
 - (주요 정책 추진 범위) 구조적 임금인상 실현,
 민관(官民)제휴 투자 확대, 저출산 대책·어린
 이 정책 강화를 포함한 ‘새로운 자본주의’의
 빠른 실현과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같은 주요 정책 과

제에 대해 ‘주요 정책 추진 범위’를 설정
 ● 정책·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및 각 경비 간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필요 사항에 대처하도
 록 하며, 고물가 대책 등 중요한 정책은 필요
 에 따라 ‘주요 정책 추진 범위’ 등에 포함하여
 적절한 요구를 실시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시행

■ 일본 재무성,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 발표(2023.

<표 8> 일본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개요

(단위: 억엔)

구분	금액	비고
1. 세입 결산총액	1,537,294	
2. 세출 결산총액	1,323,855	
3. 재정법 제41조 잉여금	213,439	(1-2)
4. 2021년도까지 발생한 잉여금의 사용 잔액	0	
5. 2022년도 신규발생잉여금	213,439	(3-4)
6. 2023년도 이월 세출예산재원 순잉여금의 계산상 공제액	179,528	
7. 이월 세출예산 공제 후 신규발생 잉여금	33,910	(5-6)
(1) 세입 순 증가액	-79,173	
① 세수	27,783	
② 세외수입	13,042	
③ 공채금	-120,000	
(2) 세출 불용액	113,084	
8. 지방교부세교부금 재원의 순잉여금 계산상 공제액	7,616	
(1) 지방교부세교부금 재원(지방교부세 정산액분)	7,568	
(2) 공행정비 사업비 등 재원(항공기연료세 정산액분)	-	
(3) 부흥 비용 및 부흥채 ¹⁾ 상환 비용 재원(부흥분(2011년도 제3차 추경예산 이월분 및 2022년도분)에 대한 잉여금)	47	
(4)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²⁾ 이행 비용 재원(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비용분(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잉여금)	0	
9. 재정법 제6조 ³⁾ 에 의한 순잉여금	26,294	(7-8)

주: 1. 세외수입에는 부흥분(2011년도 제1·2차 추경예산 이월분) 16억엔 포함

2. 단위 미만 절사

1) 부흥채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위한 정책 실시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201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실시하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 연도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됨(출처: 재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go.jp/faq/budget/01aa.htm>, 검색일자: 2023. 8. 14.)

2)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란 산업 활동에 사용하는 에너지 및 원재료에 관련된 이산화탄소를 원칙적으로 대기 중에 배출하지 않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구조를 의미함(출처: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505AC0000000032_20240218_0000000000000000, 검색일자: 2023. 8. 14.)

3) 재정법 제6조: 각 회계연도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잉여금 중 2분의 1을 하회하지 않는 금액은 다른 법률에 의한 것 이외에 이를 잉여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다음 연도까지 공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으로 충당해야 함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4年度第年度決算概要』, 2023. 7. 31., p. 2.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7. 31.)²⁴⁾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은 153조 7,294억엔, 세출결산총액은 132조 3,855억엔으로, 재정법 제41조²⁵⁾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된 잉여금은 21조 3,439억엔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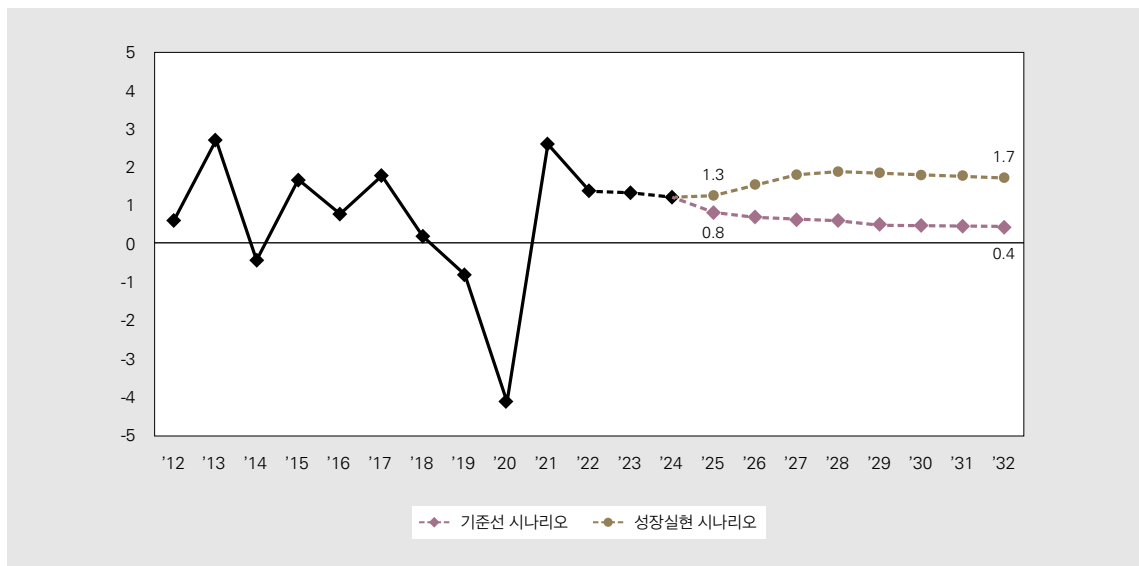
■ 일본 내각부,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발표(2023. 7. 25.)²⁶⁾

※ (목적) 본 전망은 경제재생 및 재정건전화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책 검토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여 경제재정자문회의에 기여하고자 함

- (경제전망)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2024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0.8%, 명목 GDP 성장률은 1.4%로 전망되며,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 2024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1.3%, 명목 GDP 성장률은 2.5%로 전망
 - 중장기적으로 기준선 시나리오의 실질 및 명목 GDP 성장률은 0%대 증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GDP 성장률은 약 2%, 명목 GDP 성장률은 약 3%를 나타낼 전망
- (재정전망)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2025년도 -0.4%, 2026~2027년

[그림 4] 일본의 중장기 실질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5年7月25日経済財政諮問会議提出)」, 2023. 7. 25., p. 4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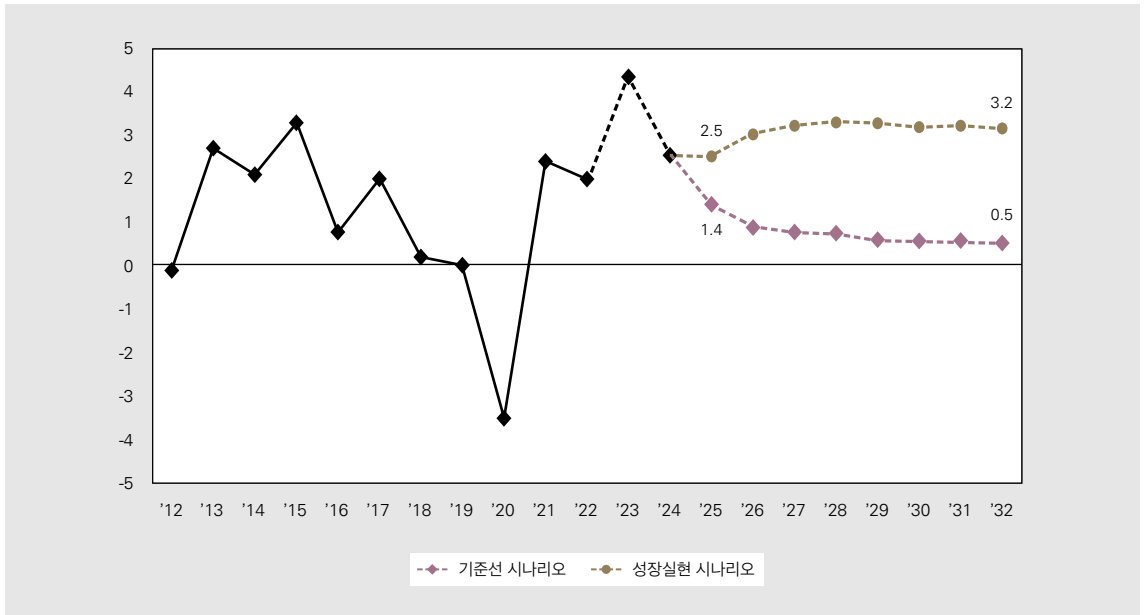
24) 일본 재무성, 「令和4年度第年度決算概要」, 2023. 7. 31.,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account/fy2022/ke050731.pdf, 검색일자: 2023. 8. 8.

25) 재정법 제41조: 매 회계연도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월

26)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5年7月25日経済財政諮問会議提出)」, 2023. 7. 25.,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23/0725/shiry0_01-2.pdf, 검색일자: 2023. 8. 17.

[그림 5] 일본의 중장기 명목 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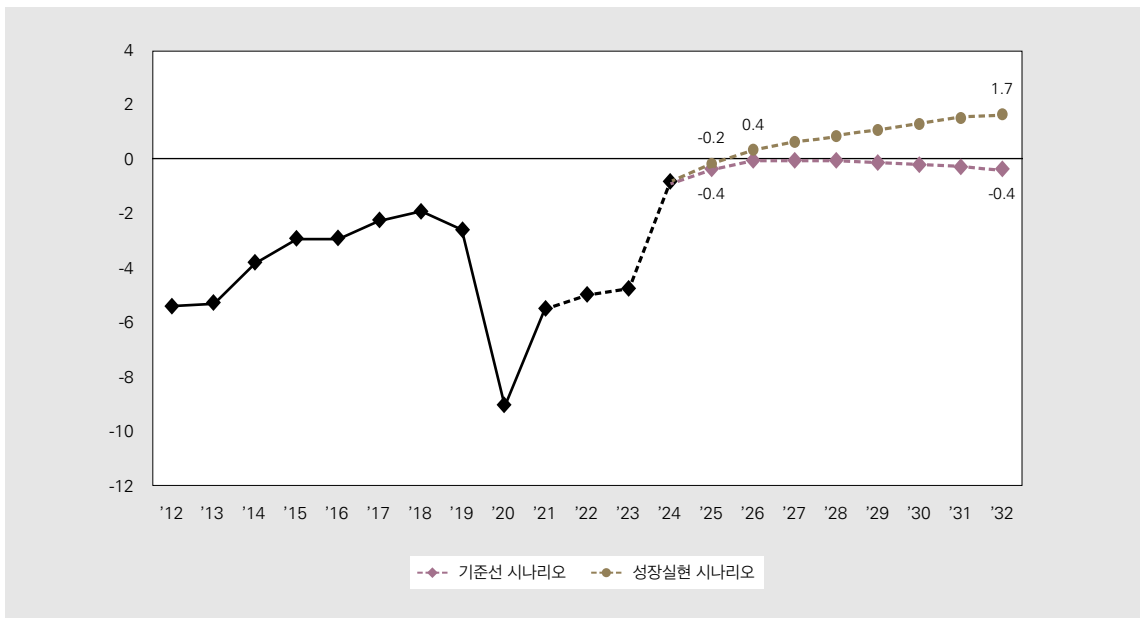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5年7月25日経済財政諮問会議提出)」, 2023. 7. 25., p. 5 그림 4.

[그림 6] 일본의 중장기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전망(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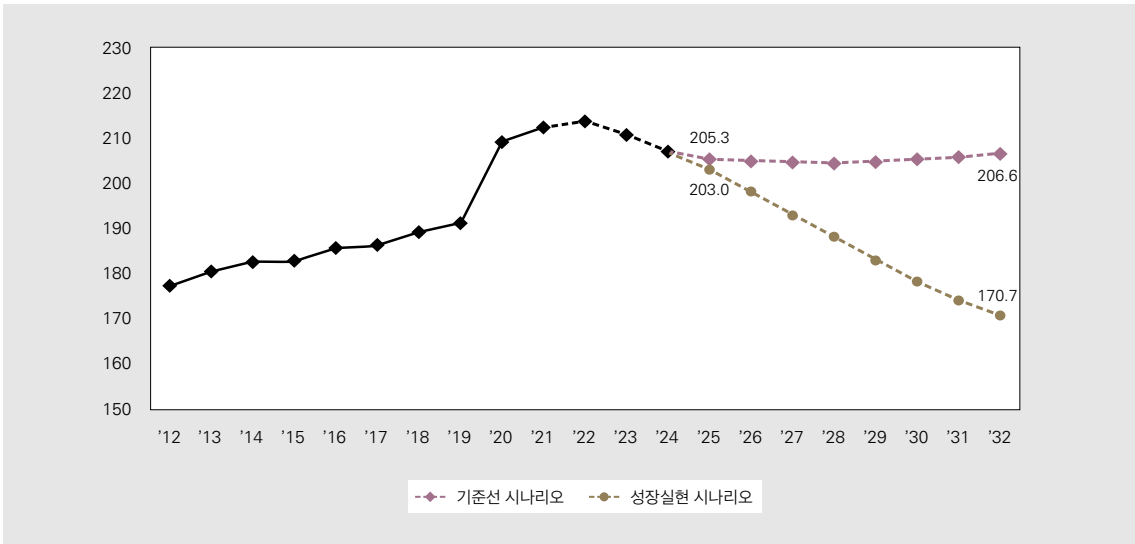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5年7月25日経済財政諮問会議提出)」, 2023. 7. 25., p. 9 그림 9.

[그림 7] 일본의 중장기 국가 및 지방의 채무잔고 전망(GDP 대비)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5年7月25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3. 7. 25., p. 10 그림 11.

도에는 0%로 개선된 이후 완만하게 악화될
전망이며, GDP 대비 채무잔고는 2028년도까
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전망 기간 후반
에 다시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

-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 GDP 대비 기초재정
수지는 2025년도 -0.2%, 2026년도에는 흑
자로 전환된 후 전망 기간 내 흑자폭이 확
대될 전망이며, GDP 대비 채무잔고는 명목
GDP 증가, 재정수지 개선 등으로 인해 전망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하락할 전망

■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2023. 7. 31.)²⁷⁾

- (경제) 해외 경제 회복 둔화로 인한 하방압력
이 있으나 보복소비 수요 등으로 인해 완만한

회복이 전망되며, 이후 소득에서 지출로의 선
순환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잠재성장률을 상
회하는 성장이 계속될 전망

- (물가)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
격 전가의 영향이 완화됨에 따라 상승폭이 축
소되어 2023회계연도에 2.5%를 기록한 이후,
2024~2025회계연도에는 1%대 후반을 나타
낼 전망

- 이후 거시적 수급 격차 개선, 기업의 가격·
임금 설정 변화 등에 기인하여 중장기 예상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폭이 다시 완만하게 확대될 전망

- (위험) 해외 경제·물가, 원자재 가격, 기업의
가격·임금 설정 변화 등으로 인한 높은 불확

27) 일본은행, 『經濟·物價情勢の展望(2023年7月)』, 2023. 7. 31.,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307b.pdf>, 검색일자: 2023. 8. 22.

실성이 금융·외환시장과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필요

- (2023년 4월 전망과 비교)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과 큰 차이가 없으며,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기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전가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2023회계연도에는 상향 조정되었고 2024~2025회계연도는 기존과 큰 차이 없음

◀표 9▶ 일본의 2023~2025회계연도 정책위원 경제·물가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구분	실질 GDP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 제외)
2023회계연도	1.2~1.5 (1.3)	2.4~2.7 (2.5)
2023년 4월 전망	1.1~1.5 (1.4)	1.7~2.0 (1.8)
2024회계연도	1.0~1.3 (1.2)	1.8~2.2 (1.9)
2023년 4월 전망	1.0~1.3 (1.2)	1.8~2.1 (2.0)
2025회계연도	1.0~1.2 (1.0)	1.6~2.0 (1.6)
2023년 4월 전망	1.0~1.1 (1.0)	1.6~1.9 (1.6)

주: 1. () 안은 정책위원 전망치의 중간값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며, 일본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4월~다음 연도 3월

3. 각 정책위원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전망의 수치에 대해 최대치와 최소치 1개를 제외하고 폭으로 나타낸 것이며, 예측 오차 등을 감안한 전망의 상한·하한을 의미하지 않음

4. 각 정책위원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전제로 또는 장래 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반영하여 상기 전망을 작성하고 있음

출처: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3年 7月)』, 2023. 7. 31., p. 10.

■ 일본 내각부, 2023년 2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2023. 8. 15.)²⁸⁾

- 전 분기 대비 2023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5%(연율 6.0%), 명목 GDP 성장률은 2.9%(연율 12.0%)로 3분기 연속 성장세를 나타냄

- (내외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0.3%p로 2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재화·서비스 순수출(외수) 기여도는 1.8%p로 2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

- (민간수요) 민간수요는 전 분기 대비 0.5% 감소하여 2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

- 전 분기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외식 및 숙박 등이 증가하였으나 식·음료품 및 백색가전 등이 감소함에 따라 0.5% 감소하였으며, 민간주택은 1.9%, 민간기업 설비는 0.0%²⁹⁾ 증가

• 민간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전 분기 대비 0.6%p 감소한 -0.2%p로, 2023년 1분기부터 2분기까지 실질 재고 잔고의 증가 폭이 축소됨에 따라 GDP 성장률에 부정적으로 기여

- (공적수요) 공적수요는 전 분기 대비 0.3% 증가하여 5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

- 전 분기 대비 정부최종소비지출의 증가율

28) 일본 내각부, 『2023년 4~6월 4분기 GDP 1차 속보치』, 2023. 8. 15.,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검색일자: 2023. 8. 21.

29)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한 구체적인 수치는 0.026081111%(출처: 일본 내각부, 『四半期別GDP速報 時系列表 2023년 4~6월 1차 속보치』, 2023. 8. 15., p. 4의 표를 바탕으로 산출,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files/2023/qe232/pdf/jikei_1.pdf, 검색일자: 2023. 8. 21.)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은 0.1%로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공적고정자본형성은 전 분기 대비 1.2% 증가하여 5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

- 공적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0%p

<표 10>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 (계절조정, 전 분기 대비) 추이

(단위: %, %p)

구분	2022			2023		2023 ¹⁾
	Q2	Q3	Q4	Q1	Q2	Q2
실질 GDP	1.3	-0.3	0.0	0.9	1.5	6.0
국내수요	1.1	0.3	-0.3	1.1	-0.3	-1.1
민간수요	1.4	0.4	-0.5	1.4	-0.5	-2.0
민간최종 소비지출	1.8	-0.0	0.2	0.6	-0.5	-2.1
민간주택	-1.8	-0.1	0.9	0.7	1.9	7.7
민간기업 설비	1.7	1.7	-0.7	1.8	0.0	0.1
민간재고변동	(-0.1)	(0.0)	(-0.4)	(0.4)	(-0.2)	-
공적수요	0.3	0.0	0.4	0.4	0.3	1.4
정부최종 소비지출	0.4	-0.0	0.2	0.1	0.1	0.4
공적고정자본 형성	0.1	1.1	0.3	1.7	1.2	5.0
공적재고변동	(-0.0)	(-0.0)	(0.1)	(-0.0)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0.1)	(-0.6)	(0.3)	(-0.3)	(1.8)	-
재화·서비스 수출	1.9	2.4	1.5	-3.8	3.2	13.6
재화·서비스 수입	1.1	5.5	-0.1	-2.3	-4.3	-16.2
명목 GDP	1.0	-0.8	1.2	2.3	2.9	12.0
GDP 디플레이터	-0.2	-0.5	1.1	1.4	1.4	-

주: () 안의 수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1) 연율 환산 수치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출처: 일본 내각부, 「2023년4~6분기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p. 11
표 2-1, p. 13 표 2-3 재구성

(수출입) 재화·서비스 수출은 자동차 및 여행(방일외국인의 국내소비) 등의 증가에 기인하여 전 분기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재화·서비스 수입은 광물성 연료, 의약품, 휴대전화 등 감소 등에 기인하여 전 분기 대비 4.3% 감소



독일

■ 독일 연방 내각, 2024년 기후변화기금 계획안 승인(2023. 8. 9.)³⁰⁾

- (개요) 독일 연방 내각은 기후변화기금에 대한 2024년도 재정계획안과 2024~2027년의 중기 계획안을 승인함

- 기후변화기금은 독일의 에너지 및 기후 정책 목표 달성, 미래 기술 개발, 지속가능하고 기후중립적인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특별 기금임

-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산업의 탈탄소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이 기후변화기금의 우선순위이며 향후 수소 경제 발전에도 자금을 지원할 예정

- 또한 기후변화기금에 반도체 분야 지원 자금을 포함하여 기금의 목적이 확대됨

- (2024년 계획 규모) 2024년 기후변화기금 계

30) 독일 연방 정부, “Klima- und Transformationsfonds: Gezielt und technologieoffen in die Transformation unseres Landes investieren,” 2023. 8. 9.,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3/08/2023-08-09-klima-und-transformationsfonds.html>, 검색일자: 2023. 8. 22.;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Bundeskabinett beschließt Wirtschaftsplan des Klima- und Transformationsfonds(KTF),” 2023. 8. 9.,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3/08/20230809-bundeskabinett-beschliesst-wirtschaftsplan-des-ktf.html>, 검색일자: 2023. 8. 22.

획의 프로그램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216억 유로 증가한 576억유로임

- 건물 부문(신축 및 개축)에 189억유로
- 재생에너지법(EEG) 관련 자금 조달에 126억 유로
- 충전 인프라 확장을 포함한 전기차 발전에 47억유로
- 철도 인프라 투자에 40억유로
-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해 40억유로
- 수소 산업 발전 지원에 약 38억유로
- 에너지 집약적 기업 지원(전기요금 보상)에 26억유로 등을 배정

- (중기계획 규모) 2024~2027년 기후변화기금

<표 11> 독일 기후변화기금 재정계획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3	2024
수입	100.8	99.1
ETS 배출권 거래 관련 수입	7.3	8.2
국내 탄소 가격 책정 관련 수입	8.6	10.9
초과 수입	6.0	9.3
적립금 인출	78.9	70.7
지출	100.8	99.1
프로그램 지출	36.0	57.6
적립금 배정	64.8	41.5

출처: 독일 연방 정부, “Klima- und Transformationsfonds: Gezielt und technologieoffen in die Transformation unseres Landes investieren,” 2023. 8. 9.,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3/08/2023-08-09-klima-und-transformationsfonds.html>, 검색일자: 2023. 8. 22.

의 투자 규모는 총 2,118억유로로 계획

- (재원 조달) 2024년 기후변화기금의 자금은 유럽 및 국내 배출권 거래를 통한 자체 수입 191억 유로, 초과 수입³¹⁾ 93억유로, 적립금 707억 유로 등을 통해 조달

- 독일 연방 내각, 예산 자금 조달법안 승인(2023. 8. 16.)³²⁾

- (개요) 독일 연방 내각은 8월 16일, 2024년 연방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을 보완하고 관련 입법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자금 조달법(Haushaltsfinanzierungsgesetz)안을 승인함

- 독일 연방 정부는 2024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7월 5일 발표)을 통해 재정 정상화를 포함한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

- 동 법안은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안과 함께 의회 심의를 위해 연방하원 및 상원에 제출

- (주요 내용) 예산 자금 조달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 변경은 아래와 같음

- (부모수당 및 육아휴직법) 부모 수당 수급 자격의 소득 기준을 15만유로로 하향 조정³³⁾

- (디지털 인프라 기금법) 기존의 디지털 인프라 특별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 예산으로 편입

31) 2023년의 예상 초과 수입과 과소 지출로 발생

32) 독일 연방 정부, “Bundeskabinett bringt Sparvorhaben auf den Weg,” 2023. 8. 1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ervice/newsletter-und-abos/newsletter-verbraucherschutz/haushaltsfinanzierungsgesetz-kabinett-2213080>, 검색일자: 2023. 8. 23.; 독일 연방 재무부, “Pressemitteilung zum Haushaltsfinanzierungsgesetz,” 2023. 8. 1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3/08/2023-08-16-haushaltsfinanzierungsgesetz.html>, 검색일자: 2023. 8. 23.

33) 기존 부모 소득 한도는 30만유로, 편부모 소득 한도는 25만유로였으나 개정안은 구분 없이 15만유로로 설정

- (기후변화 기금법) 마이크로 전자 기술 지원 자금과 연방 철도 관련 자금 조달도 기후변 화기금 목적에 포함
- (배출권 거래법) 톤당 탄소배출권 가격을 2024년에 35유로에서 40유로로, 2025년에 45유로에서 50유로로 인상
- (독일 사회법전 제2권, 제3권) 기존에 사회 법전 제2권(구직자 기초보장)을 근거로 지역 일자리 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았던 25세 미만의 경제활동가능한 수급자는 2025년부터 사회법전 제3권(고용 촉진)에 근거해 연 방 고용공단을 통해 구직 지원을 받을 예정
 - 이를 통해 일자리 센터의 업무 부담을 완 화하고 중복 수혜를 방지
- (독일 사회법전 제6권) 법정 연금 관련 추가 연방 보조금의 연간 인상액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6억유로씩 축소하고, 기여 율을 2026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
- (독일 사회법전 제11권) 장기요양보험에 대 한 연간 10억유로의 연방 보조금 지원을 2024~2027년에 중단(2028년부터 지원 재 개)하고, 이로 인한 수입 감소를 반영해 장 기요양 예비기금 이전액도 2024~2027년에 축소
- (연방군 자금 및 특별기금법) 연방군 특별기 금 사용 목적을 관련 연구 및 인프라 프로젝 트, 군수품 지출 등으로 확대



프랑스

- 프랑스 재무부, 2024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금 개편안 초안 발표(2023. 7. 28.)³⁴⁾
 - 현재는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지만, 2024년부터는 전기자동차 제조부터 운송까지 모든 단계의 탄소배출량 환경점수를 산출해 그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 전기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고 려해 환경점수(*ECversion*)를 산출
 - 최소 환경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차 모델 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해당 초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 해 2024년 1월부터 새로운 전기자동차 구매보 조금 제도가 적용될 예정
- 프랑스 통계청, 2023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2023. 7. 28.)³⁵⁾
 - 2023년 2분기 프랑스의 실질 GDP 성장률은 0.5%를 기록
 - 식품 소비의 감소가 이어지고 에너지 소비 가 둔화하여 가계 소비가 감소
 - 음식 및 숙박업과 운송 서비스의 주도로 가계 서비스 소비는 0.7% 증가
 - 운송 장비에 대한 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총 고정자본형성은 소폭 회복

34) 프랑스 재무부, “Bonus écologique : lancement d’une consultation publique sur l’achat des véhicules électriques,” 2023. 7. 28., <https://www.economie.gouv.fr/bonus-ecologique-lancement-consultation-publique-lachat-vehicules-electriques>, 검색일자: 2023. 8. 25.

35) 프랑스 통계청, “GDP increased significantly in Q2 2023(+0.5% after +0.1%),” 2023. 7. 28.,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7655686>, 검색일자: 2023. 8. 23.

<표 12> 프랑스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¹⁾

(단위: 전 분기 대비 %, %p)

구분	2022		2023		2022	2023
	Q3	Q4	Q1	Q2		
실질 GDP 성장률	0.2	0.1	0.1	0.5	2.5	0.8
가계 소비	0.5	-0.8	0.0	-0.4	2.1	-0.4
정부 소비	0.3	0.7	-0.2	0.0	2.6	0.4
총고정자본형성 ²⁾	2.3	0.3	-0.4	0.1	2.3	1.2
수출	0.5	1.1	-0.8	2.6	7.3	2.3
수입	3.2	-0.5	-2.0	0.4	8.8	-0.3
GDP 기여도 (%p)	국내수요 ³⁾		재고투자		대외무역	
	0.9	-0.2	-0.1	-0.1	2.4	0.2
	0.2	-0.3	-0.3	-0.1	0.7	-0.3
	-0.9	0.5	0.5	0.7	-0.6	0.9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GFCF)

3) 재고투자 제외

출처: 프랑스 통계청, "GDP increased significantly in Q2 2023(+0.5% after +0.1%)," 2023. 7. 28.

- 수출이 크게 반등하여 대외무역이 GDP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

■ 프랑스 예산국, 2023년 2분기 예산집행결과 발표(2023. 8. 3.)³⁶⁾

- (재정수지) 2023년 2분기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1,162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401억유로 증가
- (재정지출) 2023년 2분기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은 2,258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74억유로 증가
 - 에너지 가격 상승에 직면한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의 영향 및 부채 상각을 위한 비용 증가
- (재정수입) 2023년 2분기 일반예산수입(re-

<표 13> 프랑스 2023년 2분기 예산집행 결과

(단위: 백만유로, %)

구분	2021 Q2	2022 Q2	2023 Q2	2023 Q2/ 2022 Q2
재정수지 (Solde du budget général)	-118,122	-61,328	-96,372	-
재정지출 (Dépenses)	259,262	237,987	260,665	9.5
재정수입 (Recettes)	141,140	176,659	164,293	-7.0
특별회계 (Solde des comptes spéciaux)	-13,165	-14,756	-19,810	-
총재정수지 (Solde général d'exécution)	-131,287	-76,084	-116,181	-

출처: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0 juin 2023," 2023. 8. 3.

cettes du budget général)은 1,612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54억유로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경기 활동으로 인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가 주요 요인
- 기타 조세수입의 경우 양도세와 관세 수입의 영향으로 다소 증가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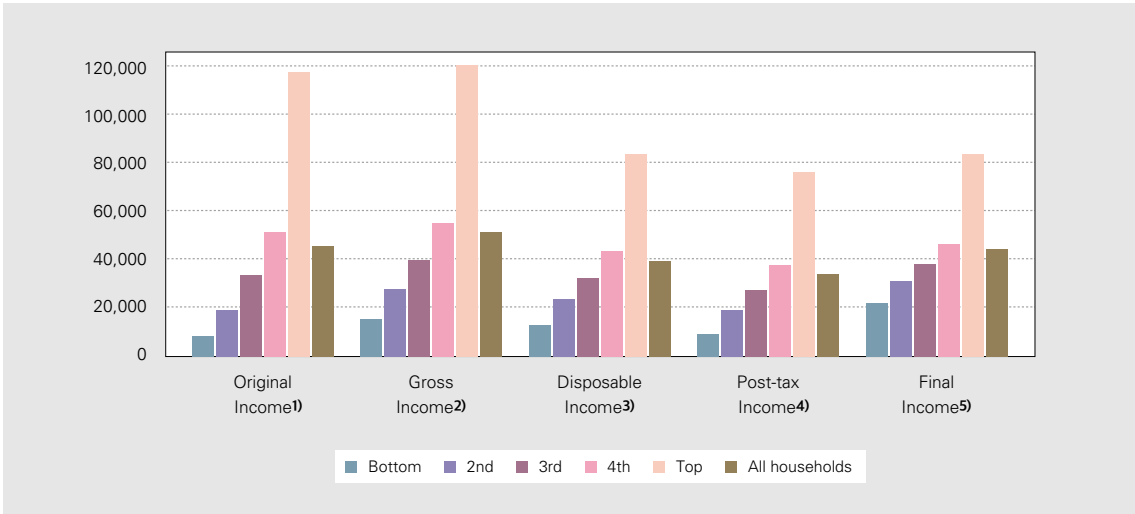
[예산-결산 등]

- 영국 통계청, "2021-22회계연도 조세부담 및 재

36)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0 juin 2023," 2023. 8. 3. <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file-download/21005>, 검색일자: 2023. 8. 22.

[그림 8] 영국의 2021-22회계연도 소득분위별 가구 소득

(단위: 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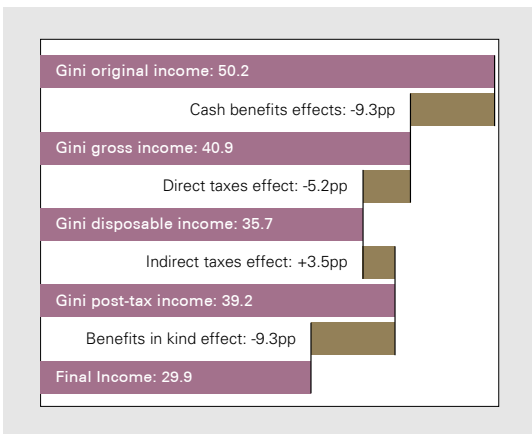


- 주: 1) Original Income(본원소득): 근로, 개인연금, 투자, 기타 비정부 부문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 2) Gross Income(총소득): 본원소득과 현금급여를 합한 소득
- 3) Disposable Income(가처분소득): 총소득에서 직접세를 제한 소득
- 4) Post Tax Income(세후소득): 가처분소득에서 간접세를 제한 소득
- 5) Final Income(최종소득): 세후소득에 현물급여를 합한 소득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2," 2023. 7. 18., Figure 1.

[그림 9] 영국의 2021-22회계연도 소득유형별 지니계수

(단위: %)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2," 2023. 7. 18., Figure 2.

정수혜가 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2)"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2023. 7. 18.)³⁷⁾

- (주요 내용) 2021-22회계연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는 가구 소득의 균등한 분배에 기여 하였으나, 간접세는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그림 8] 참조)
- 현물·현금 급여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감소 ([그림 9] 참조)
-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 불평등은 현금 급여를 통해 9.3%p 감소(본원소득 기준 지

37)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2," 2023. 7. 18.,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ersonalandhouseholdfinances/incomeandwealth/bulletins/theeffectsof taxesandbenefitsonhouseholdincome/financialyearending2022>, 검색일자: 2023. 8. 8.

- 니계수 50.2% →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 40.9%), 이는 이전 회계연도와 비슷한 수준
- 현물 급여를 통해 지니계수는 9.3%p 감소 (세후소득 기준 지니계수 39.2% → 최종소득 기준 지니계수 29.9%)하였는데, 이는 직전 회계연도의 8.3%p 감소와 비교하면 소득 불평등을 낮추는 데 현물 급여가 조금 더 효과적이었음을 시사
 - 간접세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증가
 - 직접세는 직전 회계연도 대비 4.8% 증가 하였으나 간접세는 9.1% 증가,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제한 조치들이 완화됨에 따라 가구 지출이 증가한 데 기인
 - 가처분소득 상위 20% 가구의 간접세는 9,000파운드로 하위 20% 가구의 4,800파운드보다 1.9배 컸으나, 간접세 비율은 각각 가처분소득의 9.0%, 28.3%를 기록
 -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는 가구 소득의 균등한 분배에 기여
 - 중위 본원소득은 3만 5,000파운드였으나, 최종소득은 3만 8,100파운드로 증가
 - 상위 20%의 본원소득은 11만 7,500파운드로 하위 20%의 본원소득 8,200파운드보다 14배 이상 컸으나, 최종소득³⁸⁾에서는 그 비율이 3.8배로 감소

- 영국 재무부, 스코틀랜드 재정 프레임워크(Fiscal Framework) 업데이트에 합의 (2023. 8. 2.)³⁹⁾
 - (배경) 영국 중앙정부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재정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재정 프레임워크를 2016년에 체결하였고, 이후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계획
 - 스코틀랜드는 2014년 9월 분리독립 찬반투표⁴⁰⁾를 시행하는 등 역사적으로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으로, 영국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
 - (주요 내용) 차입 한도의 상향 조정, 준비금 인출의 연간 한도 폐지 등을 통해 스코틀랜드 정부의 재정 운용에 유연성을 확대
 - 2023-24회계연도 이후 자본지출을 위한 차입 한도(30억파운드)와 연간 차입 한도(4억 5,000만파운드)에 대해 물가상승⁴¹⁾을 적용하여 인상
 - 이를 통해 스코틀랜드 정부는 학교, 병원, 도로 및 기타 주요 인프라에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는 더 나은 유급 일자리와 기회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자금지출(경상지출)을 위한 연간 차입 한도를 3억파운드에서 6억파운드로 상향 조정
 - 이는 예산 관리를 위해 더 큰 확실성과 유연성을 요구한 스코틀랜드 정부의 요청을 수용
 - 스코틀랜드 준비금(Scotland Reserve)에서

38) 상위 20%와 하위 20% 최종소득은 각각 8만 3,900파운드, 2만 2,300파운드

39) HM Treasury, "Deal struck on a renewed Fiscal Framework for the Scottish Government," 2023. 8. 2., <https://www.gov.uk/government/news/deal-struck-on-a-renewed-fiscal-framework-for-the-scottish-government>, 검색일자: 2023. 8. 9.

40) 투표 결과, 찬성 44.7%, 반대 55.3%로 최종 집계되어 독립은 부결

41) 스코틀랜드 예산 초안 당시 예산책임청의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의 인출 한도는 기존 7억파운드로 동일하나 2023-24회계연도 이후 물가상승이 적용되고, 연간 인출 한도는 폐지

■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기준금리 인상 (5.00 → 5.25%) 결정(2023. 8. 3.)⁴²⁾

- (경제현황 논의) 금리 인상 결정에 앞서 세계 경제 및 영국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
 - (국제경제) 세계 GDP 성장률은 2분기에 0.5%를 기록하고 3분기에 완만하게 유지되다가 4분기에는 1.8%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수요·생산량) 2023년 상반기 분기별 GDP 성장률은 약 0.2%를 기록하였고, 단기적으

로 동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공급·물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월 8.7%에서 6월 7.9%로 하락하였으나, 목표치 2%와는 여전히 격차가 큰 상황

● (금리 인상 결정) 통화정책위원회는 영국의 통화정책 체계에서 물가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5.00%에서 5.2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

- 기준금리 투표에서 9명의 위원 중 2명은 5.50%로 인상, 6명은 5.25%로 인상, 1명은 기존 5.00% 유지 의견 제시
- 기준금리는 2021년 12월 0.1%에서 0.25%로 인상된 이후, 2023년 8월까지 14회 연속 인상

<표 14> 영국의 기준금리 추이

(단위: %)

날짜	2021	2022								2023				
	12. 16.	2. 3.	3. 17.	5. 5.	6. 16.	8. 4.	9. 22.	11. 3.	12. 15.	2. 2.	3. 23.	5. 11.	6. 22.	8. 3.
금리	0.25	0.50	0.75	1.00	1.25	1.75	2.25	3.00	3.50	4.00	4.25	4.50	5.00	5.25

출처: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Committee Voting History," 2023. 8. 3.

42) Bank of England, "Bank Rate increased to 5.25% - August 2023," 2023. 8. 3.,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summary-and-minutes/2023/august-2023>, 검색일자: 2023. 8. 7.

재정포럼

2023년 9월호 통권 제327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편집·제작 이현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월간 재정포럼

2023년 9월 15일 발행 / 통권 제327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2 / **E-mail:** pub@kipf.re.kr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디자인·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ipf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